

연구보고서(수시) 2019-02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이아영
황남희·양준석·안 영

【책임연구자】

이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저서】

중고령층 근로활동(은퇴/재근로)이 인지기능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공동연구진】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양준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안 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수시) 2019-02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발 행 일 2019년 2월

저 자 이 아 영

발 행 인 조 흥 식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 쇄 처 ㈜현대아트컴

발간사 <<

4차 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술 발전은 인류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인간의 일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하루아침에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상황에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곧 일자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는 단기 혹은 장기의 실업 상태에서 생계 보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위험,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대부분 임금근로자에 초점이 맞춰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에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위험,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진하다.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1%(자영업자 수 5638천 명으로 2018년 기준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약 28.1%)로 타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상당 부분은 사회보장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중 생계형 혹은 한계형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다. 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업의 전문화 및 대형화 현상은 이들의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할 때 현재도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빈곤층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 연구 보고서에서 제기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취약성, 실질적 사회적 보호 장치 미흡에 관한 문제 제기는 최근의 비

전형적인 근로 형태의 노동자 증가로 인한 이들의 보호 기준 설정 및 사회
안전망 대응 이슈와 맞물려 관심을 가지기에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아영 부연구위원 책임하에 원내 황남희
연구위원, 안영 연구원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자영업자의 정책
현황에 대한 이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양준석 박사가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본 연구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와 자영업가구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2019년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자영업자 정의 및 연구 동향	13
제1절 자영업자 개념 및 연구 동향	15
제2절 자영업자 정의	25
제3장 변화 추이 및 특성	27
제1절 자영업자 변화 추이 및 특성	29
제2절 소결	40
제4장 소득 현황 및 소득 빈곤	43
제1절 자영업가구의 소득	45
제2절 자영업가구의 지출	57
제3절 자영업가구의 소득 빈곤	67
제4절 소결	72
제5장 다차원적 빈곤 위험	75
제1절 노동 환경: 실직 및 산업재해	77

제2절 장시간 근로와 건강: 건강(질병)	87
제3절 노후 준비: 노령	95
제4절 사회적 위험 대응 수준	98
제5절 소결	101
제6장 자영업자 사회보장 현황	103
제1절 고용보험	106
제2절 산업재해	111
제3절 건강보험	118
제4절 노후소득보장제도	120
제5절 근로장려세제(EITC)	133
제6절 기타 지원정책	138
제7절 소결	152
제7장 결 론	155
제1절 요약	157
제2절 정책적 함의	161
참고문헌	167
부 록	179
[부록 1] 자영업자 심층면접조사	179
[부록 2] 분석 대상자 특성	182

표 목차

〈표 2-1〉 부처, 기관 및 법률에서의 자영업자 정의	17
〈표 2-2〉 자영업자 관련 국내 연구 동향	21
〈표 2-3〉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관련 국내 연구 동향	24
〈표 3-1〉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30
〈표 3-2〉 자영업자 비율 변화	32
〈표 3-3〉 자영업자 수와 비율 추이	34
〈표 3-4〉 자영업자 부문의 종사자 규모별 비율	34
〈표 3-5〉 자영업자 부문의 산업별 비율 변화	35
〈표 3-6〉 산업별 고용원 유무에 따른 비율	35
〈표 3-7〉 산업별 종사자 규모에 따른 비율(2018)	36
〈표 3-8〉 연령대 내 자영업자 비율	38
〈표 3-9〉 자영업자 부문의 연령대별 비율 변화	38
〈표 3-10〉 연령대별 고용원 유무에 따른 비율 변화	39
〈표 3-11〉 연령대별 종사자 규모에 따른 비율(2018)	39
〈표 3-12〉 자영업자 부문의 교육 수준별 비율 변화	39
〈표 3-13〉 교육 수준별 고용원 유무에 따른 비율 변화	40
〈표 3-14〉 교육 수준별 종사자 규모에 따른 비율(2018)	40
〈표 4-1〉 시장소득 추이	48
〈표 4-2〉 처분가능소득 추이	49
〈표 4-3〉 처분가능소득 분포	51
〈표 4-4〉 자영업가구의 고용원 유무별 처분가능소득 분포	52
〈표 4-5〉 자영업가구 중 고용주 특성별 처분가능소득 추이	55
〈표 4-6〉 자영업가구 중 자영자 특성별 처분가능소득 추이	56
〈표 4-7〉 지출 추이	58
〈표 4-8〉 지출 분포	60
〈표 4-9〉 자영업가구의 고용원 유무별 지출 분포	61
〈표 4-10〉 식료품비 규모 및 구성비 추이	62
〈표 4-11〉 의료비 규모 및 구성비 추이	63

〈표 4-12〉 주거비 규모 및 구성비 추이	64
〈표 4-13〉 자영업가구 중 고용주 특성별 소비지출 추이	66
〈표 4-14〉 자영업가구 중 자영자 특성별 소비지출 추이	67
〈표 4-15〉 상대빈곤율 추이	68
〈표 4-16〉 자영업가구 중 고용주 특성별 상대빈곤율 추이: 처분가능소득 기준	70
〈표 4-17〉 자영업가구 중 자영자 특성별 상대빈곤율 추이: 처분가능소득 기준	71
〈표 5-1〉 고용 형태 지속성	79
〈표 5-2〉 60세 미만 고용 형태 지속성	80
〈표 5-3〉 15~49세 고용 형태 지속성	82
〈표 5-4〉 2018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84
〈표 5-5〉 초과근로 및 과잉근로 범주별 주당 근로시간 평균	85
〈표 5-6〉 주당 평균 근로일수 분포	86
〈표 5-7〉 근로시간에 따른 건강 상태 분석 결과	90
〈표 5-8〉 근로시간에 따른 건강 문제 발생 여부 분석 결과	92
〈표 5-9〉 자영업자의 건강상 문제와 업무상 관련 여부	94
〈표 5-10〉 노후소득 준비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n=6,218)	96
〈표 5-11〉 자영업이 노후소득 준비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97
〈표 5-12〉 국민연금 납입 비율과 개인연금 가입 비율	99
〈표 5-13〉 건강보험 가입 비율과 민간의료보험 가입 비율	100
〈표 5-14〉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비율	101
〈표 6-1〉 고용보험 주요 기능 및 자영업자 적용 여부	106
〈표 6-2〉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고용보험료를 결정 차이	108
〈표 6-3〉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급	108
〈표 6-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지원금	110
〈표 6-5〉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111
〈표 6-6〉 산재보험 적용 대상	112
〈표 6-7〉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요건	113
〈표 6-8〉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기준보수액	113
〈표 6-9〉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현황	114

〈표 6-10〉 파란우산공제 손해공제 상품	117
〈표 6-11〉 자영업자의 건강보험 가입 형태	120
〈표 6-12〉 퇴직연금제도 비교	126
〈표 6-13〉 소기업·소상공인의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및 연평균 매출액 기준	127
〈표 6-14〉 노란우산공제 개요	128
〈표 6-15〉 2018년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기준이율	128
〈표 6-16〉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액	129
〈표 6-17〉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공제금 지급 현황	130
〈표 6-18〉 노란우산공제 지역별 가입 현황	131
〈표 6-19〉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실적	132
〈표 6-20〉 EITC 연혁	133
〈표 6-21〉 자영업자 업종별 조정률	135
〈표 6-22〉 가구 유형별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	136
〈표 6-23〉 가구 유형별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137
〈표 6-24〉 자영업자 사업장 유형별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	137
〈표 6-25〉 자영업자 사업장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138
〈표 6-26〉 자영업자 사업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프로그램	140
〈표 6-27〉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주요 제도 변화	143
〈표 6-28〉 근로 유형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보수기준 및 금액	149
〈표 6-29〉 2018년 월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현황(누적)	151
〈표 6-30〉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제도	154
〈표 6-31〉 자영업자 사회보장 지원정책	154
〈부록표 1〉 자영업자 심층면접조사1	179
〈부록표 2〉 자영업자 심층면접조사2	180
〈부록표 3〉 자영업자 심층면접조사3	181
〈부록표 4〉 분석 대상자 특성: 고용 형태 지속성	182
〈부록표 5〉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량: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 발생 여부 분석	183
〈부록표 6〉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량: 노후소득 준비 인식	184

그림 목차

[그림 3-1]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추이: 전 산업	31
[그림 3-2]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율 추이: 전 산업	33
[그림 3-3] 연령대별 자영업자 증감률 추이	38
[그림 4-1] 시장소득 추이	48
[그림 4-2] 처분가능소득 추이	49
[그림 4-3] 처분가능소득 증감률 추이	50
[그림 4-4] 처분가능소득 분포: 2017년 소득 5분위 기준	52
[그림 4-5] 처분가능소득 분포 변화: 커널밀도추정(확대)	53
[그림 4-6] 지출 추이	58
[그림 4-7] 지출 증감률 추이	59
[그림 4-8] 지출 분포: 2017년 기준	61
[그림 4-9] 식료품비, 의료비, 주거비 구성비: 2017년 기준	65
[그림 4-10] 상대빈곤율 추이: 처분가능소득 기준	69
[그림 5-1] 고용 형태 변화 패턴	78
[그림 5-2] 60세 미만 고용 형태 변화 패턴	80
[그림 5-3] 15~49세 고용 형태 변화 패턴	81
[그림 5-4] 초과근로 및 과잉근로 분포	85
[그림 5-5]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비율	87
[그림 6-1] 자영업자 노후소득보장체계	121
[그림 6-2]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율	122
[그림 6-3]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	123
[그림 6-4] EITC 지급 현황	136
[그림 6-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근로자 수	144
[그림 6-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사업장 수	144
[그림 6-7]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금액	145
[그림 6-8]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개인별/사업장별 지원 금액	145

Abstract <<

A Study on the poverty and social security policy of the self-employed

Project Head: Lee, Ayoungh

Although social risks and social safety nets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recently, discussions about social risks and social safety nets of self-employed workers are still insufficient. In South Korea, where the proportion of low productivity self-employed workers is very high, it is very likely that they will become poor if their earnings are stopp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self-employed workers, income level of self-employed households, income poverty status, and social vulnerability such as unemployment, aging, health.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helpful as a basic data for strengthening the social safety net of self-employed workers in the blind spot of social safety net.

Co-Researchers: Hwang, Namhui · Yang, Junseok · Ahn, Young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사회적 위험,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진하다. 전통적으로 자영업은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며, 직면하게 될 위험 또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생계형 및 가족형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서비스산업의 전문화 및 대형화는 이들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그럼에도 이들은 질병, 재해, 실직, 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결국 생산성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들 자영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되어 무직자로 전락할 경우 신빈곤층으로 몰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장시간 근로 만연, 건강 악화로 인한 생활수준 저하, 노후 준비 그리고 실직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의 위험 대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회보장 보호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변화 특성, 자영업가구의 소득 수준 및 소득 빈곤 현황, 그리고 실직·재해·건강·노령 등 사회적 위험 취약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사회보장 지원 현황을 살펴본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적 시행 초기 단계인 자영업 관련 사회보장정책들이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이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자영업자의 절대적 숫자와 비율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자영업자 부문 내 이질적인 변화 추이(자영업 고령화 현상, 저학력의 영세 자영업 비율 증가, 한계형 자영업자 비중이 큰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높은 비율 등)가 나타난다. 또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수준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임금근로자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최근으로 올수록 소득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노동 환경은 고용 형태 지속성이 매우 불안정하며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상태이다. 고용 형태 지속의 불안정성은 실직에 처할 위험이 높음을 의미하며, 장시간 노동은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음을 암시한다. 또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구는 노후소득 준비 상황 또한 미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특히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률과 민간 보험 가입률이 낮다. 즉 자영업자는 사회적 위험에 취약하며 대응 수준도 낮다. 현재의 사회보험체계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소득 수준, 소득 빈곤, 사회적 위험 취약성 등에 있어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며 취약한 상황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 또한 고용 변화 패턴을 살펴보면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로의 이동 패턴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 영세한 자영업자들 또한 언젠가 이러

한 특성에 노출될 수 있다. 결국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지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가 잦으며 불안정하고, 근로빈곤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퇴출될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3. 결론 및 시사점

현재의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자영업자 및 자영업가구는 노동 중 재해 혹은 실직, 노령, 질병 등 소득 중단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는 보호체계가 매우 미흡하다. 현재에도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빈곤층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교적 시행 초기 단계의 사회안전망 확충 과정에서 실제로 광범하게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대 및 강화에 주안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특히 자영업 종사자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자영업자가구의 각 계층의 촘촘한 구분을 통해 특화된 사회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위험에 처한 이들의 구제를 위한 임시·단기적 지원보다는 근본적으로 위험에 당면한 자영업자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위험에 처하기 이전, 즉 위험 발생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후 대책뿐 아니라 사전적이고 예방적 대책으로 사회안전망 내 편입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주요 용어: 자영업자, 사회적 위험 취약성, 사회보장, 빈곤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최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며, 자영업자의 절대적 숫자와 비중의 감소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미성숙하며 소득 파악 인프라가 취약한 국가일수록 노동시장의 한계 집단이 자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Carrasco & Ejrnaes, 2012; 이병희, 박찬임, 오상봉, 강병규, 김숙경, 2016 재인용)를 고려하면 이러한 감소 현상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자영업 부문 내 이질적인 변화 추이는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최근 자영업 부문의 변화를 보면, 젊은 층의 자영업자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은 증가하는 자영업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저학력자의 영세 자영업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으며 그중 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다. 통계청 기업생멸 행정통계(2016년 기준)에 따르면 2011년에 개업한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이 약 30%도 되지 않는 상황이며 특히 진입 장벽이 낮은 음식 및 숙박, 소매업 등의 업종에서의 지속 기간은 더욱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중 생계형 자영업자가 63%로 OECD 평균 27.3%의 2배보다 높으며, 기업가 정신으로 창업하는 기회형 자영업자는 21%로 OECD 국가 중 가

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에는 청년실업을 심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비자발적인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영업은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며, 직면하게 될 위험 또한 낮거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겨 왔다(Dekker, 2010; 이병희 외, 2016 재인용). 그러나 생산성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들 자영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되어 무직자로 전락할 경우 신빈곤층으로 몰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장시간 근로 만연, 건강 악화로 인한 생활 수준 저하, 노후 준비 그리고 실업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의 위험 대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약 560만 명의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전문화된 기술 및 자본 부족으로 실직 위험 대비에 취약하다. 게다가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상황이다. 장시간 노동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훼손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과로로 인한 육체적 피로로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Dembe, Erickson, Delbos, Banks, 2005; Lee & Lee, 2014; 안준기, 2018). White & Beswick(2003)의 연구에서 장시간 근로는 질병을 야기하므로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을 저해하는 위험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 문제가 발생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역시 미비하다(OECD, 2018). 실업, 산업재해, 건강(질병),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은 복지국가의 사회안전망¹⁾ 정책을 통해 1차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일하는 근로자에 비해 사회적 보험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자에게 현재 사회적 안전망은 보호막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²⁾ 사회보

1) 사회안전망은 질병, 노령,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일컫는 것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를 말한다(기획재정부, 2017).

험이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틀 안에서 이들은 질병, 노령, 폐업 및 실업 등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장치 부족으로 빈곤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회보장 보호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하다.

현시점에서 자영업가구의 일반적 특성 변화와 가구 소득 실태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들이 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교적 시행 초기 단계인 자영업 관련 사회보장정책들이 보다 빠르게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기존 정책들은 주로 단기적 차원의 소득 수준 및 경영난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저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실직, 노령, 질병에 따른 위험 수준을 낮출 수 있는 보호적 차원에서의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영업자 변화 특성, 자영업가구의 소득 현황, 그리고 실직·건강·노령에 따른 위험 수준과 사회보장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근거 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2018년 8월 기준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75.8%(통계청, 2018), 2018년 6월 기준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1만 7922명(연합뉴스, 2018. 9. 24), 2017년 기준 중소기업사업주 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2만 1692명(고용노동부, 2017)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의무가입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체납, 납부예외 비율이 높으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또한 적용 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매우 낮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현황 및 특성, 자영업가구의 소득 상태 및 빈곤, 그리고 실직·건강·노령에 따른 위험 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현 사회보장 지원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은 기존 자영업자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범위를 설정한다. 제3장은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변화 추이와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데이터를 활용해 실증 분석한다. 제4장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영업가구의 소득 및 소비 상태와 이들의 빈곤 현황을 살펴본다. 제5장은 생애 주기 동안 직면하는 문제인 실직, 건강, 노령에 따른 위험 정도를 임금근로자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근로환경조사,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제6장은 사회안전망의 기본이 되는 4대 보험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보장 지원 현황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 2 장

자영업자 정의 및 연구 동향

제1절 자영업자 개념 및 연구 동향

제2절 자영업자 정의

2

자영업자 정의 및 연구 동향 <<

본 장에서는 자영업자 관련 기존 연구 동향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다. 기존 연구들의 자영업자 개념 정의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의 자영업자를 정의한다.

제1절 자영업자 개념 및 연구 동향

1. 자영업자 개념

‘자영업자’라는 용어는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자영업자는 근로자의 개념과 상대되는 ‘나머지 영역’에 속해 있는 자로 의뢰인과 종속적인 관계없이 직업적인 활동을 하는 자이다(Schoukens, 2005). ‘나머지 영역’은 국가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며, 실제 자영업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Schoukens, 2005). OECD는 고용주(employers), 자영자(own-account workers), 생산자 조합 회원(members of producers’ co-operatives), 무급가족종사자(unpaid family workers)를 자영업자(self-employment)로 정의한다(OECD, 2016). 통계청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와 함께 사업하는 사람을 자영업자라 정의하며, 법인사업체의 대표자는 자영업자가 아니다. 종사상지위를 기준으로 ‘고용주’는 유급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를 의미하며, ‘자영자’는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고용주와 자영자를 ‘자영업주’ 또는 ‘자영업자’로 지칭하고 있다(통계청 홈페이지, 2019. 1. 31. 인출). 중소기업법부는 상시근로자³⁾ 수를 기준으로 ‘소상공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⁴⁾에 해당하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라고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019. 1. 31. 인출). 정책 대상 집단으로서 (영세)자영업자를 구분할 때, 중소기업법부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 및 면세 사업자”로 규정(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1. 31. 인출). 고용노동부에서는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로 자영업자를 규정함으로써 종사자 규모를 기준으로 한 영세 자영업자 정의를 따른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019. 1. 31. 인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019. 1. 31. 인출). 즉 ‘자영업자’라는 용어는 법적·학문적인 개념이 아니며 명확한 기준이 없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 3)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기업 규모(소기업, 중기업)를 구분하며, 소기업은 업종별 50억 원 이하~120억 원 이하로 분류된다(중소기업중앙회, 2018).

〈표 2-1〉 부처, 기관 및 법률에서의 자영업자 정의

구분	기준	정의	범위
OECD	종사상 지위	자영업자	- 고용주(employer), 자영자(own-account workers), 생산자 조합 회원(members of producer's co-operatives), 무급가족종사자(unpaid family workers)를 '자영업자'로 정의
통계청	종사상 지위	자영업자 (고용주, 자영자)	- 고용주: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 자영자: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 고용주와 자영자를 포괄하여 '자영업주' 또는 '자영업자'로 정의
중소벤처기업부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중소기업자의 범위)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이 50억 원 이하~120억 원 이하를 소기업으로 분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소상공인의 범위 등) - 5인 미만 업체(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
	매출액	(영세) 자영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 및 면세 사업자
고용노동부	상시 근로자 수	영세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
고용보험	상시 근로자 수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산재보험	상시 근로자 수	중소기업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자료: OECD(2016); 통계청 홈페이지(2019. 1. 31. 인출); 중소기업기본법(2018. 8. 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7. 26.);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근로기준법(2019. 1. 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중소기업중앙회(2018).

2. 연구 동향

기존 연구들의 자영업자 용어 정의와 더불어 우리나라 자영업 관련 연구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우선, 자영업자 특성 현황 및 결정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기승, 조준모(2006)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고용주와 자영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여 이들의 자영업 진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승렬, 최강식(2007)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와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하여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를 구분하여 자영업 비중과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김우영(2009)은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하여 농림어업과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고용주와 자영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여 자영업자의 이질성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금재호, 김기승, 조동훈, 조준모(2009)의 연구는 통계청의 자영업자 정의에 따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활용, 농림어업 종사자를 제외한 자영업주(고용주+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비임금근로자로 정의하여 자영업 고용구조의 변화와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노동패널조사 1~10차를 활용하여 자영업주의 경제활동과 인구학적 특성 변화, 매출과 소득, 가구소비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았다. 김복순(2011)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지위에 따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며, 자영업자 중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영세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승렬(2012)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고용주와 자영자를 구분하여 자영업 부문 규모 변화를 살펴보았다. 조동훈(2013)은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하여 고용주와 자영업자, 가족종사자를 자영업 종사자로 정의하여 자영업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박진희(2014)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를 활용하여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며, 이들을 구분하여 특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김복순(2014)의 연구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동향조사를 활용,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여 자영업 고용구조와 소득 실태를 살펴보았다. 서정희, 박경하(2015)의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0~15차를 활용,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임금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을 자영업자로 정의하여 자영업자의 불안정 노동 실태를 분석하였다. 박창귀(2016)의 연구는 2010년부터 실시된 가계금융조사와 1990년 이후 20년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는 고용주와 본인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여 자영업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승렬(2018)은 농림어업을 제외한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하여 자영업 증감 추이와 노동시간 및 시간당 소득을 살펴보았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부채 및 자산을 살펴보았으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하여 근무 여건을 분석하였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 수급권 현황을 살펴보았다.

자영업자의 소득 및 부채, 빈곤 현황을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재호, 김철희(2005)의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을 활용,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종사상지위를 기초로 한 개인 사업, 프리랜서, 가게, 식당 등의 주인 혹은 농림수산업처럼 자기 사업을 하는 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여 자영업자의 소득과 빈곤 원인을 분석하였다. 지은정(2012)은 한국복지패널 1~4차를 활용하여 무급가족종사자와 농림어업 종사자를 제외한 고용주

와 자영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여 이들의 소득불평등을 분석하였다. 금재호(2012)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농림어업을 제외한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자영업 종사자로 정의하여 이들의 특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가계조사를 활용하여, 가구주가 자영업에 종사하면 자영업가구, 임금근로이면 임금근로가구로 정의하여 자영업가구의 빈곤을 살펴보았다. 반정호(2012)의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활용,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를 자영업주로 정의하며 무급가족종사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자영업자가구와 임금근로자가구의 소득 격차와 빈곤 양상을 살펴보았다. 지은정(2013)의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5차를 활용, 통계청의 정의에 따라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고용주와 자영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여 자영업자의 취업빈곤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김도균(2015)은 한국노동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청의 종사상지위 기준에 따른 고용주와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를 자영업자 또는 비임금근로자로 규정하여 자영업 부채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소득 1~2분위 자영업자를 영세 자영업, 소득 3~4분위 자영업자를 중소득자영업, 소득 5분위 자영업자를 고소득자영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김도균(2018)의 연구는 2012~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 자료를 활용, 고용주와 자영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여 이들의 고용 상태와 소득계층 이동을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무급가족종사자는 분석에서 제외했으며,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는 임금근로자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2018a)의 연구는 1991~2016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활용, 자영업자가구와 근로자가구의 소득 차이와 빈곤 실태를 분석하였다. 자영업자가구는 실제 가구의 생계유지를 책임지는 가구주를 의미하므로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하여

야 하나, 무급가족종사자는 자영업자의 사업체 존속에 따라 고용이 유지되므로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2-2〉 자영업자 관련 국내 연구 동향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자영업자 범위
김우영(2001) 남녀 간 자영업 비중의 격차 분석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 양적 분석	피고용인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와 유급 고용인 없이 혼자 사업하는 자영업자
김재호, 김철희(2005) 자영업자의 소득과 빈곤 원인 분석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한 양적 분석	개인 사업, 프리랜서, 가게, 식당 등의 주인 혹은 농림수산업처럼 자기 사업을 하는 자를 자영업자로 정의
김기승, 조준모(2006) 자영업 진출 요인 분석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 양적 분석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고용주와 자영자를 자영업자로 정의
이승렬, 최강식(2007) 자영업 비중과 결정요인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한 양적 분석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김우영(2009) 자영업자의 이질성 분석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한 양적 분석	농림어업 및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한 고용주와 자영자를 자영업자로 정의
금재호 외(2009) 자영업자의 경제활동과 소득활동 분석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 양적 분석	농림어업 종사자를 제외한 자영업주(고용주+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김복순(2011) 자영업 노동시장 변화 분석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 양적 분석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를 자영업자로 정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영세 자영업자로 정의
이승렬(2012) 자영업 규모 변화 분석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 양적 분석	고용주와 자영자를 자영업자로 정의
지은정(2012) 자영업자의 소득불평등 분석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양적 분석	무급가족종사자와 농림어업 종사자를 제외한 고용주와 자영자를 자영업자로 정의
금재호(2012) 자영업가구 소득 현황과 빈곤 분석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조사를 활용한 양적 분석	농림어업 제외한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를 자영업 종사자로 정의
반정호(2012) 자영자 가구와 임금근로자 가구의 소득 격차와 빈곤 양상 분석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양적 분석	고용주와 자영자를 자영업자로 정의,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

22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자영업자 범위
조동훈(2013) 자영업 결정요인 분석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한 양적 분석	고용주, 자영자, 가족종사자를 자영업 종사자로 정의
지은정(2013) 자영업자의 취업빈곤 분석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양적 분석	무급가족종사자 제외한 고용주와 자영자를 자영업자로 정의
김복순(2014) 자영업 고용구조와 소득 실태 분석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양적 분석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를 자영업자로 정의
서정희, 박경하(2015) 자영업자의 불안정 노동 실태 분석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한 양적 분석	고용주와 자영자를 자영업자로 정의
김도균(2015) 자영업 부채 분석	한국노동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은행 자료를 활용한 양적 분석	고용주와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를 자영업자로 정의
최영준, 이승준(2015) 자영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와 복지인식 변화 분석	한국노동패널,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양적 분석	5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영세 자영업자로 정의
박창귀(2016) 자영업 결정요인 분석	가계금융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 양적 분석	1인 이상 종업원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는 고용주와 본인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자를 자영업자로 정의
국회예산정책처(2018a) 자영업자가구와 근로자가구간 소득 차이와 및 빈곤위험분석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양적 분석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고용주, 자영자를 비임금근로자로 정의
이승렬(2018) 자영업 증감 추이, 노동 현황 및 부채 및 자산 현황 분석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노동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한 양적 분석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를 자영업자로 정의

자영업자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사회안전망 관련 연구는 최근에서야 관심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 이승렬, 김종일, 박찬임, 이덕재, 홍민기(2009)의 연구는 통계청의 정의에 따라 종업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와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서 일하거나 무급가족종사자의 도움을 얻는 ‘자영자’를 ‘자영업주’로 정

의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농림어업 종사자를 제외한 자영업주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자영업자의 영세성을 정의하는 방법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월 평균 소득 150만 원 미만,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종업원 5인 미만의 자영업주를 영세 자영업자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하에 자영업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임은의(2011)의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2007년 자료를 활용, 중소벤처기업부의 영세 자영업자 기준을 참고하여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근로장려세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병희 외(2016)의 연구는 종사상지위를 기준으로 유급 고용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일하는 자영자,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고용주를 자영업자로 정의하며, 자영업자와 다른 특성을 가진 무급가족종사자,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함에도 노동법과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영업자와는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농림어업의 취업자 감소 추세가 자영업 분석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농림어업 종사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사용한 자료는 가계동향조사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변화,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저소득 자영업자 특성 분석, 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한국복지패널, 재정패널을 이용하여 사회보험 가입 실태를 분석하였다. 김수환, 감형규(2017)는 사업자등록이 필요(일부 무등록업체 포함)한 업종별 5~1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업체와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자기 혼자 사업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자영업자 중 1인 자영업자를 소상공인으로 정의하여 이들의 사회안전망 필요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병희 외(2016)의 연구를 제외한 기존의 자영업 사회안전망 관련 연구들은 이들의 사회안전망 현황에 관해 종합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특정 분야에 집중하여 살펴본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자영업 사회안전망과 관련하여 사회적 위험성에 관한 논의는 세계금융위기와 구조조정 등을 겪으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진한 편이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에 관하여 살펴본 연구로 안종순(2015)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영세 자영업자로 정의하여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민간보험(개인연금,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및 새로운 기술 습득 여부를 활용하여 사회적 위험 대응 정도를 살펴보고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사회적 위험 대응 정도를 살펴보는 것에 그치며, 그들의 사회적 위험 취약성에 관해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표 2-3〉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관련 국내 연구 동향

연구자	연구 목적
이승렬 외(2009)	자영업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
전용일 외(2012)	생계형 자영업 실태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국제노동법연구원(2014)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 방안
안종순(2015)	자영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질성과 사회적 위험 대응의 계층 간 차이
김석영 외(2015)	자영업자 고용보험 장기 가입 인센티브 도입 방안
이달휴, 조홍석(2015)	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가입 강제의 헌법적 문제
이병희 외(2016)	자영업자 문제와 사회적 보호 필요성
류건식, 강성호, 김동겸(2017)	자영업자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 방안
이기평, 김영미(2018)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개선 방안

제2절 자영업자 정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자영업자 용어 정의와 연구 동향을 참고하여 농림어업종사자를 제외한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를 구분하여 고용주와 자영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한다. 농림어업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자영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농림어업 분야의 자영업자는 타 분야의 자영업자와 기존 사회안전망 지원 정책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농림어업종사자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여 살펴본다. 또한 자영업자와 다른 특성을 가지는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영업자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3 장

변화 추이 및 특성

제1절 자영업자 변화 추이 및 특성

제2절 소결

본 장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의 변화 추이 및 변화 특성을 살펴본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하여 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월 조사되고 있다(통계청, 2019. 1. 31. 인출).

제1절 자영업자 변화 추이 및 특성

우리나라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2000년 후반을 기점으로 그 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⁵⁾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1999년 자영업자 비중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현상을 보인다. 당시 구조조정의 여파로 임금 근로자들의 실직이 많아져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취업난으로 인해 임금근로자의 자영업자 전환 현상 등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취업자의 임금근로자화 현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취업자 중

5) 통계별 조사 대상의 차이로 인해 자영업 현황은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이병희 외(2016)를 참고할 수 있다. 국세통계는 조사 기간 중 사업체 등록이 된 적 있는 모든 사업체가 대상이며,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전국사업체조사는 사업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조사 시점에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조사 대상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부업으로 활동하는 자영업은 집계되지 않으며,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한 번만 집계된다. 전국사업체조사에서 노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 연구는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장 및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이므로, 사업체가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사업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수'를 살펴볼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자영업자 현황을 살펴보았다.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매년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자영업자의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1999년을 기점으로 하여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족형, 즉 생계형 자영업이 크게 위축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즉 무급가족종사자도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가족 형태의 자영업 위축으로 그 비율과 절대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03년 신용대란 이후 자영업자의 절대 수와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자영업자 비율은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증가와 세계화의 영향 등으로 자영업자 비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서는 아직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표 3-1〉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단위: 천 명)

	계	비임금근로	자영업자				임금근로
				무급가족			
				고용원 유	고용원 무		
1990	18085	7135	5068	1168	3900	2067	10950
1991	18649	6950	4977	1291	3686	1974	11699
1992	19009	7097	5169	1370	3800	1928	11911
1993	19234	7290	5258	1364	3895	2032	11944
1994	19848	7370	5376	1463	3913	1994	12479
1995	20414	7515	5569	1520	4049	1946	12899
1996	20853	7653	5710	1605	4105	1943	13200
1997	21214	7810	5901	1639	4262	1908	13404
1998	19938	7641	5616	1392	4225	2025	12296
1999	20291	7628	5703	1351	4351	1925	12663
2000	21173	7817	5876	1455	4421	1941	13356
2001	21614	7955	6071	1548	4523	1884	13659
2002	22232	8026	6212	1614	4598	1814	14206
2003	22222	7773	6066	1630	4436	1707	14449

	계	비임금근로	자영업자				임금근로
				고용원 유		고용원 무	
2004	22682	7746	6161	1677	4484	1585	14936
2005	22831	7645	6141	1656	4486	1503	15186
2006	23188	7580	6109	1630	4479	1471	15608
2007	23561	7467	6048	1567	4481	1419	16095
2008	23775	7418	6005	1538	4467	1413	16357
2009	23688	7102	5749	1532	4217	1352	16586
2010	24033	6922	5643	1515	4127	1279	17111
2011	24527	6930	5657	1526	4132	1273	17596
2012	24955	7034	5768	1570	4199	1266	17921
2013	25299	6934	5703	1533	4169	1232	18365
2014	25897	6939	5720	1581	4139	1219	18959
2015	26178	6776	5622	1609	4013	1153	19402
2016	26409	6740	5614	1584	4030	1126	19669
2017	26725	6791	5682	1608	4074	1110	19934
2018	26822	6739	5638	1651	3987	1101	20084

주: 1) 계(취업자)=비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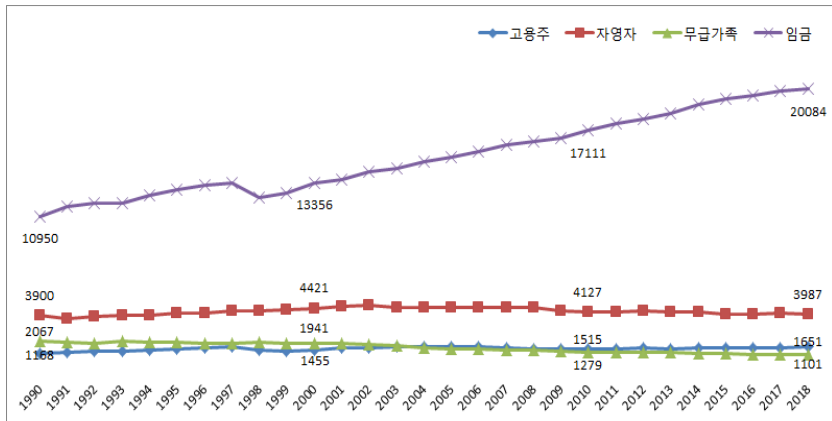
2)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3)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료: 통계청(2018a).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3-1]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추이: 전 산업

(단위: 천 명)



주: 1) 계(취업자)=비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3)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료: 통계청(2018a).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32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표 3-2〉 자영업자 비율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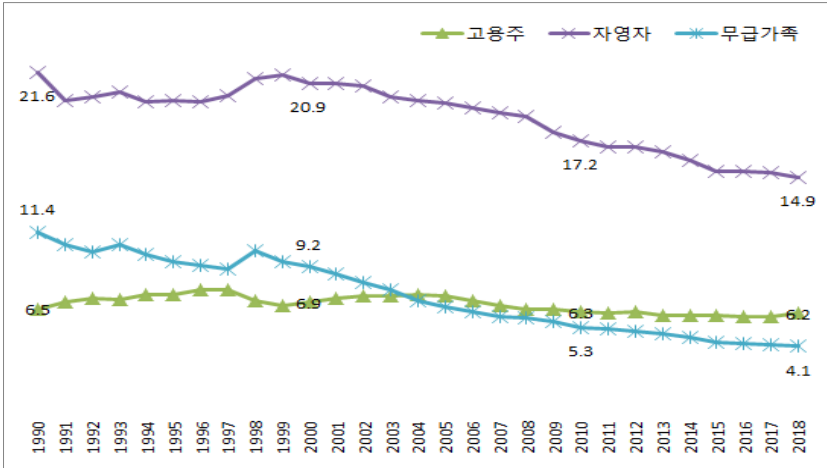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고용원 유	고용원 무	
1990	39.5	28.1	6.5	21.6	11.4
1991	37.3	26.7	6.9	19.8	10.6
1992	37.3	27.2	7.2	20.0	10.1
1993	37.9	27.4	7.1	20.3	10.6
1994	37.1	27.1	7.4	19.7	10.0
1995	36.8	27.2	7.4	19.8	9.5
1996	36.7	27.4	7.7	19.7	9.3
1997	36.8	27.8	7.7	20.1	9.0
1998	38.3	28.2	7.0	21.2	10.2
1999	37.6	28.1	6.7	21.4	9.5
2000	36.9	27.8	6.9	20.9	9.2
2001	36.8	28.1	7.2	20.9	8.7
2002	36.1	28.0	7.3	20.7	8.2
2003	35.0	27.3	7.3	20.0	7.7
2004	34.1	27.2	7.4	19.8	7.0
2005	33.5	26.9	7.3	19.6	6.6
2006	32.7	26.3	7.0	19.3	6.3
2007	31.7	25.7	6.7	19.0	6.0
2008	31.2	25.3	6.5	18.8	5.9
2009	30.0	24.3	6.5	17.8	5.7
2010	28.8	23.5	6.3	17.2	5.3
2011	28.3	23.0	6.2	16.8	5.2
2012	28.2	23.1	6.3	16.8	5.1
2013	27.4	22.6	6.1	16.5	4.9
2014	26.8	22.1	6.1	16.0	4.7
2015	25.9	21.4	6.1	15.3	4.4
2016	25.5	21.3	6.0	15.3	4.3
2017	25.4	21.2	6.0	15.2	4.2
2018	25.1	21.1	6.2	14.9	4.1

주: 비임금근로자비율=(비임금근로자 수÷전체 취업자 수)×100

자료: 통계청(2018a).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3-2]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율 추이: 전 산업

(단위: %)



주: 비임금근로자비율=(비임금근로자 수÷전체 취업자 수)×100

자료: 통계청(2018a).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편 농림어업 종사자는 자영업 종사자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자영업자 현황의 편차를 고려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을 제외하고 살펴보았다. 농림어업을 제외한 최근의 자영업 규모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비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5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 비율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4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표 3-3〉 자영업자 수와 비율 추이

(단위: 천 명,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5031	5076	4769	4800	4855	415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고용원 유	1535	1594	1555	1542	1569	1437
	30.5	31.4	32.6	32.1	32.3	34.6
고용원 무	3497	3482	3214	3259	3259	2713
	69.5	68.6	67.4	67.9	67.9	65.4

주: 1) 농림어업 제외.

2) 연간 평균 가중치 적용.

자료: 통계청(2018a).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3-4〉 자영업자 부문의 종사자 규모별 비율

(단위: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5인 미만	36.5	36.2	34.9	34.1	33.9	33.0
10인 미만	15.6	15.6	15.1	15.3	15.4	15.5
30인 미만	17.6	17.6	17.7	17.8	17.9	17.9
30인 이상	30.4	30.7	32.3	32.8	32.8	33.6

주: 1) 농림어업 제외.

2) 연간 평균 가중치 적용.

자료: 통계청(2018a).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산업별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영세형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경쟁력을 상실한 영세형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산업이다.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종사자 규모가 5인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업이 점차 전문화 및 대형화되어 감에 따라 생계형 및 가족형 자영업자들은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에 따라 생계형 및 가족형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분야의 영세 자영업자 상당수가 빈곤 위험 및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3-5〉 자영업자 부문의 산업별 비율 변화

(단위: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광업	0.0	0.0	0.0	0.0	0.0	0.0
제조업	8.8	8.7	8.8	9.0	8.9	9.1
전기가스	0.0	0.0	0.0	0.0	0.0	0.0
수도폐기물	0.1	0.1	0.1	0.2	0.1	0.2
건설업	8.2	8.4	8.7	8.3	8.5	7.8
도소매업	26.1	25.4	25.8	25.6	24.9	25.0
운수창고	13.3	12.7	13.3	13.1	12.6	12.2
숙박음식	12.1	12.5	12.3	12.9	13.5	12.8
정보통신	1.1	1.4	1.4	1.6	1.5	1.7
금융보험	0.6	0.6	0.6	0.7	0.8	0.8
부동산	2.6	2.5	2.7	3.1	3.3	3.6
전문과학	2.7	3.0	3.0	2.9	3.0	3.6
공공행정	1.3	1.7	1.8	1.9	1.8	2.0
교육	7.9	8.2	7.3	7.0	7.0	7.3
보건복지	1.7	1.9	2.0	1.7	1.7	2.0
예술여가	2.9	3.0	2.7	2.6	2.8	2.9
기타	10.6	9.8	9.4	9.5	9.6	9.2

주: 1) 농림어업 제외.

2) 연간 평균 가중치 적용.

3) 기타에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생산활동 포함.

자료: 통계청(2018a).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3-6〉 산업별 고용원 유무에 따른 비율

(단위: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광업	52.0	48.0	100	0.0	21.1	79.0	0.0	100	100	0.0	0.0	0.0
제조업	50.6	49.4	49.2	50.8	50.5	49.5	48.7	51.4	48.8	51.2	51.5	48.5
전기가스	0.0	100	21.9	78.1	30.2	69.8	0.0	100	0.0	100	0.0	100
수도폐기	26.0	74.0	46.2	53.8	53.1	46.9	52.3	47.7	51.0	49.0	67.0	33.0
건설업	40.2	59.8	41.0	59.0	41.9	58.1	37.4	62.6	37.7	62.3	42.3	57.7
도소매업	27.6	72.4	28.5	71.5	29.8	70.2	30.8	69.2	30.8	69.2	34.1	65.9
운수창고	5.5	94.5	5.5	94.5	5.3	94.7	5.2	94.8	5.4	94.6	4.9	95.1
숙박음식	51.3	48.7	52.9	47.2	55.6	44.4	54.5	45.6	52.6	47.5	55.8	44.2
정보통신	33.3	66.7	37.2	62.8	35.2	64.8	28.5	71.5	25.2	74.8	27.4	72.7
금융보험	37.8	62.2	23.2	76.8	28.1	72.0	36.1	63.9	31.6	68.5	34.8	65.2
부동산	24.2	75.8	21.4	78.7	18.3	81.8	23.0	77.0	28.2	71.8	27.1	72.9

36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전문과학	49.6	50.4	43.1	56.9	47.5	52.5	50.4	49.6	45.8	54.2	47.8	52.2
공공행정	46.3	53.7	45.7	54.4	45.9	54.1	40.6	59.4	43.5	56.5	48.8	51.2
교육	20.0	80.0	20.2	79.8	23.9	76.1	24.4	75.6	26.6	73.4	27.3	72.7
보건복지	92.4	7.6	94.7	5.3	93.5	6.5	92.4	7.6	86.1	14.0	88.9	11.1
예술여가	21.2	78.8	22.7	77.3	22.5	77.5	20.2	79.8	24.2	75.8	25.4	74.6
협회단체, 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5.6	84.4	17.6	82.4	17.1	82.9	16.1	83.9	16.5	83.5	15.6	84.4

주: 1) 농림어업 제외.

2) 연간 평균 가중치 적용.

자료: 통계청(2018a).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3-7〉 산업별 종사자 규모에 따른 비율(2018)

(단위: %)

	5인 미만	10인 미만	30인 미만	30인 이상
광업	10.8	9.7	26.7	52.8
제조업	14.2	13.0	19.3	53.5
전기, 가스	1.8	2.0	9.9	86.3
수도, 하수, 폐기물	10.4	13.7	29.1	46.8
건설업	32.0	27.4	24.0	16.6
도매 및 소매업	58.5	15.5	12.5	13.6
운수 및 창고	44.5	6.6	12.1	36.8
숙박 및 음식점	60.4	24.5	9.7	5.3
정보통신	13.1	9.8	20.6	56.5
금융 및 보험	6.7	6.4	36.3	50.7
부동산	55.0	20.2	16.4	8.4
전문, 과학 서비스	22.9	16.1	17.3	43.6
공공행정, 국방	24.2	19.1	27.8	28.8
교육서비스	5.6	3.7	15.4	75.3
보건복지서비스	24.0	11.1	14.1	50.8
예술여가	14.4	22.0	23.8	39.8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49.0	13.1	18.4	19.5

주: 1) 농림어업 제외.

2) 연간 평균 가중치 적용.

자료: 통계청(2018a).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연령대별 임금근로자+자영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40세 미만 연령층에서의 자영업자 비율은 2018년 기준 8.9%, 40~49세 연령

대 내 자영업자 비율은 21.8%, 50~59세 연령대 내 자영업자 비율은 26.2%,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율은 31.1%로 나타났다. 40세 미만 청년층은 2013년 9.5%에서 2018년 약 8.9%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2013년 31.1%, 2015년 32.2%, 2018년 31.1%로 계속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취업자의 임금근로자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내 자영업자 비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 부문의 연령대별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40세 미만과 40대 자영업자 비율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반면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율은 증가하는 연령 내 이질적인 변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 연령층은 자영자를 포함한 종사자 규모가 5인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전체 자영업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은 전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젊은 층의 자영업 창업 비율은 감소하고 고령층의 창업 비율은 증가함에 따라 자영업자 부문의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자의 임금근로자화 현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비율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만 해당하는 현상으로 고령층은 임금근로자로의 취업 기회가 제한적이거나 기업에서의 장기간 근속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며,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에 따른 중고령층의 취업난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금재호 외, 2009). 즉 전체 취업자의 고령화와 함께 자영업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고령층뿐만 아니라 임금근로자에서 은퇴 이후 자영업 창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고령화 현상은 빈곤 위험성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금재호 외, 2009).

〈표 3-8〉 연령대 내 자영업자 비율

(단위: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0세 미만	9.5	9.6	9.8	9.8	9.4	8.9
40~49세	22.4	21.7	22.2	21.9	22.1	21.8
50~59세	29.1	28.0	28.5	27.6	27.6	26.2
60세 이상	31.1	30.2	32.2	31.4	31.0	31.1

주: 1) 농림어업 제외.

2) 연간 평균 가중치 적용.

3) 40세 미만 자영업자 비율= {40세 미만 자영업자 수÷(40세 미만 임금근로자+40세 미만 자영업자 수)}×100, 연령대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여 산출.

자료: 통계청(2018a).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3-9〉 자영업자 부문의 연령대별 비율 변화

(단위: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0세 미만	20.5	20.6	19.0	19.1	18.0	17.3
40~49세	30.4	29.8	30.3	29.6	29.4	28.6
50~59세	32.2	32.0	32.6	32.1	32.7	31.5
60세 이상	16.9	17.7	18.1	19.1	20.0	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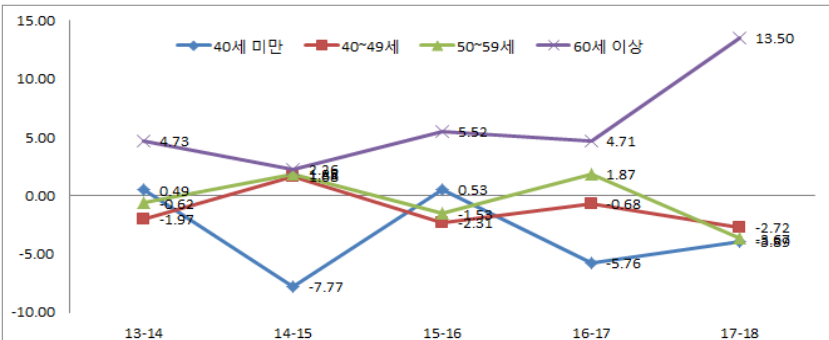
주: 1) 농림어업 제외.

2) 연간 평균 가중치 적용.

자료: 통계청(2018a).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3-3〕 연령대별 자영업자 증감률 추이

(단위: %)



주: 1) 농림어업 제외.

2) 연간 평균 가중치 적용.

3) 증감률=[(t+1년-t년)÷t년]×100

4) x축은 t년과 t+1년의 표기(예: 2013년과 2014년은 “13-14”)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2018a).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3-10〉 연령대별 고용원 유무에 따른 비율 변화

(단위: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40세 미만	33.1	66.9	34.9	65.1	35.3	64.7	34.6	65.4	34.3	65.8	37.4	62.6
40~49세	37.5	62.6	38.6	61.4	39.4	60.6	38.4	61.7	37.6	62.4	40.3	59.7
50~59세	29.4	70.6	30.6	69.4	32.7	67.3	32.5	67.5	33.4	66.6	35.7	64.3
60세 이상	16.9	83.1	16.6	83.4	18.1	81.9	19.3	80.7	21.1	78.9	23.9	76.1

주: 1) 농림어업 제외.

2) 연간 평균 가중치 적용.

자료: 통계청(2018a).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3-11〉 연령대별 종사자 규모에 따른 비율(2018)

(단위: %)

	5인 미만	10인 미만	30인 미만	30인 이상
40세 미만	23.2	16.1	19.7	41.1
40~49세	32.1	15.5	16.9	35.6
50~59세	39.4	14.6	16.1	29.9
60세 이상	49.6	15.8	17.8	16.7

주: 1) 농림어업 제외.

2) 연간 평균 가중치 적용.

자료: 통계청(2018a).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최근의 자영업자 부문 교육 수준별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대졸 이상의 자영업자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사회의 전반적인 고학력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자영업자 부문 내 고용원 유무별로 살펴보면 저학력자일수록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혹은 종사자 5인 미만 규모의 자영업자에 속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2〉 자영업자 부문의 교육 수준별 비율 변화

(단위: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초졸 이하	7.6	6.9	6.2	5.9	5.3	4.5
중졸	11.4	10.8	10.1	9.7	9.2	9.1
고졸	42.0	41.1	42.1	42.4	42.9	40.4
대졸 이상	39.1	41.2	41.5	42.1	42.6	45.9

주: 1) 농림어업 제외.

2) 연간 평균 가중치 적용.

자료: 통계청(2018a).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3-13〉 교육 수준별 고용원 유무에 따른 비율 변화

(단위: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초졸 이하	11.1	88.9	9.9	90.1	11.7	88.3	12.5	87.5	13.8	86.2	12.9	87.1
중졸	14.5	85.5	16.3	83.7	18.4	81.6	19.0	81.0	18.5	81.5	17.5	82.5
고졸	28.2	71.8	29.0	71.0	28.9	71.1	28.8	71.2	28.5	71.5	30.0	70.0
대졸 이상	41.4	58.6	41.4	58.7	43.0	57.0	41.2	58.8	41.5	58.5	44.2	55.8

주: 1) 농림어업 제외.

2) 연간 평균 가중치 적용.

자료: 통계청(2018a).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3-14〉 교육 수준별 종사자 규모에 따른 비율(2018)

(단위: %)

	5인 미만	10인 미만	30인 미만	30인 이상
초졸 이하	46.9	19.4	19.1	14.7
중졸	49.3	17.2	17.4	16.1
고졸	40.9	16.8	17.7	24.7
대졸 이상	25.2	14.3	17.9	42.6

주: 1) 농림어업 제외.

2) 연간 평균 가중치 적용.

자료: 통계청(2018a).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제2절 소결

최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며 최근 들어 자영업자의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감소 현상은 사회보장제도가 미성숙하며 소득 파악 인프라가 취약한 국가일수록 노동시장의 한계 집단이 자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Carrasco & Ejrnaes, 2012; 이병희 외, 2016 재인용)를 고려하면 긍정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부문의 인구학적 특성 변화를 살펴보면 긍정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젊은 층의 자영업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층 자영업자 비율은 증가하는 자

영업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영업자 부문의 교육 수준별 취업자 비율을 보면 저학력일수록 영세 자영업 비율이 높다. 자영업자의 절대적 숫자와 비율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자영업자 부문 내 이질적인 변화 추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 선택에 대한 설명 이론으로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과 비금전혜택이론(non-pecuniary benefits theory)이 있다. 전자는 자기 사업이 임금근로보다 기대소득이 높으므로 자영업을 선택한다는 이론이며(Rees & Shaw, 1986), 후자는 자기 사업은 임금근로보다 근무시간의 자유 및 소유주로서 가지는 비금전적 혜택이 크기 때문에 자영업을 선택한다는 이론이다(Hamilton, 2000). 이러한 자영업 선택에 관한 이론은 자영업자의 이질적 특성이 강한 한국의 자영업 노동 시장을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실제로 우리나라 자영업자 선택 특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금재호, 조준모(2000), 전병유(2003), 김기승, 조준모(2006), 금재호 외(2009)의 여러 연구에서 한국의 자영업자는 높은 생산성과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있는 고생산성 계층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영업에 종사하는 집단과 정규직 임금근로 취업이 어려워 다른 대안이 없어 자영업에 종사하는 저생산성 계층이 혼재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서비스업이 점차 전문화 및 대형화되어 감에 따라 생계형 및 가족형 자영업자들은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에 따라 생계형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소매, 숙박, 음식업 분야의 영세 자영업자 상당수가 빈곤 위험 및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취업자의 임금근로자화 현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만 해당하는 현상으로 고령층은 임금근로자로의 취업

기회가 제한적이거나 기업에서의 장기간 근속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며,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에 따른 중고령층의 취업난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금재호 외, 2009). 결국 이러한 자영업자의 이질적 현상은 빈곤 위험성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제 4 장

소득 현황 및 소득 빈곤

제1절 자영업가구의 소득

제2절 자영업가구의 지출

제3절 자영업가구의 소득 빈곤

제4절 소결

4

소득 현황 및 소득 빈곤 <<

본 장에서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자영업가구의 소득과 지출, 빈곤 현황을 살펴본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부터 매년 조사되고 있다(통계청 홈페이지, 2019. 1. 31. 인출). 본 장은 2012년부터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는데, 소득과 소비는 조사 실시 전년도를 기준으로 파악하므로 실제 소득 현황 분석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가 된다. 이하 본 장은 실제 소득이 해당되는 연도를 기준(2011~2017년)으로 제시한다.

한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2017년 조사(2016년 기준 자료)부터 소득과 비소비지출에 대한 조사 자료는 응답오차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 보건복지부, 각 연금공단 등의 행정 자료와 연계하여 작성되고 있다(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9. 1. 31.). 따라서 통계청은 2017년 전후의 소득 현황 추이를 직접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장은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2011~2017년의 소득 현황 변화에 대한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자영업가구의 소득

소득은 가구의 경제 상태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변수이다. 즉 소득은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이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

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 자영업가구는 가구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가구주를 기준으로 종사상지위가 자영업(고용주, 자영자)인 가구로 정의한다.⁶⁾ 자영업가구의 소득 현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임금근로가구와 비교 분석을 한다. 따라서 본 장은 종사상지위를 기준으로 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자(실적급의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 기타(무직자, 가사, 학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분석에서 제외한다.⁷⁾

자영업가구는 규모에 따른 특성 차이가 크므로, 고용원 유무에 따라 고용주와 자영자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여기서 고용주는 고용원을 1명 이상 고용한 자영업가구, 자영자는 고용원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가구이다. 산업 중, 자영업가구에서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이는 농림어업은 분석에서 제외한다.⁸⁾

소득은 분석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 가능한데, 본 연구는 가구 규모에 따른 가구후생수준을 반영한 월평균 시장소득과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소득균등화는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식으로, 가구소득을 제곱근한 가구원 수로 나눈다. 시장소득은 세전소득이라고도 하며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한 것이다.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공적이전지출을 제외한 것이다. 여기서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을 의미하며 공적이전지출은 세금,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 등을 의미한다.

6) 자영업가구에 관한 선행연구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자영업가구를 정의함. 따라서 자영업가구의 소득 구성 중 자영업으로 인한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원들의 종사상지위에 따라 근로소득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힘.

7) 2017년을 기준으로 전체 조사 대상 1만 8640명 중 가구주의 종사상지위가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2명(0.01%), 기타종사자 215명(1.2%), 기타 4546명(24.4%)임.

8) 농림어업은 현행 소상공인 관련 지원법에서도 적용 대상 산업이 아님.

일반적으로 처분가능소득은 사회보장정책의 효과로 인해 시장소득보다 가구 간의 소득 차이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뿐 가구 특성별 소득 현황은 시장소득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본 연구는 처분가능소득을 중심으로 소득 현황을 살펴본다.

자영업가구가 임금근로가구보다 소득 수준이 높고, 자영업가구 내에서는 고용주가 자영자보다 소득 수준이 높다. 2017년 기준 자영업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268만 원으로 임금근로가구의 257만 원보다 약 11만 원 더 많다. 자영업가구 중 고용주의 처분가능소득은 362만 원으로 자영자 231만 원보다 131만 원 더 많다. 따라서 가구주의 임금근로 여부에 따른 가구 간 소득 차이(11만 원)보다, 자영업가구 내에서의 소득 차이(131만 원)가 압도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분석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가구주의 임금근로 여부에 따른 소득 차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줄어들고 있다. 2011년 자영업가구(211만 원)와 임금근로가구(186만 원)의 처분가능소득 차이는 25만 원이었으나 2014년 18만 원(자영업가구 229만 원, 임금근로가구 211만 원), 2017년 11만 원(자영업가구 268만 원, 임금근로가구 257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자영업가구 중 고용주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의 변화 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그림 4-3). 분석 기간 중 고용주가구는 다른 가구와 달리 2014년과 2015년에 마이너스의 소득증감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후 2016년부터 고용주가구는 다른 가구보다 높은 플러스의 증감률로 반전된 모습이다.

48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표 4-1〉 시장소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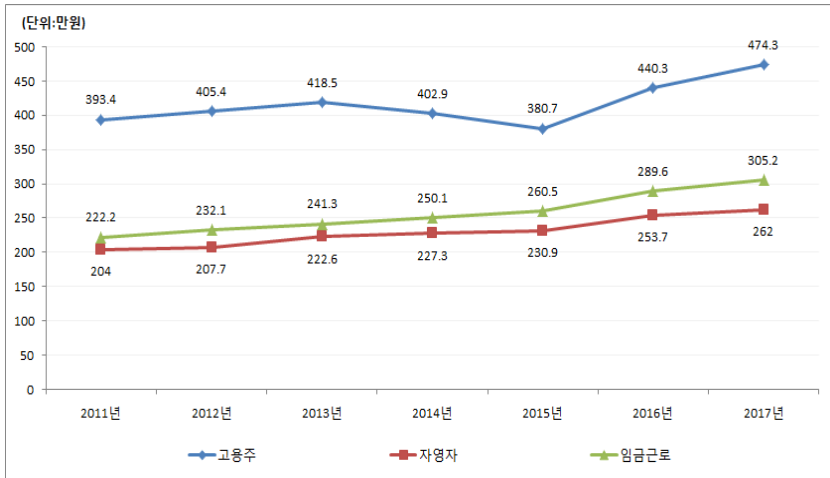
(단위: 만 원)

	자영업가구	고용주		임금근로가구
		고용주	자영자	
2011년	258.7	393.4	204.0	222.2
2012년	263.7	405.4	207.7	232.1
2013년	274.4	418.5	222.6	241.3
2014년	274.0	402.9	227.3	250.1
2015년	273.1	380.7	230.9	260.5
2016년	308.9	440.3	253.7	289.6
2017년	322.2	474.3	262.0	305.2

주: 가구소득을 제공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소득임.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4-1] 시장소득 추이



주: 가구소득을 제공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소득임.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표 4-2〉 처분가능소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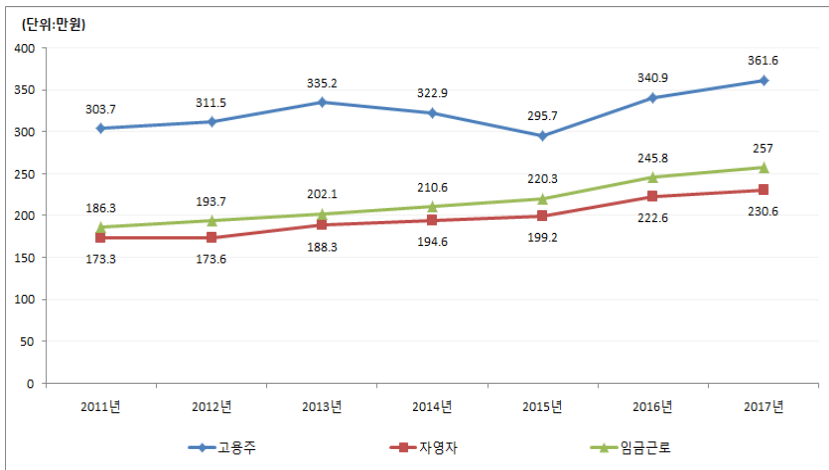
(단위: 만 원)

	자영업가구	고용주		임금근로가구
		고용주	자영자	
2011년	211.0	303.7	173.3	186.3
2012년	212.6	311.5	173.6	193.7
2013년	227.2	335.2	188.3	202.1
2014년	228.7	322.9	194.6	210.6
2015년	226.4	295.7	199.2	220.3
2016년	257.5	340.9	222.6	245.8
2017년	267.8	361.6	230.6	257.0

주: 가구소득을 제공근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소득임.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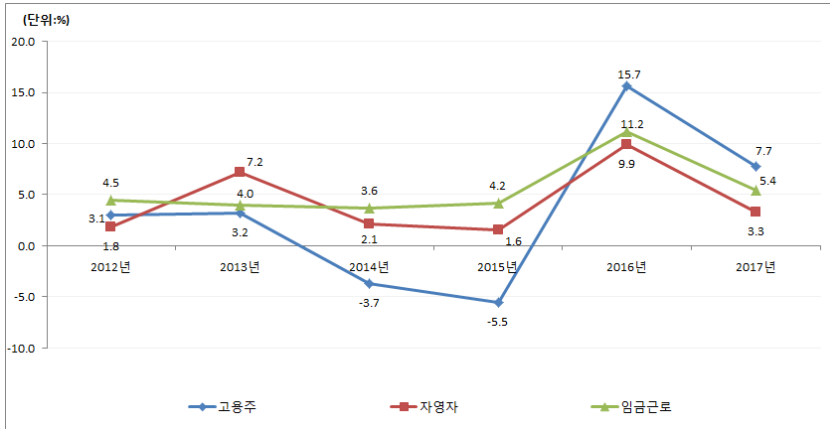
[그림 4-2] 처분가능소득 추이



주: 가구소득을 제공근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소득임.

자료: 통계청(2012~2018),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4-3] 처분가능소득 증감을 추이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소득 5분위 분포를 살펴보면 자영업가구와 임금근로가구 모두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의 비율이 적고 3~5분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분석 기간 동안 유지되지만, 자영업가구의 경우 최근으로 올수록 1분위 비율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2011년 자영업가구의 1분위 비율은 8.3%에서 2014년 7.2%, 2017년 6.8%로 줄어 들고 있다. 임금근로가구는 2분위 비율 감소, 5분위 비율 증가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임금근로가구의 2분위 비율은 2011년 20.5%에서 2014년 19.1%, 2017년 1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임금근로가구의 5분위 비율은 같은 기간 23.7%, 24.8%, 27.1%로 증가하고 있다.

결국 소득 5분위 분포를 통해 자영업가구와 임금근로가구 모두 소득 분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자영업가구는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비율이 줄어 들고 있으며, 임금근로가구는 소득 2분위 비율이 줄어 들고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 처분가능소득 분포

(단위: %)

	자영업가구					임금근로가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1년	8.3	17.8	24.5	24.3	25.2	9.0	20.5	22.8	24.0	23.7
2012년	9.4	18.6	22.8	24.9	24.4	8.3	19.2	23.4	24.7	24.4
2013년	7.6	17.9	22.3	25.8	26.3	8.1	19.5	23.7	24.6	24.2
2014년	7.2	18.1	23.3	24.7	26.7	7.5	19.1	23.9	24.8	24.8
2015년	7.1	19.7	22.3	25.6	25.3	6.5	18.9	24.3	25.2	25.2
2016년	6.8	18.1	24.9	24.6	25.6	8.9	18.3	21.9	25.4	25.5
2017년	6.8	18.6	24.6	24.6	25.4	9.2	17.0	22.3	24.4	27.1

주: 가구소득을 제곱근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소득임.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자영업가구의 고용원 유무별 소득 5분위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2011~2017년 고용주가구의 소득은 5분위 비율이 40~46% 수준으로 높은 반면 1분위 비율은 4~6%로 낮다. 자영자가구는 고용주가구와 반대로 5분위 비율이 17~20%로 낮은 편이며, 1분위 비율이 8~11%로 높은 편이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2011~2017년 동안 자영업가구의 1분위 비율 감소는, 주로 자영자가구에 의해 주도된 것을 알 수 있다. 고용주의 1분위 비율은 2011년 3.9%에서 2014년 3.7%, 2017년 4.2%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지만 그 변화는 크지 않다. 반면 자영자는 2011년 10%에서 2014년 8.4%, 2017년 7.9%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자는 고용주나 임금근로가구에 비해 소득분포가 왼쪽으로 치우친 모습이며, 이는 2011년 대비 2017년에 보다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그림 4-4, 4-5). 이는 자영자가구가 서로 이질적이며 소수의 고소득자가 평균 임금을 좌우하는 현상이 다른 가구들에 비해 높음을 의미한다. 즉 자영자가구는 전반적으로 고용주가구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고, 1분위 비율 등 저소득 비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자영자가구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52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표 4-4〉 자영업가구의 고용원 유무별 처분가능소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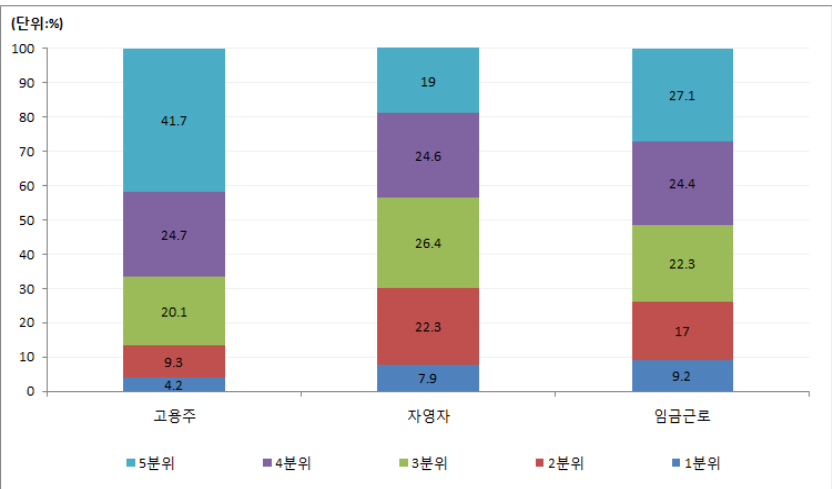
(단위: %)

	고용주					자영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1년	3.9	9.3	17.3	25.2	44.3	10.0	21.3	27.4	23.9	17.4
2012년	5.7	10.3	16.3	24.9	42.8	10.8	21.9	25.3	24.9	17.1
2013년	5.1	9.4	14.7	26.1	44.8	8.6	21.0	25.1	25.7	19.6
2014년	3.7	9.8	16.2	24.8	45.6	8.4	21.2	25.9	24.7	19.9
2015년	3.9	12.7	15.9	27.7	39.8	8.3	22.5	24.8	24.8	19.6
2016년	4.3	10.8	20.8	25.1	39.1	7.9	21.1	26.6	24.4	20.0
2017년	4.2	9.3	20.1	24.7	41.7	7.9	22.3	26.4	24.6	19.0

주: 가구소득을 제공근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소득임.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4-4〕 처분가능소득 분포: 2017년 소득 5분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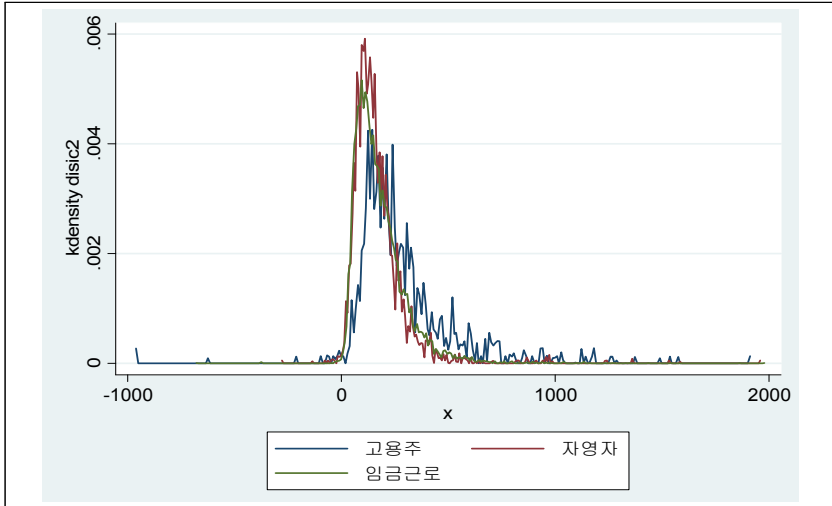


주: 가구소득을 제공근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소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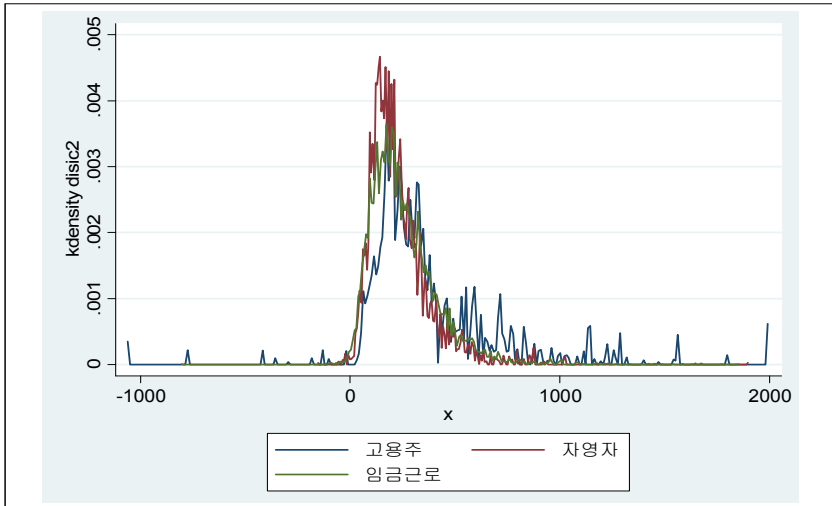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4-5] 처분가능소득 분포 변화: 커널밀도추정(확대)

〈2011〉



〈2017〉



주: 1) 가구소득을 제공근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소득임.

2) [그림 4-4]의 밀집 구역 분포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소득 수준 2000만 원까지로 확대한 그림으로, 2011년 전체 표본인 1만 4248명에서 임금근로 2명, 고용주 4명, 자영자 1명인 총 7명, 2017년 전체 표본인 1만 2538명에서 임금근로자 6명, 고용주 3명, 자영자 2명인 총 11명이 삭제된 표본임.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자영업가구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소득 차이를 살펴보면 고용주의 경우 연령이 젊을수록 소득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60세 이상 연령층의 소득 수준이 50~59세에 비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표 4-5). 2011년 40세 미만의 처분가능소득은 261만 원으로 가장 낮고 40~49세 301만 원, 50~59세 325만 원, 60세 이상 332만 원 순으로 높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고용주의 연령이 50~59세인 가구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높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2017년 기준으로 40세 미만의 소득은 267만 원으로 가장 낮고, 그다음 40~49세 331만 원, 60세 이상 394만 원, 50~59세 416만 원 순으로 높다.

고용주의 교육 수준과 소득 간에는 일관된 패턴이 보이지 않지만, 분석 기간 중 초등 이하의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횟수가 많다. 2017년 기준으로 초등 이하가 321만 원으로 가장 낮고, 고등학교 330만 원, 대학 이상 380만 원, 중학교 433만 원 순으로 높다.

산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분석 기간 중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고용주의 소득이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7년 기준 음식숙박업이 325만 원으로 가장 낮고 도소매업 330만 원, 제조업 342만 원, 기타 398만 원, 건설업 404만 원 순으로 높다. 분석 기간 초에는 제조업의 소득 수준이 가장 높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건설업의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특성을 보이는 것도 특징적이다.

〈표 4-5〉 자영업가구 중 고용주 특성별 처분가능소득 추이

(단위: 만 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령	40세 미만	261.3	275.6	324.3	260.3	266.2	297.0	267.3
	40~49세	301.2	284.6	287.6	287.8	265.9	303.8	331.3
	50~59세	324.8	345.8	379.5	350.4	333.5	396.6	415.9
	60세 이상	331.7	358.5	386.5	420.5	323.0	346.3	394.4
교육 수준	초등 이하	344.1	319.6	273.4	253.2	237.8	308.5	320.6
	중학교	230.9	257.9	317.9	296.8	281.3	367.6	433.1
	고등학교	273.9	289.8	332.0	299.6	277.4	300.5	330.2
	대학 이상	334.2	333.6	342.8	347.0	314.2	370.5	379.9
산업	제조업	377.4	423.8	397.4	348.6	295.1	301.9	342.3
	건설업	278.0	308.7	423.1	333.2	366.8	445.1	404.4
	도소매업	284.4	274.1	326.9	313.0	295.3	328.7	329.7
	음식숙박업	265.2	294.7	316.3	285.3	256.5	331.3	324.8
	기타	312.9	294.2	296.0	335.6	298.2	345.8	397.8

주: 가구소득을 제공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소득임.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자영업자가구는 고용주가구에 비해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소득 차이 또한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2015년은 60세 이상 고연령층의 소득이 가장 낮고 2012~2014년은 40~49세의 소득이 가장 낮았지만, 2016년부터 40세 미만 청년층의 소득 수준이 가장 낮다. 2017년 기준 40세 미만이 213만 원으로 가장 낮고, 그다음으로 60세 이상 218만 원, 40~49세 234만 원, 50~59세 246만 원 순이다.

자영업자는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 수준이 뚜렷하게 낮은 특성을 보이며,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른 산업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다. 먼저 교육 수준별로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초등 이하의 자영업자는 처분가능소득이 191만 원으로 가장 낮고 중학교 202만

원, 고등학교 237만 원, 대학 이상 244만 원 순이다.

산업의 경우, 도소매업 211만 원으로 가장 낮고, 그다음 음식숙박업 214만 원, 제조업 217만 원, 기타 240만 원, 건설업 255만 원 순이다 (2017년 기준). 최근으로 올수록, 자영업자구는 종사하는 산업에 따른 소득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2011년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건설업(187만 원)과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음식숙박업(168만 원)의 소득 차이는 약 19만 원이었지만, 2013년 약 32만 원(건설업 209만 원, 도소매업 177만 원), 2017년 약 44만 원(건설업 255만 원, 도소매업 211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표 4-6〉 자영업가구 중 자영자 특성별 처분가능소득 추이

(단위: 만 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령	40세 미만	172.8	181.1	195.2	198.1	202.7	210.4	212.5
	40~49세	174.2	163.4	182.3	186.7	198.7	219.6	234.1
	50~59세	178.6	185.8	194.7	203.6	201.5	234.6	245.5
	60세 이상	163.7	163.6	182.7	189.9	195.1	215.1	218.2
교육 수준	초등 이하	133.7	135.1	149.2	151.5	150.7	176.5	190.5
	중학교	173.3	161.5	176.4	194.5	199.0	208.4	201.8
	고등학교	176.8	183.6	190.9	197.7	202.1	220.1	237.2
	대학 이상	189.5	177.5	201.9	203.2	208.3	245.7	243.6
산업	제조업	181.2	191.7	206.0	207.3	226.9	224.2	216.5
	건설업	186.9	179.9	209.0	198.6	209.4	245.9	255.2
	도소매업	173.7	164.4	177.2	186.7	192.3	209.3	211.1
	음식숙박업	168.4	169.3	189.5	192.9	178.6	201.9	214.0
	기타	169.6	175.0	187.1	195.8	199.7	228.1	240.2

주: 가구소득을 제공근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소득임.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제2절 자영업가구의 지출

본 절에서는 자영업가구의 소득 수준을 지출변수를 이용하여 살펴본다. 자영업가구의 가구소득은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으로 구성되어 임금근로가구의 소득과 직접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금재호 외, 2009).⁹⁾ 또한 자영업가구는 소득 규모와 세금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조사 자료에서 가구소득을 축소 보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봉근, 정철, 박명호, 2008). 따라서 자영업가구의 경제 상태는 지출을 소득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여 분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한계가 있다. 가령 자영업가구의 소득은 계절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소득의 변동은 지출 규모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저축 규모를 통해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금재호 외,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가구의 소득 현황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기 위해 지출 현황을 검토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지출은 비소비지출과 소비지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소비지출은 세금, 공적연금·사회보험료, 가구 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연간 지급 이자로 구성되며 소비지출은 식료품(외식비 포함), 주거비, 교육비(보육료 포함),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소비지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가구의 소비지출 현황을 살펴본다.

자영업가구의 지출 규모가 임금근로가구보다 더 크다. 자영업가구 내에서는 고용주의 지출이 자영자보다 더 많다. 그러나 자영업가구의 지출 특성은, 가구주의 임금근로 여부에 따른 소득 차이보다 자영업가구 내에

9) 자영업자는 자신의 사업에 단순히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 시설비, 권리금, 상품 등의 형태로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투자한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즉 자영업자 소득에는 자산에 대한 기회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임금근로자 소득은 순수한 근로소득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가구와 임금근로가구의 소득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금재호 외, 2009).

서 고용원 유무에 따른 소득 차이가 더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 절의 소득 현황뿐 아니라 본 절의 지출 현황을 통해서도, 자영업가구 내에서의 경제 수준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분석 기간 중 동일하게 유지된다. 2017년 기준으로 고용주가구의 지출은 187만 원이며, 자영자 133만 원, 임금근로가구 143만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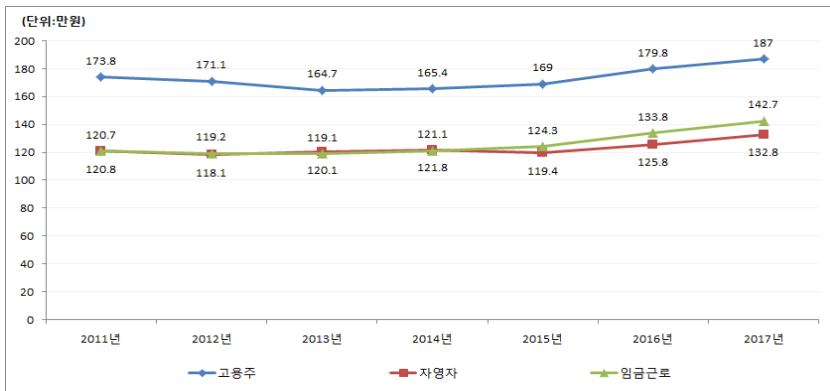
〈표 4-7〉 지출 추이

(단위: 만 원)

	자영업가구	자영업가구		임금근로가구
		고용주	자영자	
2011년	136.4	173.8	120.8	120.7
2012년	133.2	171.1	118.1	119.2
2013년	132.0	164.7	120.1	119.1
2014년	133.8	165.4	121.8	121.1
2015년	133.6	169.0	119.4	124.3
2016년	141.8	179.8	125.8	133.8
2017년	148.1	187.0	132.8	142.7

주: 가구 지출을 제공근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지출임.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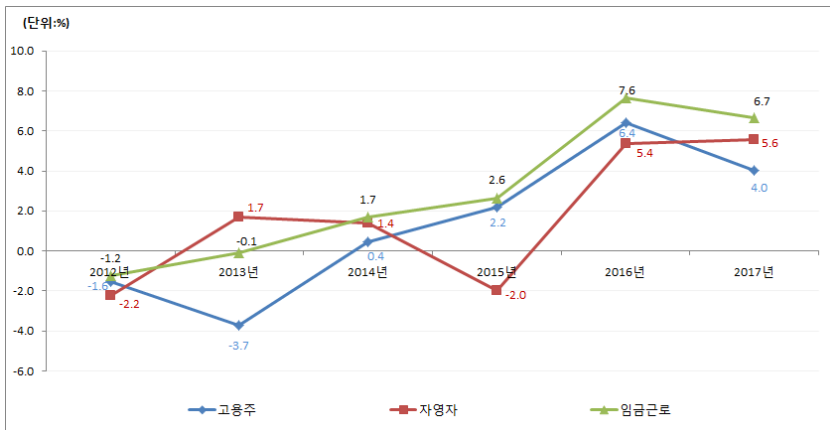
[그림 4-6] 지출 추이



주: 가구 지출을 제공근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지출임.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한편 지출 증감률 추이를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비교적 안정적인 임금근로자가구는 자영업가구에 비해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자영업가구는 변화 폭이 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영업가구 중 자영자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2014~2015년 지출의 변화 폭이 크다(그림 4-7). 분석 기간 중 자영자가구는 다른 가구와 달리 2015년에 마이너스의 지출 증감률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다른 가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림 4-7] 지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지출 5분위 분포를 살펴보면 자영업가구와 임금근로자가구 모두 지출 규모가 가장 작은 1분위의 비율이 낮고 3~5분위에 고르게 분포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분석 기간 동안 유지되는데, 소득 5분위 분포 특성과 유사하다.

자영업가구와 달리 임금근로자가구의 경우 최근으로 올수록 1분위와 2분위의 비율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반면 4분위와 5분위 비율은 뚜렷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2011년 임금근로자가구의 1분위와 2분위 비율은

각각 9.6%와 21.2%에서 2014년 8.5%와 20.3%, 2017년 6.8%와 17.8%로 줄어들었다. 또한 임금근로가구의 4분위와 5분위 비율은 2011년 각각 24.4%와 21.5%에서 2014년 24.3%와 23.7%, 2017년 26.1%와 26.6%로 늘어났다.

〈표 4-8〉 지출 분포

(단위: %)

	자영업가구					임금근로가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1년	6.6	15.0	22.0	26.6	29.7	9.6	21.2	23.3	24.4	21.5
2012년	5.9	15.5	21.7	28.5	28.4	8.9	21.2	24.0	23.3	22.6
2013년	5.4	15.8	22.3	26.6	30.0	9.3	20.3	23.7	24.0	22.7
2014년	5.0	14.7	22.8	28.4	29.0	8.5	20.3	23.3	24.3	23.7
2015년	5.5	15.4	21.8	26.9	30.4	8.4	19.2	23.4	24.2	24.7
2016년	6.0	15.0	24.0	24.6	30.5	7.7	17.8	22.5	26.0	26.0
2017년	6.9	14.0	23.2	25.7	30.2	6.8	17.8	22.7	26.1	26.6

주: 가구 지출을 제공근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지출임.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자영업가구의 고용원 유무별 지출 5분위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자영자는 고용주보다 저분위의 분포가 높은 편이며 전체적으로 지출 분포가 고른 편이다. 즉 자영자는 고용주보다 1분위와 2분위의 비율이 높고 5분위 비율은 낮다. 2017년 기준으로 자영자는 1분위 8.9%, 2분위 17.4%, 3분위 27.2%, 4분위 24.2%, 5분위 22.4%이며, 고용주는 1분위 1.9%, 2분위 5.5%, 3분위 13.1%, 4분위 29.5%, 5분위 50.0%이다.

고용주와 자영자는 모두 분석 기간 중 지출 분포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자영업가구의 고용원 유무별 지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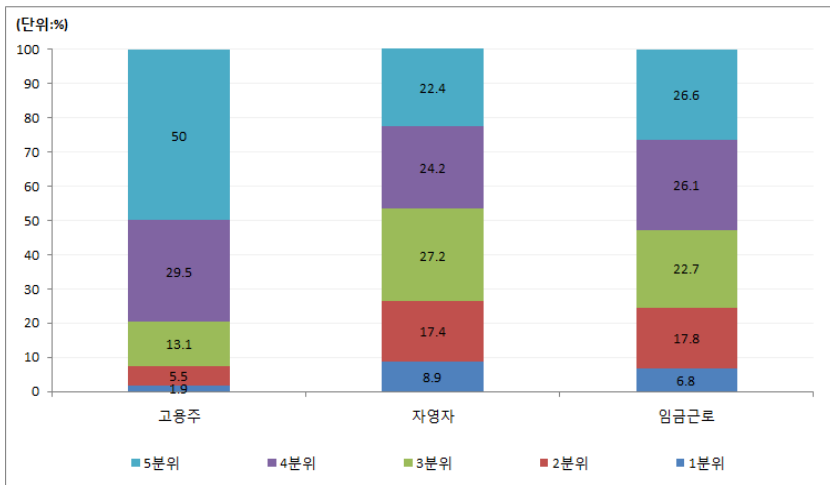
(단위: %)

	고용주					자영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1년	1.5	7.2	16.1	26.5	48.7	8.8	18.3	24.4	26.7	21.9
2012년	1.0	6.1	14.8	30.6	47.5	7.8	19.3	24.5	27.6	20.9
2013년	2.6	6.5	15.5	26.3	49.2	6.4	19.1	24.7	26.7	23.1
2014년	2.0	6.4	17.5	27.5	46.7	6.1	17.9	24.8	28.8	22.4
2015년	1.5	6.5	13.5	25.0	53.5	7.2	18.9	25.1	27.7	21.2
2016년	0.8	6.7	17.7	23.1	51.7	8.2	18.5	26.6	25.2	21.5
2017년	1.9	5.5	13.1	29.5	50.0	8.9	17.4	27.2	24.2	22.4

주: 가구 지출을 제공근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지출임.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4-8] 지출 분포: 2017년 기준



주: 가구 지출을 제공근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지출임.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가구 간 차이가 크지 않지만 자영업가구가 임금근로가구보다 낮다. 가구에 상관없이 최근으로 올수록 식료품비가 지출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배달음식이나 외식 등 최근의 변화된 식생활문화와 함께, 웰빙을 추구하며 좋은 식재료를 구매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2017년 기준으로 식료품비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자영업자가구 30.6%, 임금근로가구 30.2%, 고용주가구 27.8% 순이다.

〈표 4-10〉 식료품비 규모 및 구성비 추이

(단위: 만 원, %)

	자영업가구		임금근로가구	
		고용주	자영자	
2011년	35.3 (27.3)	43.2 (25.6)	32.1 (28.0)	34.2 (29.7)
2012년	33.5 (26.3)	41.5 (25.1)	30.3 (26.7)	33.1 (29.0)
2013년	34.4 (26.9)	40.9 (25.2)	32.1 (27.5)	33.3 (29.1)
2014년	36.6 (28.2)	43.7 (27.1)	33.9 (28.6)	34.9 (29.6)
2015년	37.5 (29.1)	43.9 (26.6)	35.0 (30.1)	36.0 (30.1)
2016년	39.9 (29.0)	47.8 (27.2)	36.5 (29.8)	38.4 (29.9)
2017년	42.4 (29.8)	50.4 (27.8)	39.3 (30.6)	41.2 (30.2)

주: 1) 가구 지출을 제공근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지출임.

2) ()는 전체 소비지출 대비 식료품비의 구성비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가구 간 차이는 크지 않다. 2017년 기준으로 자영업가구와 임금근로가구 모두 의료비 구성비는 5.7%로 확인된다. 자영업가구 내에서 자영자는 6.2%로 고용주 4.5%보다 약 1.7%포인트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의료비가 지출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자영업가구의 구성비가 다른 가구에 비해 증가 폭이 큰 편이다. 이는 1인 자영자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자영업가구의 의료비 구성비는 2011년 5.2%에서 2017년 6.2%로 1%포인트 증가하였으며, 고용주가구(4.1%→4.5%)와 임금근로가구(5.3%→5.7%)는 이보다 낮은 0.4%포인트 증가하였다.

〈표 4-11〉 의료비 규모 및 구성비 추이

(단위: 만 원, %)

	자영업가구		임금근로가구	
		고용주	자영자	
2011년	6.7 (4.9)	7.4 (4.1)	6.4 (5.2)	6.3 (5.3)
2012년	6.7 (5.2)	7.8 (4.4)	6.3 (5.5)	6.7 (5.6)
2013년	7.2 (5.6)	8.0 (4.7)	7.0 (6.0)	6.9 (5.7)
2014년	7.2 (5.5)	8.4 (4.7)	6.7 (5.8)	7.1 (6.0)
2015년	7.0 (5.3)	8.2 (5.0)	6.5 (5.5)	7.1 (5.8)
2016년	7.7 (5.8)	8.8 (5.2)	7.3 (6.1)	7.8 (5.8)
2017년	8.4 (5.7)	8.2 (4.5)	8.4 (6.2)	7.9 (5.7)

주: 1) 가구 지출을 제곱근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지출임.

2) ()는 전체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의 구성비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자영업가구와 임금근로가구 간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자영업가구 내에서 자영자가 고용주보다 주거비 구성비가 높다. 2017년 기준으로 자영업가구의 주거비 구성비는 13.9%로 임금근로가구의 13.3%보다 조금 높다(0.6%포인트). 자영업가구 내에서 자영자는 14.7%로 고용주 11.9%보다 2.8%포인트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자영자가구를 제외하고, 최근으로 올수록 주거비 구성비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자영자가구의 주거비 구성비는 2011년 14.6%에서 2013년 15.1%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은 14.7%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주가는 같은 기간 13.3%에서 12.8%, 11.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임금근로가구는 2011년 14.4%에서 2013년 14.7%로 조금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가 이어져 2017년 13.3%이다.

〈표 4-12〉 주거비 규모 및 구성비 추이

(단위: 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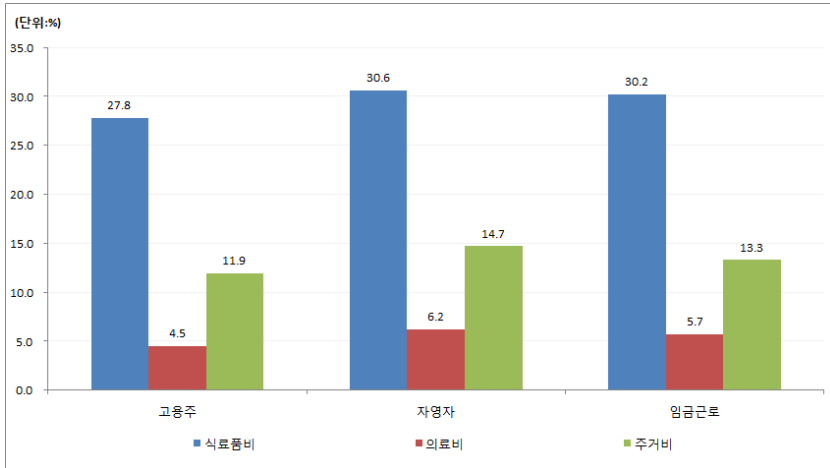
	자영업가구			임금근로가구
		고용주	자영자	
2011년	17.6 (14.2)	21.2 (13.3)	16.2 (14.6)	15.2 (14.4)
2012년	17.6 (14.5)	20.4 (12.7)	16.4 (15.3)	15.6 (14.7)
2013년	17.4 (14.5)	19.6 (12.8)	16.5 (15.1)	15.7 (14.7)
2014년	17.8 (14.4)	19.6 (12.8)	17.1 (14.9)	15.7 (14.5)
2015년	18.4 (14.6)	21.1 (12.8)	17.3 (15.3)	16.1 (14.4)
2016년	18.3 (14.0)	21.5 (12.8)	16.9 (14.5)	16.3 (13.6)
2017년	19.1 (13.9)	21.5 (11.9)	18.2 (14.7)	17.0 (13.3)

주: 1) 가구 지출을 제공근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지출임.

2) ()는 전체 소비지출 대비 주거비의 구성비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4-9] 식료품비, 의료비, 주거비 구성비: 2017년 기준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자영업가구 중 고용주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지출 규모 차이를 살펴보면 40세 미만과 60세 이상인 경우,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경우 지출 규모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연령집단별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40~59세의 지출이 200만~201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60세 이상 159만 원, 40세 미만 154만 원이다. 40세 미만의 지출은 분석 기간 중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일관되게 낮은 수준인 반면 60세 이상은 통계청의 지출 측정 방식이 변경된 2016년 이후 급격히 낮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2017년 기준 교육 수준별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대학 이상이 196만 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고등학교 177만 원, 중학교 168만 원, 초등학교 163만 원 순이다. 분석 기간 중 이러한 경향성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2017년 기준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경우 지출 규모가 163만 원으로 그 외 산업의 183만~200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특성은 분석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된다.

〈표 4-13〉 자영업가구 중 고용주 특성별 소비지출 추이

(단위: 만 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령	40세 미만	153.3	151.1	142.1	135.6	145.8	167.6	153.6
	40~49세	168.5	165.8	171.8	162.8	171.6	192.4	200.3
	50~59세	192.7	186.3	166.5	175.4	170.9	181.6	200.9
	60세 이상	174.5	175.8	174.0	184.6	190.7	158.3	159.4
교육 수준	초등 이하	154.4	160.1	109.2	105.2	169.9	148.0	163.1
	중학교	151.3	150.6	153.8	162.8	128.5	137.1	168.2
	고등학교	165.9	166.9	157.6	159.0	158.2	172.8	177.2
	대학 이상	183.9	176.9	174.1	173.7	181.9	192.0	196.2
산업	제조업	182.2	168.6	166.7	174.9	176.2	180.3	183.7
	건설업	190.0	208.7	171.0	165.6	164.5	190.7	183.1
	도소매업	165.7	163.0	157.2	164.2	171.7	175.8	188.2
	음식숙박업	152.6	152.2	151.5	153.5	150.6	155.7	163.0
	기타	182.8	180.8	174.9	167.1	175.0	191.8	199.5

주: 가구 지출을 제공근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지출임.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자영업가구 중 자영자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지출 규모 차이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인 경우,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경우 지출 규모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분석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2017년 기준 40~49세의 지출이 148만 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50~59세 137만 원, 40세 미만 130만 원, 60세 이상 118만 원 순이다. 교육 수준과 지출 간에는 뚜렷한 정의 관계를 보이는데, 2017년 기준 대학 이상이 149만 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고등학교 131만 원, 중학교 118만 원, 초등 이하 105만 원 순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123만 원으로 다른 산업의 129만~135만 원보다 지출 수준이 낮다.

〈표 4-14〉 자영업가구 중 자영자 특성별 소비지출 추이

(단위: 만 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령	40세 미만	119.5	116.5	118.5	124.5	120.2	130.0	130.0
	40~49세	130.9	126.2	128.2	126.3	128.5	137.4	147.7
	50~59세	124.9	123.2	123.0	124.4	123.4	131.5	136.6
	60세 이상	98.4	99.2	103.8	111.1	103.8	105.3	118.0
교육 수준	초등 이하	92.2	86.3	86.0	87.8	85.7	90.6	104.7
	중학교	108.9	107.9	114.2	114.1	108.6	109.2	118.1
	고등학교	123.5	120.9	119.0	121.1	120.4	126.3	131.0
	대학 이상	139.8	131.6	135.6	137.1	131.9	140.5	149.3
산업	제조업	126.0	120.1	114.4	113.6	129.0	126.9	129.1
	건설업	128.9	121.0	124.7	119.0	128.0	135.5	135.2
	도소매업	119.0	117.1	118.5	125.0	118.3	122.7	133.5
	음식숙박업	107.1	104.9	107.2	109.1	105.0	113.3	122.7
	기타	122.1	120.2	123.2	124.1	119.5	127.2	134.4

주: 가구 지출을 제공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지출임.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제3절 자영업가구의 소득 빈곤

본 절은 자영업가구의 빈곤 현황을 상대빈곤율을 이용하여 살펴본다. 빈곤선은 OECD에서 널리 이용하는 방식인,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다.

자영업가구는 임금근로가구보다 상대빈곤율이 낮는데, 특히 고용주의 경우 상대빈곤율이 낮다. 2017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고용주의 상대빈곤율이 5.3%로 가장 낮고, 그다음 자영자 10.6%, 임금근로가구 12%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2015년까지 자영자의 상대빈곤율이 가장 높았으나, 소득과 지출의 측정 방식이 변경된 2016년부터는 자영자의 상대빈곤율이 임금근로가구보다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가구 유형별 상대빈곤율 순위와 추이는 유지되며, 다른 가구 유형과 달리 고용주의 상대빈곤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2017년 기준 시장소득의 상대빈곤율은 고용주 2.4%, 자영자 10.8%, 임금근로가구 12.7%이다.

〈표 4-15〉 상대빈곤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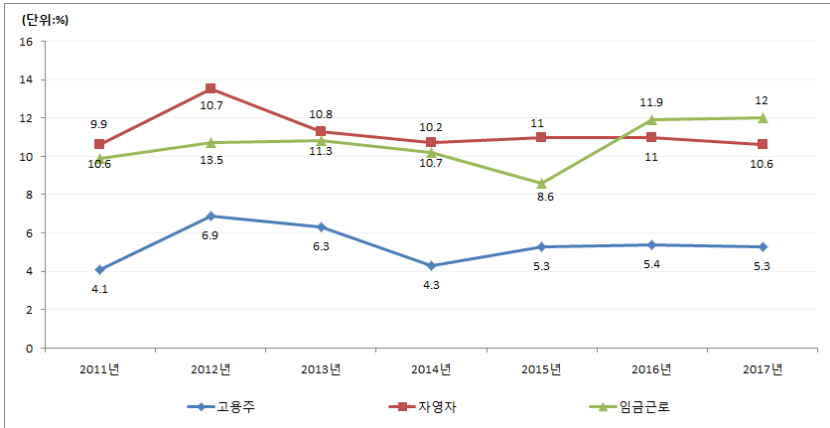
	자영업가구			임금근로가구
		고용주	자영자	
2011년	8.7	4.1	10.6	9.9
	(7.8)	(1.5)	(10.3)	(11.0)
2012년	11.6	6.9	13.5	10.7
	(9.0)	(1.9)	(11.9)	(11.3)
2013년	9.9	6.3	11.3	10.8
	(8.2)	(3.2)	(10.1)	(11.6)
2014년	9.0	4.3	10.7	10.2
	(7.6)	(2.3)	(9.5)	(11.6)
2015년	9.4	5.3	11.0	8.6
	(8.8)	(3.2)	(10.9)	(10.4)
2016년	9.4	5.4	11.0	11.9
	(8.6)	(1.5)	(11.6)	(13.0)
2017년	9.1	5.3	10.6	12.0
	(8.4)	(2.4)	(10.8)	(12.7)

주: 1) 가구소득을 제공근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소득을 이용하여, 중위소득의 50% 기준으로 산출함.

2) ()는 시장소득 기준임.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그림 4-10] 상대빈곤을 추이: 처분가능소득 기준



주: 가구소득을 제곱근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소득을 이용하여, 중위소득의 50%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자영업가구 중 고용주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상대빈곤율 차이를 살펴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40세 미만의 경우, 교육 수준이 초등 이하인 경우,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경우 상대빈곤율이 높아진 경향이 있다.

2017년 기준 40세 미만의 상대빈곤율은 9.7%로 가장 높고, 그다음 40~49세 5.8%, 60세 이상 3.9%, 50~59세 3.6%이다.

교육 수준별 상대빈곤율 순위는 분석 기간 중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초등 이하 학력의 경우 상대빈곤율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2017년 기준 초등 이하 14%로 상대빈곤율이 매우 높은 편이며 그 외 교육 수준은 5%대(고등학교 5.3%, 대학 이상 5.2%)이다.

2017년 기준 산업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기타 산업이 6.1%로 상대빈곤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 도소매업 5.4%, 음식숙박업 5.1%, 제조업 4.3%, 건설업 3.4% 순이다.

〈표 4-16〉 자영업가구 중 고용주 특성별 상대빈곤율 추이: 처분가능소득 기준

(단위: 만 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령	40세 미만	2.7	5.1	7.2	6.2	3.0	6.6	9.7
	40~49세	4.2	7.8	6.2	4.0	8.1	5.7	5.8
	50~59세	4.3	7.6	5.8	3.7	3.0	4.1	3.6
	60세 이상	5.5	3.2	6.4	4.6	5.3	6.3	3.9
교육 수준	초등 이하	-	3.9	5.0	8.8	10.5	5.2	14.0
	중학교	14.1	15.3	4.4	2.2	3.3	2.1	-
	고등학교	4.3	6.3	5.3	3.6	7.2	5.9	5.3
	대학 이상	3.0	6.4	7.2	4.8	3.7	5.3	5.2
산업	제조업	4.6	8.1	3.4	3.2	8.4	7.3	4.3
	건설업	4.0	2.8	6.4	6.2	1.1	7.6	3.4
	도소매업	4.1	6.1	3.7	3.2	3.2	3.7	5.4
	음식숙박업	3.4	6.8	8.4	4.6	7.5	7.3	5.1
	기타	4.3	8.1	8.4	4.9	5.3	4.1	6.1

주: 가구소득을 제공근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소득을 이용하여, 중위소득의 50%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자영업가구 중 자영업자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상대빈곤율 차이를 살펴보면 고용주에 비해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60세 이상인 경우, 교육 수준이 초등 이하인 경우,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경우 뚜렷하게 상대빈곤율이 높다. 이러한 경향성은 분석 기간 중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2017년 기준 60세 이상의 상대빈곤율은 13.2%이며, 그다음 40세 미만 11.7%, 50~59세 10.4%, 40~49세 7.1% 순이다.

교육 수준별로는 초등 이하의 상대빈곤율이 19.7%로 가장 높고, 그다음 대학 이상 11.3%, 중학교 11.0%, 고등학교 8.3% 순이다(2017년 기준).

산업의 경우, 2017년 기준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경우 상대빈곤율이 14.8%로 가장 높고, 그다음 음식숙박업 14.7%, 제조업 12.1%, 기타 8.6%, 건설업 5.9% 순이다. 분석 기간 중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 변갈

아 가며 상대빈곤율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자영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표 4-17〉 자영업가구 중 자영자 특성별 상대빈곤율 추이: 처분가능소득 기준

(단위: 만 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령	40세 미만	8.3	12.5	8.6	9.7	8.8	12.0	11.7
	40~49세	6.9	13.7	10.5	10.4	10.9	11.4	7.1
	50~59세	8.5	9.9	8.7	9.9	10.6	8.9	10.4
	60세 이상	20.8	19.6	18.0	12.9	12.8	13.0	13.2
교육 수준	초등 이하	25.3	24.2	25.8	24.7	20.5	19.9	19.7
	중학교	8.8	12.2	11.7	11.3	10.1	8.0	11.0
	고등학교	8.6	11.3	9.9	8.3	9.5	10.7	8.3
	대학 이상	7.2	13.6	8.5	10.1	11.2	10.1	11.3
산업	제조업	9.9	12.3	6.5	9.4	9.3	9.5	12.1
	건설업	2.0	8.8	7.5	5.4	5.9	5.4	5.9
	도소매업	14.9	18.3	15.8	13.8	12.9	16.5	14.8
	음식숙박업	12.1	17.3	12.1	13.7	17.1	11.3	14.7
	기타	9.5	11.2	10.2	10.2	10.4	9.9	8.6

주: 가구소득을 제공근한 가구원 수로 나눈 균등화소득을 이용하여, 중위소득의 50%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제4절 소결

자영업가구가 임금근로가구보다 소득 수준이 높다. 그러나 자영업가구는 고용원 유무에 따라 소득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고용주인 경우 자영자보다 소득 수준이 높다. 2017년을 기준으로 자영업가구의 월평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268만 원으로 임금근로가구 257만 원보다 약 11만 원 더 많다. 자영업가구 중 고용주의 처분가능소득은 362만 원으로 자영자 231만원보다 131만 원 더 많다. 따라서 가구주의 임금근로 여부에 따른 가구 간 소득 차이(11만 원)보다 자영업가구 내에서의 소득 차이(131만 원)가 압도적으로 크다. 이러한 경향성은 분석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가구주의 임금근로 여부에 따른 소득 차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고 있다(2011년 25만 원 → 2014년 18만 원 → 2017년 11만 원). 소득 5분위 분포에서 살펴보면 임금근로가구의 2분위 비율은 감소하고(2011년 20.5% → 2014년 19.1% → 2017년 17%), 5분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11년 23.7% → 2014년 24.8% → 2017년 27.1%). 반면 자영자가구는 최근으로 올수록 소득 1분위 비율이 낮아지고 있지만(2011년 10% → 2014년 8.4% → 2017년 7.9%), 여전히 고용주가구와 임금근로가구보다 소득 1분위 비율이 높고 소득 수준도 낮기 때문에 자영자가구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자영자가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소득 수준 차이는 크지 않지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60세 이상 고연령층의 소득이 가장 낮았지만 2016년부터는 40세 미만 청년층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2017년 기준 40세 미만 213만 원, 60세 이상 218만 원, 40~49세 234만 원, 50~59세 246만 원). 또한 자영자는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 수준이 뚜렷하게 낮은 특성을 보이며(2017년 기준 초

등 이하 191만 원, 중학교 202만 원, 고등학교 237만 원, 대학 이상 244만 원),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른 산업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다(2017년 기준 도소매업 211만 원, 음식숙박업 214만 원, 제조업 217만 원, 기타 240만 원, 건설업 255만 원). 특히 자영업자구는 최근으로 올수록 산업별로 소득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즉 자영업자구 중에서도 40세 미만 청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 저학력 수준,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업인 경우의 소득보장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아 보인다.

자영업자구의 소득 현황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기 위해, 지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즉 자영업자구의 지출 규모가 가장 적고, 그다음 임금근로자구, 고용주가구 순이다. 또한 자영업자구 중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층, 저학력 수준,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경우 지출 규모가 작았다. 지출의 구성 항목별로 살펴보면 최근으로 오면서 자영업자구의 의료비와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상대빈곤율을 살펴보면 자영업자구는 임금근로자구보다 상대빈곤율이 낮는데, 특히 고용주의 경우 상대빈곤율이 낮다. 2017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고용주의 상대빈곤율은 5.3%로 가장 낮고, 그다음 자영업자 10.6%, 임금근로자구 12%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2015년까지 자영업자의 상대빈곤율이 가장 높았으나, 소득과 지출의 측정 방식이 변경된 2016년부터는 자영업자의 상대빈곤율이 임금근로자구보다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구와 임금근로자구의 빈곤율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향후 변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빈곤과 관련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장에서 자영업자구의 소득 현황을 임금근로자구와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자영업가구 중에서 자영자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자영자 중에서도 저학력-고령층-음식숙박업의 특성이 있는 가구의 소득 상황이 나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대빈곤을 기준을 적용하면, 임금근로가구가 자영업가구보다 조금 더 높은 특성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공적부조는 OECD 기준의 상대빈곤율보다 더 낮은 기준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우선순위는 소득 1~2분위의 분포가 더 높은 자영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OECD 기준에 의한 상대빈곤선보다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이 더 낮기 때문이다.

자영업 종사자들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자영업가구와 고용주가구를 분리하여 자영업가구의 각 계층에 특화된 사회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자영자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사회보장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수혜 기회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제 5 장

다차원적 빈곤 위험

제1절 노동 환경: 실직 및 산업재해

제2절 장시간 근로와 건강: 건강(질병)

제3절 노후 준비: 노령

제4절 사회적 위험 대응 수준

제5절 소결

5

다차원적 빈곤 위험 <<

실업, 건강(질병),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은 복지국가의 사회안전망 정책을 통해 보호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의 사회적 안전망은 보호막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실직, 질병, 노령과 같은 위험 시 그 충격을 완화해 줄 사회적 완충장치 마련이 미흡할 뿐 아니라 사적 보호망의 준비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다차원적인 빈곤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본 장에서는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에 관해 논의하기 위하여 자영업자의 일자리 불안정성 정도(실직 위험), 장시간 근로 현황(산업재해 노출 위험), 장시간 근로와 건강 관계(건강 위험), 노후 준비 인식(노령 위험) 정도, 그리고 사회보험 및 민간보험 가입률을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정도를 알아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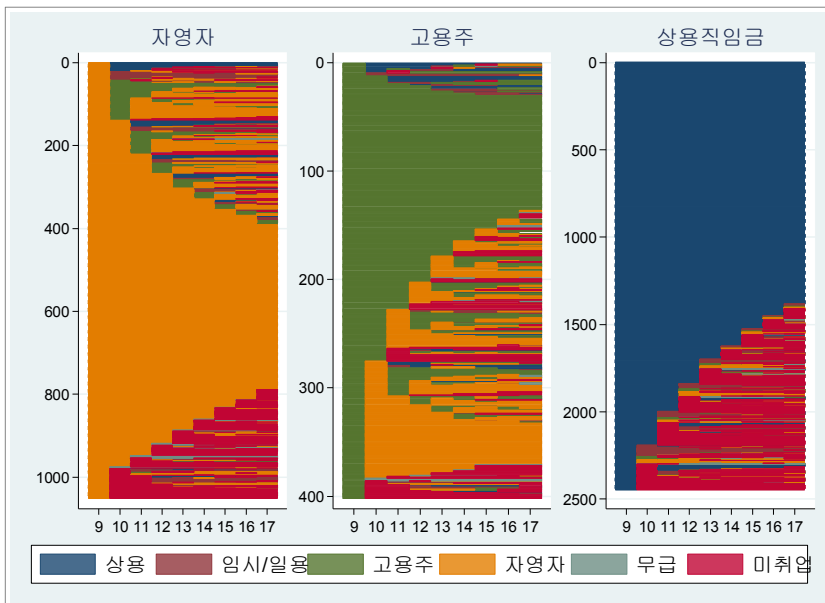
제1절 노동 환경: 실직 및 산업재해

자영업자의 노동 환경을 임금근로자와 비교 분석해 이들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살펴봤다. 우선 이들의 고용 형태 지속성을 통해 실직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살펴보았다. 자영업자의 일자리 불안정성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자료는 비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1998년부터 매년 경제활동 및 소득활동 등에 관하여 추적조사하는 패널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가장 최근 조사인 2017년 자료를 사용, 균형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배열분석

(Sequence Analysis)을 통해 이들의 고용 형태의 동태적 변화에 대해 현황 분석을 실시했다.¹⁰⁾

아래 그림은 자영자, 고용주,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9년간의 고용 형태 변화를 살펴본 그림이다. X축은 응답연도를 의미하며 Y축은 관측치이다. 즉 한 개인의 9년 동안의 주된 일자리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를 보여 준다. 한눈에 봐도 관측 시작 시점(2009년)의 자영자와 고용주의 9년간 고용 형태 지속성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9년간 고용 형태를 지속하는 비율이 자영자 37.8%, 고용주 26.6%로 56.6%인 임금(상용)근로자의 절반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 고용 형태 변화 패턴



주: x축은 연도로 2009~2017년을 의미하며, y축은 관측치 수를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18). 한국노동패널 12~20차.

10) 분석 대상자에 대한 기초통계는 〈부록표 4〉로 첨부한다.

〈표 5-1〉 고용 형태 지속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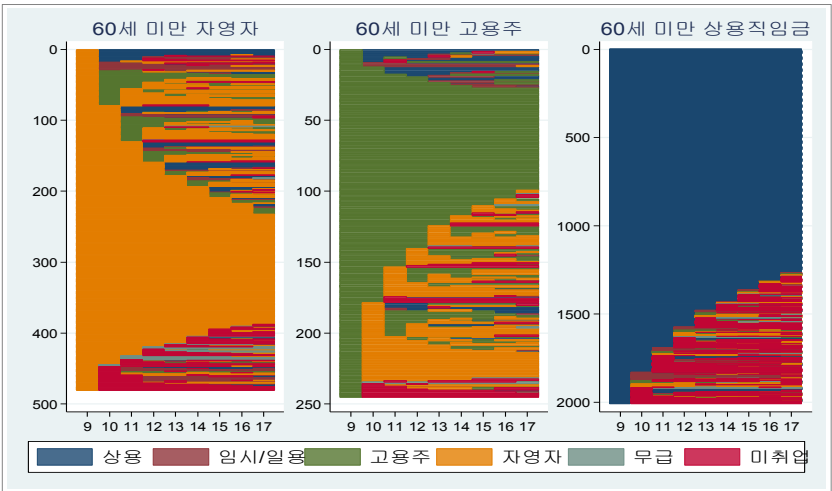
자영자		고용주		상용직 임금근로자	
지속률	불지속률	지속률	불지속률	지속률	불지속률
37.83	62.17 (100)	26.62	73.38 (100)	56.61	43.39 (100)
불지속 변화 형태					
자영-고용-자영	17.59 (28.29)	고용-자영	35.82 (48.81)	상용-nw	16.48 (37.98)
자영-not working(nw)	15.59 (20.08)	고용-자영-nw	7.46 (10.17)	상용-임시일용- nw	8.71 (20.07)
자영-상용-자영자	5.23 (8.41)	고용-nw	7.21 (9.83)	상용-임시일용	5.15 (11.87)
자영-임시일용-자영 -nw	4.75 (7.64)	고용-상용-고용 -자영	4.48 (6.11)	상용-자영	2.62 (6.04)
자영-임시일용-자영	3.52 (5.66)	고용-상용-고용	2.74 (3.73)	상용-자영-nw	2.04 (4.70)
자영-고용-자영-nw	3.23 (5.20)	고용-상용-고용 -nw	2.49 (3.39)		
자영-상용-자영-nw	2.38 (3.83)				
자영-상용-임시일용 -자영	2.28 (3.67)				
자영-상용-임시일용 -자영-nw	2.09 (3.36)				
...	...	...	...	...	...
1,052명		402명		2,445명	

주: 괄호 안은 불지속률인 사람을 100%로 하여 산출한 비율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18). 한국노동패널 12~20차.

60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하여 살펴보면 9년간 고용 형태를 지속하는 비율이 자영자 32.2%, 고용자 29.8%, 임금(상용)근로자 63.2%로 나타났다. 임금(상용)근로자의 경우 전 연령에서 60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할 경우 지속률이 높아지는 반면 자영자의 지속률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영업자 중 불지속에 속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자영업 노동시장 내에서 변화를 보이거나 임금근로자로 이동하였다가 결국 자영업 노동시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의 경우 반수 이상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로의 이동을 경험한다.

[그림 5-2] 60세 미만 고용 형태 변화 패턴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18). 한국노동패널 12~20차.

〈표 5-2〉 60세 미만 고용 형태 지속성

(단위: %)

자영자		고용주		상용직 임금근로자	
지속률	불지속률	지속률	불지속률	지속률	불지속률
32.22	67.68 (100)	29.8	70.2 (100)	63.17	36.83 (100)
불지속 변화 형태					
자영자-고용주- 자영자	21.83 (32.35)	고용-자영	34.69 (49.42)	상용-nw	12.91 (35.05)
자영자-상용-자 영자	9.36 (13.83)	고용-상용-고용 -자영	5.31 (7.56)	상용-임시일용- nw	6.39 (17.35)
자영자-nw	6.86 (10.14)	고용-nw	5.31 (7.56)	상용-임시일용	4.19 (11.38)
자영-임시일용- 자영-nw	3.95 (5.84)	고용-상용-고용	4.08 (5.81)	상용-자영	2.54 (6.90)
자영-상용-자영- nw	3.74 (5.53)	고용-자영-nw	4.08 (5.81)		
자영-상용-임시 일용-자영	3.53 (5.22)	고용-상용-고용 -nw	2.86 (4.07)		
자영-상용-임시 일용-자영-nw	3.53 (5.22)	고용-상용-임시 일용-고용	2.45 (3.49)		
자영-임시일용- 자영	3.53 (5.22)	고용-상용-고용 -자영-nw	2.04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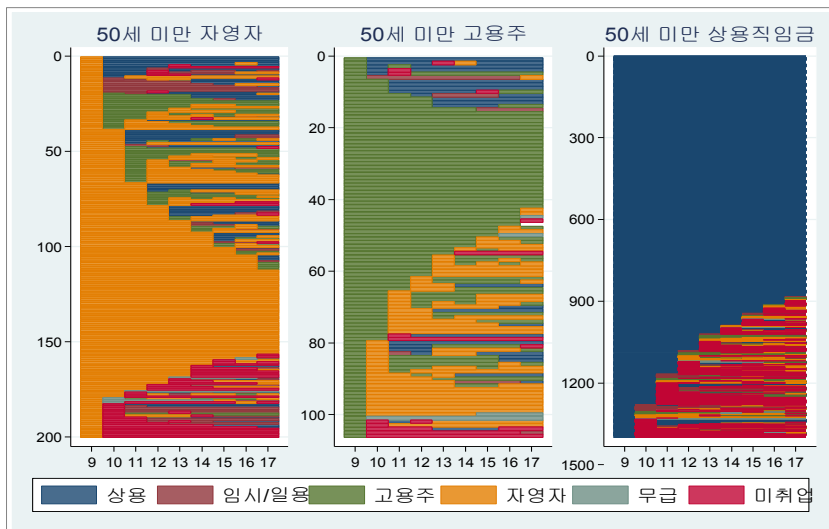
자영자		고용주		상용직 임금근로자	
지속률	불지속률	지속률	불지속률	지속률	불지속률
자영-상용-고용- 자영	2.49 (3.68)	고용-임시일용- 고용-자영	2.04 (2.91)	...	...
자영-고용-자영- nw	2.49 (3.68)	...	...	...	...
...	...	...	...	...	...
481명		245명		2,004명	

주: 괄호 안은 불지속률인 사람을 100% 하여 산출한 비율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18). 한국노동패널 12~20차.

노동시장에서 한창 근로할 연령인 15~49세로 표본을 한정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본 결과, 자영업자의 고용 형태 지속성은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고용변화 패턴은 임금(상용)근로자에 비해 다양한 경로를 보일 뿐 아니라 대다수 자영업 노동시장 내에서의 변화 혹은 임시/일용직을 거친 자영업 노동시장 내에서의 변화이다. 즉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보이는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3] 15~49세 고용 형태 변화 패턴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18). 한국노동패널 12~20차.

〈표 5-3〉 15~49세 고용 형태 지속성

(단위: %)

자영자		고용주		상용직 임금근로자	
지속률	불지속률	지속률	불지속률	지속률	불지속률
22.00	78.0 (100)	26.42	73.58 (100)	63.03	36.97 (100)
불지속 변화 형태					
자영자-고용주- 자영자	21.5 (27.56)	고용-자영	35.85 (48.72)	상용-nw	13.78 (37.27)
자영자-상용-nw	13.0 (16.67)	고용-상용-고용- 자영	8.49 (11.54)	상용-임시일용- nw	5.71 (15.44)
자영자-nw	9.5 (12.18)	고용-상영	7.55 (10.26)	상용-임시일용	2.93 (7.93)
자영-임시일용- 자영	5.5 (7.05)	고용-상용-자영 -nw	4.72 (6.41)	상용-자영	2.93 (7.93)
자영-임시일용- 자영	4.5 (5.77)	고용-nw	3.77 (5.12)	상용-고용	2.28 (6.17)
자영-상용-고용- 자영	4.5 (5.77)	고용-상용-고용 -nw	2.83 (3.85)	상용-고용-자영	2.07 (5.60)
자영-임시-자영- nw	4.5 (5.77)	고용-무급가족	2.83 (3.85)		
자영-상용-자영- nw	4.0 (5.13)				
자영-상용-임시 일용-고용-자영	2.0 (2.56)				
자영-임시일용- 자영	2.0 (2.56)				
자영-고용-자영- nw	2.0 (2.56)				
...		...		...	
200명		106명		1,401명	

주: 괄호 안은 불지속률인 사람을 100%로 하여 산출한 비율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18). 한국노동패널 12~20차.

다음으로 자영업자들의 장시간 근로 현황을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살펴봤다. 지속적인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2018년 7월 1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개정의 주요 목적은 연

장근로 및 휴일 근로를 축소하는 것으로 ‘1주일’의 기준을 기존 5일에서 7일로 확대함으로써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단축시켰다(고용노동부, 2018a). 그러나 자영업자는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여전히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상황이며, 특히 1인 또는 5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의 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6.6시간인 반면(통계청 보도자료, 2018. 10. 3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6.4시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8.5시간으로 이들이 더 오래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보도자료, 2018. 11. 7.).

장시간 노동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훼손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과로로 인한 육체적 피로로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Dembe et al., 2005; Lee & Lee, 2014; 안준기, 2018 재인용). 따라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비교 분석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처해 있는 장시간 근로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분석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자료는 전국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근로환경, 건강영향지표 등을 포괄하고 있는 자료로 1991년부터 실시된 유럽연합의 근로환경 조사(EWCS: European working condition survey)를 벤치마킹하여 2006 통계청 승인을 거쳐 1차 조사가 실시된 이후 2010년(2차), 2011년(3차), 2014년(4차), 2017년(5차) 조사가 실시되었다(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7).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인 2017년(5차)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의 장시간 근로 현황을 살펴보았다.

〈표 5-4〉 2018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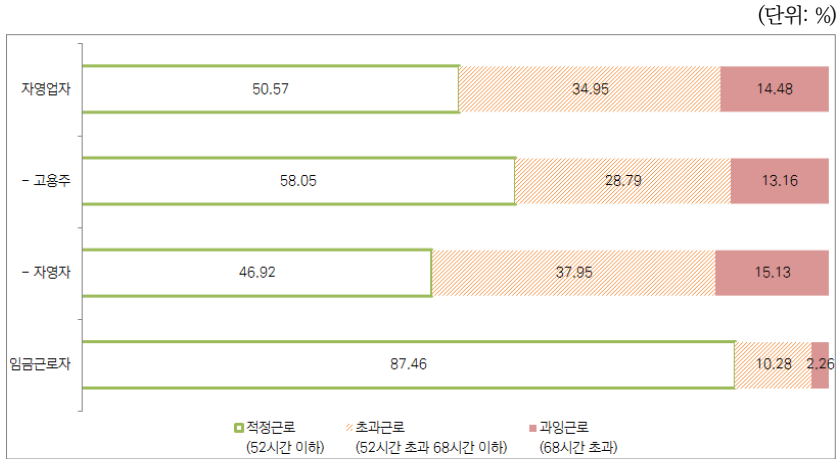
개정 전	개정 후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 68시간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 52시간
* 1주일을 5일로 봄	* 휴일을 포함한 7일을 “1주”로 봄
68시간 =주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	52시간 =주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포함)

출처: 고용노동부(2018a).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최대 52시간 미만 근로를 정규 근로로 보고, 개정 전 최대 근로시간인 68시간 이하까지를 초과근로로, 이를 초과한 것을 과잉근로로 정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장시간 근로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에게 더욱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원 유무에 따른 자영업자의 초과근로 및 과잉근로의 분포를 살펴보면 고용주의 28.8%가 초과근로를, 13.2%가 과잉근로를 하고 있으며, 자영자의 38.0%는 초과근로를, 15.1%는 과잉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근로자(초과근로 10.3%, 과잉근로 2.3%)보다 자영업자의 장시간 근로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자영자 52.8시간, 고용주 51.6시간, 임금근로자 42.6시간 순으로 높다.

[그림 5-4] 초과근로 및 과잉근로 분포



주: 1)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2)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를 포함.

자료: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8). 제5차 근로환경조사.

〈표 5-5〉 초과근로 및 과잉근로 범주별 주당 근로시간 평균

(단위: 시간)

구분	적정근로 (52시간 이하)	초과근로 (52시간 초과 68시간 이하)	과잉근로 (68시간 초과)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영업자	40.9 (11.4)	59.3 (2.9)	75.9 (9.7)	52.4 (15.7)
고용주	42.3 (9.0)	59.5 (2.8)	75.6 (9.2)	51.6 (14.3)
자영자	40.1 (12.5)	59.3 (2.9)	76.0 (9.9)	52.8 (16.3)
임금근로자	39.9 (8.6)	58.5 (3.3)	76.7 (12.9)	42.6 (11.3)
상용근로자	41.7 (5.7)	58.5 (3.3)	76.7 (13.5)	44.2 (9.1)
임시근로자	31.0 (13.6)	58.4 (3.5)	77.6 (10.9)	35.1 (16.9)
일용근로자	34.4 (12.2)	58.4 (3.4)	73.0 (4.3)	37.4 (14.4)

자료: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8). 제5차 근로환경조사.

다음으로 주당 근무일수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여부를 살펴봤다.
 “귀하가 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일주일에 며칠을 일하십니까?”라는 질

문에 자영업자는 주당 평균 5.8일을 근무한다고 답해 임금근로자(5.1일)보다 출근하는 일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일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자영업자는 주 6일 근무하는 경우가 60.4%로 가장 많으며, 임금근로자의 경우 주 5일 근무가 66.5%로 가장 많았다.

〈표 5-6〉 주당 평균 근로일수 분포

(단위: %,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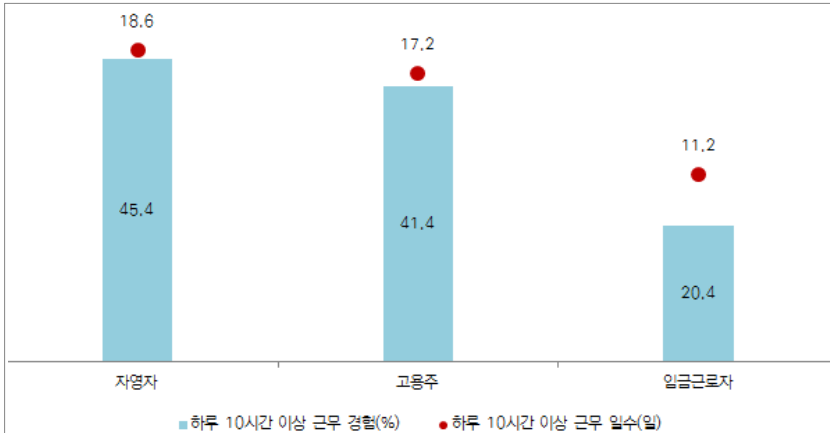
구분	4일 이하	5일	6일	7일	평균 근로일수
자영업자	3.7	21.3	60.4	14.6	5.8
고용주	5.1	16.9	63.3	14.8	5.8
자영자	0.9	30.4	54.5	14.2	5.8
임금근로자	6.8	66.5	25.4	1.3	5.1
상용근로자	2.6	71.4	25.0	1.1	5.2
임시근로자	23.4	47.5	26.7	2.4	4.8
일용근로자	32.3	38.0	27.7	2.0	4.7

자료: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8). 제5차 근로환경조사.

또 다른 장시간 근로의 지표로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를 살펴보면 자영업자는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경험 비율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더 높으며 평균 근무일수 또한 더 많다. 자영업자 내에서도 자영자의 하루 10시간 이상 근로 비율과 근로일수가 고용주에 비해 좀 더 높고 긴 편인데 자영자는 45.4%, 고용주는 41.4%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월평균 근무일수는 자영자가 18.6일, 고용주가 17.2일로 이들은 한 달 중 절반 이상을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

[그림 5-5]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비율

(단위: %, 일)



주: 근무일수는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있는 개인의 한 달 평균값임.

자료: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8). 제5차 근로환경조사.

본 분석 결과를 통해 자영업자,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노동 환경은 고용 형태 지속성이 매우 불안정하며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환경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실직에 처할 위험이 높음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과로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로로 인해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음을 암시한다.

제2절 장시간 근로와 건강: 건강(질병)

장시간 근로와 건강 상태의 영향을 자영업자와 상용근로자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초과근로 및 과잉근로가 근로자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자영업자에게서 더욱 건강 위험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위의 근로시간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영업자의 초과근로

및 과잉근로 비율은 49.4%로 약 50%에 달하며, 장시간 근로는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White & Beswick(2003), Caruso(2004), ILO(2007), Virtanen et al.(2012) 등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본 분석을 위하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근로환경조사 2017년(5차) 자료를 활용, 순서형 및 이항 모형을 통해 장시간 근로와 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¹¹⁾

먼저 장시간 근로와 본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종속변수인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는 “귀하의 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고 응답되었다. 순서가 의미를 가지는 변수이므로 순서형 모형을 이용하며, 오차항의 확률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하는 순서형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장시간 근로와 실제 건강 문제 발생 여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종속변수는 지난 12개월 동안 요통, 어깨 및 목 통증, 엉덩이 및 무릎 통증, 두통 및 눈 피로, 손상, 우울 및 불안장애, 불면증 등을 포괄하는 육체적/정신적 질병에 대한 건강 문제 중 하나라도 있다고 응답한 여부이다. 건강 문제 발생 여부 변수를 종속변수로 가지는 이항종속변수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핵심 독립변수는 고용 형태(자영업자, 상용근로자)와 근로시간(적정근로, 초과근로, 과잉근로)의 상호작용변수(interaction variable)를 이용, 자영업자 여부(모형 1)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여부(모형 3)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즉 모형 1에서는 상용근로자를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하여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의 근로시간에 따른 건강영향을 살펴보고, 모형 3에서는 상용근로자 및 고용주를 준거집단으로 고

11) 분석 대상자에 대한 기초통계는 〈부록표 5〉로 첨부한다.

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근로시간에 따른 건강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추가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결과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를 제외하고 자영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모형 2). 이에 따라 모형 2에서는 상용근로자를 준거집단으로 자영자의 근로시간에 따른 건강 영향을 살펴보았다. 즉, 모형 1과 모형 2는 준거집단을 상용근로자로 동일하게 하여 상용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근로시간에 따른 건강영향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때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른 건강 상태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상대적으로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이 짧은 임시·일용 근로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외 통제변수로 일반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진 연령, 연령제곱, 성별, 혼인 상태, 지역,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산업 특성 변수를 포함하였다.

근로시간에 따른 건강영향 분석 결과, 자영업자의 초과근로 및 과잉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임금근로자에 비해 주관적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 발생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잉근로가 건강 상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자영자의 초과근로 및 과잉근로의 건강 상태를 임금근로자, 그 외(상용직 임금근로자+고용주) 집단과 비교한 모형(모형 2, 모형 3)을 살펴보면 여전히 자영자의 초과근로 및 과잉근로가 건강 상태에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나 그 영향력은 모형 1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준변수로 포함된 고용주 집단의 종사자 규모가 5인 미만인 73.9%¹²⁾로 영세 사업체의 비율이 높은 것에서 기인한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12) 본 분석을 위해 활용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제5차 근로환경조사(2017)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

〈표 5-7〉 근로시간에 따른 건강 상태 분석 결과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모형 1	모형 2	모형 3
연령	-0.028 (0.004)***	-0.028 (0.004)***	-0.028 (0.004)***
연령제곱	0.0001 (0.000)**	0.0001 (0.00004)**	0.0001 (0.000)**
성별(기준: 여성)	0.088 (0.014)***	0.078 (0.015)***	0.089 (0.014)***
혼인 상태(기준: 무배우자)	0.024 (0.014)†	0.023 (0.014)	0.024 (0.014)†
지역(기준: 비수도권)	0.15 (0.013)***	0.155 (0.014)***	0.151 (0.013)***
교육 수준(기준: 초등)			
중학교	0.179 (0.043)***	0.183 (0.044)***	0.181 (0.043)***
고등학교	0.313 (0.041)***	0.321 (0.042)***	0.313 (0.041)***
대학 이상	0.467 (0.044)***	0.469 (0.045)***	0.467 (0.044)***
ln(월평균소득)	0.193 (0.014)***	0.195 (0.015)***	0.184 (0.014)***
산업(기준: 제조업)			
건설업	-0.016 (0.0313)	-0.017 (0.033)	-0.019 (0.0313)
도소매업	0.043 (0.022)†	0.038 (0.023)†	0.036 (0.022)†
음식숙박업	-0.047 (0.027)†	-0.054 (0.029)†	-0.057 (0.026)*
기타	0.066 (0.019)***	0.064 (0.020)**	0.064 (0.019)***
자영업자 여부(기준: 상용근로자*적정근로)			
임금(상용)근로자*초과근로	-0.084 (0.026)**	-0.084 (0.026)**	
임금(상용)근로자*과잉근로	-0.253 (0.050)***	-0.252 (0.050)***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모형 1	모형 2	모형 3
자영업자*적정근로	-0.07 (0.018)***		
자영업자*초과근로	-0.114 (0.021)***		
자영업자*과잉근로	-0.334 (0.029)***		
자영자 여부(기준: 그 외*적정근로)			
그 외(상용근로자, 고용주)*초과근로			-0.089 (0.022)***
그 외(상용근로자, 고용주)*과잉근로			-0.286 (0.039)***
자영자*적정근로		-0.072 (0.021)***	-0.065 (0.020)**
자영자*초과근로		-0.112 (0.022)***	-0.101 (0.022)***
자영자*과잉근로		-0.328 (0.032)***	-0.318 (0.032)***
/cut1	-2.823 (0.105)***	-2.801 (0.109)***	-2.88 (0.104)***
/cut2	-1.658 (0.096)***	-1.646 (0.100)***	-1.714 (0.094)***
/cut3	-0.145 (0.096)	-0.141 (0.100)	-0.202 (0.094)*
/cut4	1.837 (0.096)***	1.845 (0.100)***	1.78 (0.094)***
Log likelihood	-30393.281	-27653.546	-30396.319
Pseudo R2	0.0572	0.0589	0.0571
Observations	33061	30088	33061

주: 1) ()는 표준오차.

2) 모형 1은 상용근로자(기준)와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의 비교, 모형 2는 상용근로자(기준)와 자영자의 비교, 모형 3은 상용 및 고용주(기준)와 자영자의 비교.

3) † p<0.10, * p<0.05, ** p<0.01, *** p<0.001

자료: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8). 제5차 근로환경조사.

〈표 5-8〉 근로시간에 따른 건강 문제 발생 여부 분석 결과

	건강 문제 유무		
	모형 1	모형 2	모형 3
연령	0.037 (0.004)***	0.038 (0.004)***	0.038 (0.004)***
연령제곱	-0.0003 (0.000)***	-0.0003 (0.00005)***	-0.0003 (0.000)***
성별(기준: 여성)	-0.099 (0.016)***	-0.084 (0.017)***	-0.101 (0.016)***
혼인 상태(기준: 무배우자)	0.065 (0.015)***	0.074 (0.016)***	0.066 (0.015)***
지역(기준: 비수도권)	0.075 (0.015)***	0.073 (0.016)***	0.073 (0.015)***
교육 수준(기준: 초등)			
중학교	-0.208 (0.050)***	-0.212 (0.051)***	-0.207 (0.050)***
고등학교	-0.480 (0.048)***	-0.489 (0.049)***	-0.482 (0.048)***
대학 이상	-0.714 (0.051)***	-0.727 (0.052)***	-0.718 (0.051)***
ln(월평균소득)	-0.041 (0.016)*	-0.057 (0.017)**	-0.041 (0.016)*
산업(기준: 제조업)			
건설업	0.092 (0.035)**	0.09 (0.037)*	0.094 (0.035)**
도소매업	-0.242 (0.025)***	-0.233 (0.026)***	-0.237 (0.025)***
음식숙박업	-0.033 (0.030)	-0.032 (0.033)	-0.038 (0.030)
기타	-0.051 (0.022)*	-0.039 (0.022)†	-0.049 (0.022)*
자영업 여부(기준: 상용근로자*적정근로)			
임금(상용)근로자*초과근로	0.327 (0.029)***	0.326 (0.029)***	
임금(상용)근로자*과잉근로	0.331 (0.056)***	0.326 (0.056)***	

	건강 문제 유무		
	모형 1	모형 2	모형 3
자영업자*적정근로	0.021 (0.021)		
자영업자*초과근로	0.203 (0.023)***		
자영업자*과잉근로	0.444 (0.033)***		
자영자 여부(기준: 그 외*적정근로)			
그 외(상용근로자, 고용주)*초과근로			0.328 (0.025)***
그 외(상용근로자, 고용주)*과잉근로			0.389 (0.043)***
자영자*적정근로		0.015 (0.023)	0.011 (0.023)
자영자*초과근로		0.17 (0.025)***	0.164 (0.024)***
자영자*과잉근로		0.435 (0.037)***	0.430 (0.036)***
_cons	-0.529 (0.110)***	-0.457 (0.115)***	-0.532 (0.109)***
Log likelihood	-21197.898	-19249.188	-21192.625
Pseudo R2	0.0488	0.0492	0.0490
Observations	33062	30089	33062

주: 1) ()는 표준오차.

2) 모형 1은 상용근로자(기준)와 자영업자(고용주 및 자영자)의 비교, 모형 2는 상용근로자(기준)와 자영자의 비교, 모형 3은 상용 및 고용주(기준)와 자영자의 비교.

3) † p<0.10, * p<0.05, ** p<0.01, *** p<0.001

자료: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8). 제5차 근로환경조사.

추가로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자영업자는 지난 12개월 동안 대부분 근육통이나 두통과 같은 신체적 문제를 겪었으며,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가 업무와 높은 비율로 연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영업자는 주요 건강 문제로 상지 근육통(28.9%), 전신 피로(28.3%), 하지 근육통(19.4%), 두통 및 눈의 피로

(14.2%), 요통(13.0%)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강 문제가 업무상 관련 있는지에 대해 전신 피로(90.2%), 상지 근육통(90.2%), 하지 근육통(88.5%), 요통(85.4%), 손상(사고로 다침)(81.7%), 두통(78.8%), 불안감(76.0%) 순으로 건강 문제 호소율이 높았다.

〈표 5-9〉 자영업자의 건강상 문제와 업무상 관련 여부

구분	건강상의 문제 있음		업무상 관련 있음	
청력 문제	140	(1.01)	83	(57.88)
피부 문제	109	(0.79)	83	(71.37)
요통	1,811	(13.03)	1,677	(85.43)
상지 근육통	4,023	(28.93)	3,720	(90.15)
하지 근육통	2,692	(19.36)	2,526	(88.48)
두통, 눈의 피로	1,979	(14.24)	1,551	(78.80)
손상(사고로 다침)	288	(2.07)	215	(81.68)
우울감	397	(2.85)	257	(61.55)
불안감	605	(4.36)	423	(76.01)
전신 피로	3,927	(28.25)	3,420	(90.24)

주: 1) 상지 근육통은 어깨, 목, 팔, 팔꿈치, 손목, 손 등 윗몸의 근육통을 포함하며, 하지 근육통은 엉덩이, 다리, 무릎, 발 등 아랫몸의 근육통을 포함.

2) 괄호 안은 비율(%)임.

자료: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8). 제5차 근로환경조사.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자영자 및 영세 자영업자는 높은 수준의 초과근로와 과잉근로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건강 관련 사회적 위험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절 노후 준비: 노령

자영업자가구가 임금근로가구와 비교했을 때 노후소득 준비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노후소득 준비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면, 노후소득이 부족하여 은퇴 후 빈곤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¹³⁾

자영업자의 노후소득 준비 상황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통계청의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부터 매년 조사되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현재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경우,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를 위한 준비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 순서로짓모형을 통해 임금근로가구와 비교하여 자영업자가구의 노후소득 준비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현재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경우,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를 위한 준비 상황에 대해 ① 아주 잘되어 있다, ② 잘되어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잘되어 있지 않다, ⑤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조사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속변수로 활용 가능하다. 해석의 편의를 위해 노후 준비 상황에 대한 인식은 숫자가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코딩을 변환하여 모형에 투입한다.¹⁴⁾

13) 이와 같이 주관적인 인식이 객관적인 사실과 더불어 중요하다는 인식은 학계에서도 퍼져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OECD와 EU 등의 국제기구는 객관적 지표와 더불어 주관적 인식 또한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구성하는 주요한 지표라는 점에 동의하며 주관적 지표를 고려한 정책 기초자료의 생산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활용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부처에서는 주관적 인식, 주관적 지표에 대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정이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14) 분석 대상자에 대한 기초통계는 <부록표 6>으로 첨부한다.

핵심 독립변수는 자영업가구 유무인데, 자영업가구 중에서 자영자의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영업가구 유무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가구 유무로 세분화하여 모형에 투입하고자 한다. 그 외의 독립변수는 일반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진 연령, 연령제곱, 성별, 혼인 상태, 지역,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산업 등이다.

노후소득 준비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살펴보면 자영업가구의 경우 2.45점으로 임금근로가구 2.40점보다 조금 높다. 그러나 구체적 종사 상지위별로 살펴보면 고용주의 경우 2.80점으로 자영자의 2.31점보다 노후소득 준비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높다. 따라서 자영업가구와 임금근로가구의 노후소득 준비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큰 차이가 없지만, 자영업가구를 보다 세분화할 경우 고용주는 임금근로가구보다 노후소득 준비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긍정적인 반면, 자영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근로가구의 경우 상용직 임금종사자 가구의 노후소득 준비 상황은 2.53점으로 자영자보다 높다.

〈표 5-10〉 노후소득 준비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n=6,218)

(단위: 점, 명)

	자영업 가구			임금근로 가구		
		고용주	자영자		상용직	임시/일용
평균 (표준편차)	2.449 (0.910)	2.803 (0.863)	2.310 (0.890)	2.402 (0.926)	2.534 (0.893)	1.831 (0.887)
Observations		1,531			4,687	

주: 1) 1점: 전혀 되어 있지 않다, 2점: 잘되어 있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잘되어 있다, 5점: 아주 잘되어 있다

자료: 통계청(2018b),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순위로짓모형 분석 결과, 자영업가구는 노후소득 준비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 1, 모형 3). 그러나 자영업가구 중 자영자는 노후소득 준비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모형 2, 모형 4). 즉 1인 자영업자의 경우 노후소득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노후 빈곤 위험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5-11〉 자영업이 노후소득 준비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종속변수-노후소득 준비 상황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연령	0.060 (0.015)***	0.061 (0.015)***	0.019 (0.015)	0.020 (0.015)
연령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성별(기준: 여성)	0.098 (0.073)	0.100 (0.073)	-0.012 (0.076)	-0.001 (0.076)
혼인 상태(기준: 무배우자)	0.561 (0.065)***	0.575 (0.065)***	0.414 (0.066)***	0.425 (0.066)***
지역(기준: 비수도권)			-0.363 (0.050)***	-0.371 (0.050)***
교육 수준(기준: 초등)				
중학교	0.286 (0.116)*	0.306 (0.116)**	0.324 (0.117)**	0.340 (0.117)**
고등학교	0.579 (0.101)***	0.595 (0.101)***	0.528 (0.102)***	0.539 (0.102)***
대학 이상	1.497 (0.107)***	1.493 (0.107)***	1.248 (0.109)***	1.245 (0.109)***
ln(가구처분가능소득)			0.834 (0.040)***	0.832 (0.040)***
산업(기준: 제조업)				
건설업			-0.358 (0.088)***	-0.347 (0.088)***
도소매업			-0.021 (0.090)	0.034 (0.089)
음식숙박업			-0.118 (0.112)	-0.067 (0.111)

	종속변수-노후소득 준비 상황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기타			0.039 (0.062)	0.060 (0.062)
자영업(기준:임금근로)	0.079 (0.056)		0.053 (0.059)	
자영업자(기준:임금근로+ 고용주)		-0.158 (0.063)**		-0.137 (0.065)*
/cut1	1.942 (0.360)	1.973 (0.359)	4.740 (0.393)	4.783 (0.393)
/cut2	3.765 (0.362)	3.796 (0.362)	6.688 (0.398)	6.730 (0.400)
/cut3	5.948 (0.366)	5.982 (0.366)	9.003 (0.405)	9.048 (0.405)
/cut4	7.824 (0.377)	7.859 (0.377)	10.927 (0.416)	10.974 (0.416)
Log likelihood	-7866.089	-7863.941	-7576.667	-7574.8551
Pseudo R2	0.0413	0.0415	0.0765	0.0767
Observations	6,218	6,218	6,218	6,218

주: 1) ()는 표준오차.

2) † 10%, * 5%, ** 1%, *** 0.1%에서 유의함.

자료: 통계청(2018b),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제4절 사회적 위험 대응 수준

실업, 산업재해, 건강(질병), 노령 등 누구에게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은 복지국가의 사회안전망 정책, 특히 1차 안전망인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보호가 이루어진다(European Commission, 2014; 안종순, 2015). 따라서 자영업자, 그중 1인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 수준을 사회보험 가입률과 민간 보험 가입률을 통해 임금근로자와 비교함으로써 살펴봤다.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정도를 살

퍼보기 위하여 한국복지패널자료 13차(2018년)를 활용하여 이들의 사회보험 및 민간보험 가입률을 살펴보았다.

우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자영업자 또한 의무가입으로 수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고용원 유무에 상관없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보험료 부담이 높다.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자영업자는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아래 표를 보면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미납입률이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특히 자영자의 경우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노령에 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 가입률 또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자영자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 가입률의 약 절반 수준에 그친다. 민간의료보험 미가입률 또한 자영자는 무급가족종사자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자영자의 노령, 건강 관련 사회적 위험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표 5-12〉 국민연금 납입 비율과 개인연금 가입 비율

(단위: %)

	국민연금			개인연금		
	납입	미납입	전체	가입	미가입	전체
상용직	97.31	2.69	100(2023)	46.85	53.15	100(2453)
임시/일용	68.18	31.82	100(1276)	24.55	75.45	100(2457)
고용주	83.01	16.99	100(174)	49.88	50.12	100(211)
자영자	68.63	31.37	100(478)	29.22	70.78	100(1372)
무급가족종사자	66.07	33.93	100(4056)	23.69	76.31	100(490)

주: 1) 가중치 적용.

2) 팔호 안 값은 가중치 적용 전 관측치.

3) 임시/일용직=임시직 임금근로자+일용직 임금근로자+자활근로/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8). 한국복지패널 13차(2018년).

〈표 5-13〉 건강보험 가입 비율과 민간의료보험 가입 비율

(단위: %)

	건강보험			민간의료보험		
	가입	미가입	전체	가입	미가입	전체
상용직	99.91	0.09	100(2453)	95.66	4.34	100(2453)
임시/일용	97.53	2.47	100(2457)	85.84	14.16	100(2457)
고용주	100	0	100(211)	97.62	2.38	100(211)
자영자	99.18	0.82	100(1372)	84.53	15.47	100(1372)
무급가족종사자	99.71	0.29	100(490)	78.52	21.48	100(490)

주: 1) 가중치 적용.

2) 팔호 안 값은 가중치 적용 전 관측치.

3) 임시/일용직=임시직 임금근로자+일용직 임금근로자+자활근로/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8). 한국복지패널 13차(2018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자영업자의 비해당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고용보험은 2012년 1월부터 50인 미만 자영업자를 가입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나,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급여’ 적용에서 제외된다. 산재보험 역시 2018년 1월 7일부터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특례 형태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직종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비해당 비율이 고용주 86.3%, 자영자 96.6%로 나타나며, 미가입률은 0.1%, 0.8%로 각각 나타난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1만 7488명(2018년 5월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는 2만 731명(2017년 11월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임의가입 형식과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는 결국 이들의 실직과 산업재해 관련 사회적 위험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5-14〉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비율

(단위: %)

	산재보험				고용보험			
	비해당	가입	미가입	전체	비해당	가입	미가입	전체
상용직	14.19	82.54	3.27	100 (2453)	14.79	81.78	3.42	100 (2453)
임시/일용	7.79	45.25	46.96	100 (2457)	12.72	41.37	45.91	100 (2457)
고용주	3.29	36.8	59.91	100 (211)	86.25	13.71	0.05	100 (211)
자영자	98.01	1.99	0	100 (1372)	96.62	2.57	0.8	100 (1372)
무급가족 종사자	95.94	3.66	0.4	100 (490)	95.94	3.66	0.4	100 (490)

주: 1) 가중치 적용.

2) 팔호 안 값은 가중치 적용 전 관측치.

3) 임시/일용직=임시직 임금근로자+일용직 임금근로자+자활근로/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18). 한국복지패널 13차(2018년).

제5절 소결

자영업자의 노동 환경은 고용 형태 지속성이 매우 불안정하며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상태이다. 노동시장에서 한창 근로할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고용 형태 지속성은 임금(상용)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난다. 이들의 고용변화 패턴은 임금(상용)근로자에 비해 다양한 경로를 보일 뿐 아니라 대다수 자영업 노동시장 내에서의 변화 혹은 임시/일용직을 거친 자영업 노동시장 내에서의 변화이다. 즉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보이는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용 형태 불안정성은 실직에 처할 위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상황으로, 장시간 노동은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음을 암시한다. Dembe et al.(2005), Lee and Lee(2014)의 연

구에서는 장시간 근로가 높은 산업재해율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장시간 근로는 이들의 건강 상태 역시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영업 노동시장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 환경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건강 관련 위험에 취약함을 나타낸다. 또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는 노후소득 준비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인 자영업자의 경우 노후소득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노후 빈곤 위험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특히 1인 자영업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률과 민간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영업자는 사회적 위험에 취약할 뿐 아니라 사회적 위험 대응이 매우 낮아 사회적 위험 정도가 더욱 높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현재의 사회보험체계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노동 중 재해 혹은 실업 등 소득 중단에 위험에 대비하는 보호체계가 매우 미흡하다. 현 사회보험체계에서 자영업자들의 노령연금과 의료보장은 가능하나 이 또한 보험료 체납, 납부 예외로 인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구인회, 백학영, 2008). 현재에도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빈곤층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 6 장

자영업자 사회보장 현황

제1절 고용보험

제2절 산업재해

제3절 건강보험

제4절 노후소득보장제도

제5절 근로장려세제(EITC)

제6절 기타 지원정책

제7절 소결

6

자영업자 사회보장 현황 <<

자영업은 은퇴나 실직한 임금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소득 활동의 형태이며 고용의 완충지대로 또는 노후의 소득보장 수단으로 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소매업과 음식업 등 자영업자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업종에서 기업화가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생산성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퇴출 위기에 몰려 있다. 이들 자영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되어 무직자로 전락할 경우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될 소지가 크다.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체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과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자영업자는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현재는 자영업자의 가입이 허용되어 있으나 임의가입 형태이며 그 대상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산정체계로 그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각의 사회안전망 정책에 대해 자영업자의 가입 형태, 보험료 산정 체계 및 정부 지원 등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한다. 이와 함께 임금근로자와의 비교를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요인과 사회보장정책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제1절 고용보험

1. 현황

우리나라는 임의가입을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임금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세 가지 주요 기능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급여’ 모두 혜택을 받지만 자영업자는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급여’의 적용에서는 제외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두 가지 혜택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은 불가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과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여기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수당은 다시 조기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와 이주비로 나누어지는데,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은 제외된다.

〈표 6-1〉 고용보험 주요 기능 및 자영업자 적용 여부

기능	주요 내용	자영업자 적용 여부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 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
실업급여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	○ (단, 조기재취업수당은 제외)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급여(모성보호급여)는 임신·출산 등과 관련된 여성의 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육아 또는 출산을 목적으로 휴직하는 근로자가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

자료: 고용보험법(2019.1.15.) 인용 및 재구성.

모든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 제1항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5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개업일이 5년 이내인 자영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로 그 대상이 한정된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상시근로자 4인 미만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농업·임업 및 어업의 자영업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낮은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1만 7922명(연합뉴스, 2018. 9. 24.)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낮은 가입률의 원인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홍보와 인식 부족 그리고 납입비용에 대비하여 효과까지 크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보험료율은 보험수지 동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3% 범위에서 정해지도록 되어 있다.¹⁵⁾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율은 1.55%(실업급여 1.3%, 고용안정·직업능력사업개발 0.25%)이며, 여기서 실업급여의 절반과 고용안정·직업능력사업개발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전부는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0.65%이다(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2019. 2. 4. 인출). 반면 자영업자는 7개의 보수 기준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사업개발 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2019. 2. 4. 인출). 납입 부담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대략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15)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14조 관련.

〈표 6-2〉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고용보험료를 결정 차이

구분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0.25%	0.25%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30%	2.00%
합계	1.55%	2.25%
가입자 일부담	0.65%	2.25%

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가장 낮은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을 가정하며, 해당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부담.

출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2019. 2. 4. 인출 및 재구성.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 기간에 따라 90~180일까지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구직급여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50%로 산정된다(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2019. 2. 4. 인출). 예컨대 가장 높은 등급을 선택할 경우 실업급여액은 최대 169만 원이다. 임금근로자와의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근속기간 5년 이상이며 30~50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액이 대략적으로 198만 원 정도 되는 것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은 셈이다.

〈표 6-3〉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급

(단위: 천 원)

구분	월 보수액	
	2019년 이전	2019년 이후
1등급	1,540	1,820
2등급	1,730	2,080
3등급	1,920	2,340
4등급	2,110	2,600
5등급	2,310	2,860
6등급	2,500	3,120
7등급	2,690	3,380

자료: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0호(2017.12.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6호(2018.12.04) 재구성.

2. 지원정책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확대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1인 영세 소상공인은 폐업 시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높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6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8년 1월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기준보수 1~4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영업자¹⁶⁾로서 월 고용보험료의 50%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2019. 2. 4. 인출).

기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기준등급이 2등급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효성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 등급을 4등급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었으며¹⁷⁾ 2019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다(중소기업벤처부 공고, 2019. 1. 22.).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1등급 기준 월 2만 475원, 2등급 2만 3400원, 3등급 1만 5795원, 4등급 1만 7550원을 지원받아 연간 최대 28만 800원을 지원받게 된다.

16) 다만 유흥·투기조작업종,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7)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또한 현행 2.25%를 부과하는 고용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수준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한국일보, 2018. 8. 20.)

〈표 6-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지원금

(단위: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2.25%)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월 지원액 (50%/30%)	20,475	23,400	15,795	17,550	미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19.1.22.) '2조 8백억원 규모의 '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p. 20.

다만, 지원 대상을 여전히 1인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미흡한 실적이며, 실업의 예방과 고용의 촉진이라는 고용보험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많은 자일수록 고용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높으며 그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고령층은 고용보험보다는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한 제도의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 통계청의 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60세 이상 비율은 10%에 불과하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2%에 육박한다. 반면, 고용보험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는 50세 미만의 비율은 전자가 57%, 후자가 45%이다. 물론 절대적인 규모에 있어 1인 자영업자 수가 크다고는 하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의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을 전향적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6-5〉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2018 지원 방안	2019 개선 방안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 또는 2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50% 2년간 지원	자영업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원 기간을 3년으로 연장 *1~2등급 보험료 50%. 3~4등급 보험료 30%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공고 제2018-366호(2018. 9. 11.); 중소기업벤처부 공고 제2019-8호(2019. 1. 22.) 재구성.

제2절 산업재해

1. 산업재해보험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입법되어 있으나 특례 형태로 자영업자의 산재보험이 가능하다.¹⁸⁾ 동법 제124조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허용하고 있다. 이 범위에 포함하는 자영업자들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하는 가입 요건은 고용주의 경우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된다. 그 대상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이사도 가입이 가능하다.

18) 이기평, 김영미(2018)에서는 산재보험법 제1조에서 산재보험의 운영의 목적을 근로자 업무상 재해의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의조항에서 근로자와 임금 등의 개념을 근로기준법상의 정의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입법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 6-6〉 산재보험 적용 대상

구분	적용 대상	세부 적용 대상	근거 조문
일반적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법 제6조
특별적용	국외사업	국외 근무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보상	법 제121조
	해외파견자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	법 제122조
	현장실습생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	법 제123조
	중소기업사업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법 제124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업무상의 재해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	법 제125조
	자활급여 수급자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법 제126조

자료: 이기평, 김영미 (2018, p. 56)

산재보험의 경우 고용보험과 같이 보험료 일부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다. 다만, 산업재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자영업자의 가입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업종 제한이 없으나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여객운송, 화물운송, 건설기계, 쿼서비스, 대리운전, 예술인, 금속제조, 자동차정비 등 시행령에서 정한 일부 직종에 한정되어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되었다. 1인 자영업자가 전체의 70%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상당수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가입에서 제외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7, p. 36). 법 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대상 업종에 도소매업,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이 포함되어 상당수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표 6-7〉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요건

구분	대상	비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법인의 대표이사도 가입 가능 업종 제한 없음
1인 자영업자	여객운송, 화물운송, 건설기계, 렉서비스, 대리운전, 예술인, 금속제조, 자동차정비, (음식점, 소매, 도매 및 상품증개, 기타 개인서비스)	-

자료: 근로복지공단(2019, p. 113)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데 반해, 산업재해보험료는 고용주가 전부 부담한다.¹⁹⁾ 자영업자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액에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보험료 산정에 있어 근로자는 급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보수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기준보수액의 선택이 가능하며, 높은 등급을 선택하면, 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급여도 높아진다. 기준보수액은 1등급(월 6만 6800원)에서 12등급(월 21만 4402원)으로 구분된다.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정해진다. 예컨대 위험성이 높은 광업이 5.85~22.65%이며, 사고발생률이 낮은 금융 및 보험업은 0.75%이다(고용노동부고시, 2017. 12. 29.).

〈표 6-8〉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기준보수액

구분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2,004,000	66,800
2등급	2,406,540	80,218
3등급	2,809,080	93,636
4등급	3,211,620	107,054
5등급	3,614,160	120,472

1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및 5항.

구분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6등급	4,016,700	133,890
7등급	4,419,240	147,308
8등급	4,821,780	160,726
9등급	5,224,320	174,144
10등급	5,626,860	187,562
11등급	6,029,400	200,980
12등급	6,432,060	214,402

자료: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00호(2018. 12. 4.).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현황을 살펴보면 가입자 수는 2017년 11월 기준으로 2만 731명이다. 해당 시점 전체 자영업자 규모(573만 1000명)를 고려했을 경우 대략 0.36% 수준이다. 여기서 고용원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1만 5636명으로, 전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64만 4000명)의 0.95%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5095명에 불과하며 전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406만 4000명)의 0.13%이다.

〈표 6-9〉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현황

(단위: 명)

연도	근로자 유	근로자 무	전체
2013	15,155	2,285	17,440
2014	16,843	2,943	19,786
2015	17,996	3,296	21,292
2016	19,210	4,124	23,334
2017	15,636	5,095	20,731

주: 2017년은 11월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자료: 고용노동부(2016)

이처럼 낮은 가입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제기된다. 우선 임의가입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복잡한 가입 절차, 사업주가 보험료 전부를 부담해야 된다는 점, 사업주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대

현, 홍충표, 김은성, 김응조(2017)의 연구에 따르면 1인 소상공인들의 76.5%가 산업재해보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75.2%가 실제 가입 의향이 있으며, 월평균 2만 5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산재보험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39.5%에 그쳤다. 이로 미루어 보아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대한 홍보 강화, 가입 절차 간소화와 함께 현행 임의가입을 의무가입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파란우산공제²⁰⁾(중소기업 손해공제)

영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정책은 없으나, 중소기업이 화재 사고나 각종 영업상의 사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중소기업 손해공제(파란우산공제) 제도가 2013년 도입되었다. 파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제공하는 공제제도로서 손해공제, 제조물책임(PL: Product Liability) 단체보험, 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을 통칭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이다(파란우산공제 홈페이지, 2019. 2. 4. 인출).

파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고 위험 등 경영 과정에서 노출되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서비스의 주목적으로 하며 화재, 영업배상책임 등 공제와 제조물 책임 단체보험을 시중보다 10~25%가량 저렴한 비용에 제공함으로써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 거절을 최소화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사업 및 생계 기반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중소기업중앙회, 2014). 지원 대상은 공장, 판매장, 사무실 등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개

20) '파란우산'의 파란색은 화재나 사고를 연상시키는 빨간색에 대비되는 소방수(水)를, 우산은 사고를 대비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연합뉴스., 2013. 11. 24.).

인주택 및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은 제외된다(중소기업청, 2015, p. 144). 파란우산공제는 타 보험(공제) 상품보다 가격이 저렴하며, 가입이 수월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단독 기업이 직접 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할인받지 못하지만, 파란우산공제를 통하여 가입하면 보험료를 10~25% 할인받을 수 있으며 가입 제한을 최소화함으로써 위험업종 사업장에 가입의 문을 확대하였고, 공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상서비스를 제공한다(중소기업중앙회, 2014).

파란우산공제는 2011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2013년 11월 25일부터 상품 판매를 시작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1년 6월 30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공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²¹⁾ 2012년 3월 27일에는 손해와 보증, 제3공제에 대한 사업 인가를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획득하였다(파란우산공제 홈페이지, 2019. 2. 4. 인출; 매일경제, 2018. 6. 14.).²²⁾ 2013년 11월 25일 파란우산손해공제를 서비스로 출원하여 7개 보험사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단체보험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화재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재산종합공제, 근로자재해공제, 단체상해공제 등을 꾸준히 추가했다. 2016년에는 기업종합공제와 건설기계안전공제를 출시하였으며, 2018년에 근로자재해공제와 단체상해공제는 추가 가입이 중단되어 현재는 화재, 영업배상책임, 재산종합, 기업사랑종합공제의 4가지 공제를 운영하고 있다(매일경제, 2018. 6. 14.).

손해공제 상품에는 화재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재산종합공제, 기업사랑종합공제의 4가지가 있다. 화재공제는 공제목적물(상가, 공장 등)이 화재 사고(벼락 포함)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로서 화재로 인한 직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1항 제122호[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53호, 2011. 7. 25., 일부개정]

22)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규정(2012. 3. 27., 제정)

점 손해뿐만 아니라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를 보상한다. 영업배상책임공제는 담보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기업의 각종 손해보상과 제반비용을 보장한다. 재산종합공제는 공제 대상자의 재산손해, 기계손해, 기업휴지손해,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하며 4가지 계약을 하나의 증권으로 묶음으로써 위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기업사랑종합공제는 하나의 공제증권으로 화재손해뿐만 아니라 기계, 기업휴지 및 배상책임손해 등을 담보함으로써 기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통합하여 보장한다(파란우산공제 홈페이지, 2019. 2. 4. 인출).

〈표 6-10〉 파란우산공제 손해공제 상품

구분		보장 내용
손 해 공 제	화재공제	공제목적물(상가, 공장)이 화재사고로 입은 손해 보장
	영업배상책임공제	영업상 발생 사고로 제3자의 신체 및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시설소유자 배상, 도급업자배상, 주차장 배상, 임차자 배상, 건설기계업자 배상), 각종 비용손해 보장
	재산종합공제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재산위험, 기계손해, 기업휴지손해 및 배상책임위험을 하나의 계약으로 포괄 보장
	기업사랑종합공제	하나의 공제증권으로 화재손해뿐만 아니라 기계, 기업휴지 및 배상책임손해 등을 담보함으로써 기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통합 보장

자료: 파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insbiz.or.kr), 2019. 3. 8. 인출.

이 외에도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한 제조물책임(PL: Products Liability) 단체보험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PL 단체보험제도는 1999년 8월부터 제조물책임법 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비용 부담 완화 및 PL대

책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한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이다(파란우산공제 홈페이지, 2019. 2. 4. 인출).

중소기업중앙회의 PL 단체보험은 개별 가입 시보다 20~28% 저렴한 보험료와 안정적인 운영을 특징으로 하며, 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성장을 도모한다. 가입 대상은 1차 생산물을 제외한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으로서 원재료, 부품, 완제품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급업자, 기타제조물생산 및 판매 관련자 등이다. 기업은 PL보험을 통하여 제조물 사고에 대한 책임을 보험자(보험회사)에게 전가하고, 경비(보험료)는 소비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중소기업중앙회, 2017).

제3절 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이다.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019. 2. 4. 인출). 가입 유형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상시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고용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이후 당해 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서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²³⁾ 보수총액의 선정기준은 근

로자의 경우 임금, 상여금 등이 기준이 되며 해당 사업장의 대표인 자영업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기준이 된다. 보험료율은 6.46%이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 2019. 2. 4. 인출).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 대상이 된다.²⁴⁾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는 조금 더 복잡하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근로소득),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전월세), 자동차(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000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고려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 점수를 기준으로, 점수당 금액을 곱하고 보험료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구 단위로 부과하게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 2019. 2. 4. 인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서의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부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홍백의, 배지영, 박미희, 강준(2012)의 연구에서는 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를 납부하는 가구의 소득을 비교했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1795만 원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2639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수준이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 또한 부담 수준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23) 다만,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18년 7월부터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 2019. 2. 4. 인출).

24) 단, 법인사업장의 경우 1인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직장가입자의 대상이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 2019. 2. 4. 인출).

〈표 6-11〉 자영업자의 건강보험 가입 형태

구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입 형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단 법인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가입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 2019. 2. 4. 인출 및 재구성.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료의 형평성과 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가입자 대상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1977년 5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이래 1988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고, 2001년과 2003년 두 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과 임시직 근로자로 직장가입자 의무 대상을 확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자영업자는 여전히 지역가입자로 상대적으로 과중한 보험료를 떠안고 있었다. 다만, 2018년에 법개정을 통해 재산보험료에 대해 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축소하였으며,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차량의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이러한 조치로 영세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절 노후소득보장제도

자영업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사회보장의 일반체계 내에서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다음의 그림과 같이 재정이 투입되는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급여로 이루어진 0층, 국민연금 1층, 퇴직연금 2층 그리고 개인연금이 3층으로 이루어진 구조다(류건식, 강성호, 김동겸, 2017). 다만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보장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동일한 혜택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 예컨대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나, 자

신이 사업주인 자영업자는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되어 노후 대비가 취약한 실정이다.

[그림 6-1] 자영업자 노후소득보장체계

3층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노란우산공제	
2층	퇴직연금	
1층	국민연금	
0층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대상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자료: 류건식 외(2017, p. 16)를 재구성.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²⁵⁾²⁶⁾ 가입 유형은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²⁷⁾의 사용자와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따라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이다. 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2018. 2. 4. 인출).²⁸⁾

25)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한 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는 제외된다(국민연금법, 법률 제15876호, 2018. 12. 11. 일부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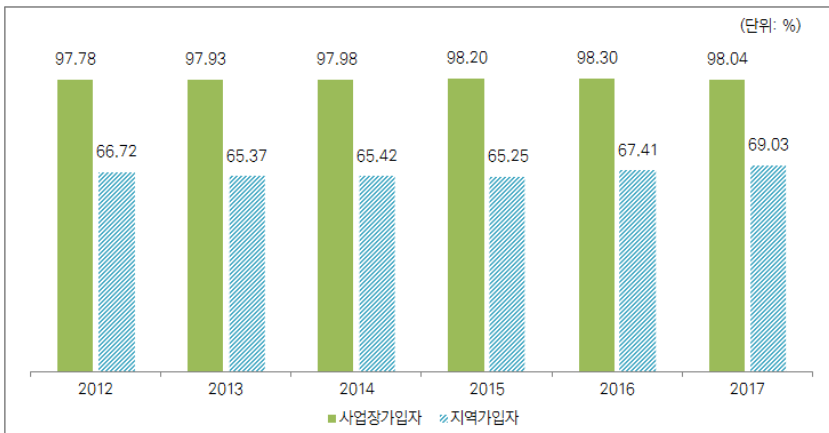
26)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999년 4월 1일 도시자영업자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이 되었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2018. 2. 4. 인출).

27) 국민연금법에 의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그 대상이 된다(국민연금법, 법률 제15876호, 2018. 12. 11. 일부개정).

28) 직장에서의 해고, 계약만료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는 납

보험료도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절반인 4.5%를 부담하고, 근로자는 나머지 4.5%를 납부하게 된다. 당연히 자영업자는 고용원 유무에 상관없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기준소득월액은 2019년 2월 기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액을 기초로 30만 원에서 최고 468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된다. 사업주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소득신고를 하면 이에 근거하여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된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2019. 2. 4. 인출).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전에 가입자의 종사업종 변경 여부 및 현재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의 적정성 여부를 과세자료 등에 의거해 조사, 확인한 후 결정하게 된다.

[그림 6-2]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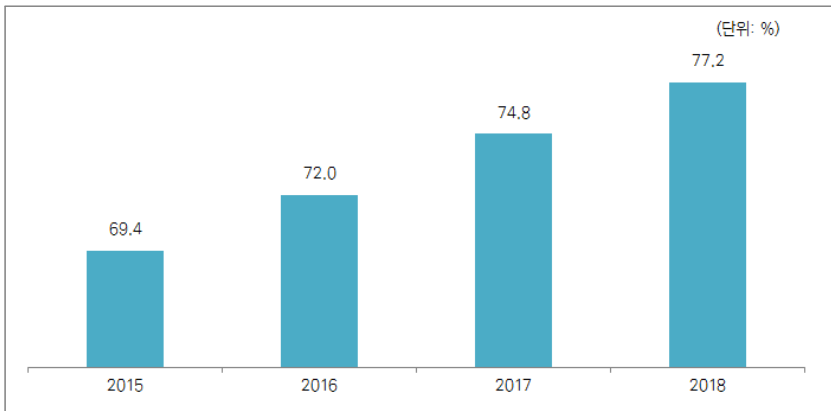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공단(2018). 국민연금통계.

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된다. 한편 가입 유형 중에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도 있는데, 전자는 주로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자, 후자는 연금을 받는 연령이 되었으나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납입 기간이 연장된 자를 의미한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2018. 2. 4. 인출).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으로 자영업자는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자영업자가 어느 정도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1인 자영업자가 포함된 지역 가입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율은 2017년 기준 69%로 사업장가입자의 98%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법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자영업자는 가입을 해야 하지만 실제 조사 결과에서는 미가입 자영업자가 상당수 확인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²⁹⁾를 조사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 가입률은 77.2%에 그치고 있다(통계청, 2018c). 추측하건대, 사업자등록증 없이 영업을 하여 법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영업자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유예한 자영업자가 미가입자 22.8%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3]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



자료: 통계청(2018c). 경제활동인구조사.

29)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연금에 현재 가입되었거나 연금을 받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한편, 사업자 신고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폐업을 하거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납부를 최대 3년간 유예할 수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적거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납부예외자 또는 장기체납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납부예외자에는 실업 등 사업 외 다른 사유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018년 8월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18~60세 미만) 739만 9827명 중 납부예외자는 47.7%(352만 671명)로 지역가입자의 절반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제, 2018. 10. 11.).

2.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이 노후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면서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19. 2. 4. 인출).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흔히들 알고 있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이 바로 그것이다. DB는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사용주는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수익은 사용주 몫이 된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도 사업주가 지게 된다. 반면, DC는 사용주가 매월 퇴직금을 산정(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하여 개별 근로자의 퇴직 연금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계좌 운용 방식에 따른 수익은 개인에게 돌아오며, 위험부담도 근로자가 지게 된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19. 2. 4. 인출).

그런데 이 두 가지 제도의 대상이 재직 중인 근로자로 한정된다. 또한 직장을 이동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생활자금 등으로 소진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개인퇴직계좌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할 경우 수령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일시금 등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최종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이다. 2011년 개정을 통해 개인의 개인퇴직계좌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확대·변경되면서 자영업자 가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7년 7월부터 자영업자의 가입이 허용되고 있다.³⁰⁾ 개인형 퇴직연금이 자영업자로 확대된 이유는 업종 전환이나 폐업 등에 대비하여 노후보장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인형 퇴직연금은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더라도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류건식 외, 2017).

개인형퇴직연금의 운용은 기본적으로 DC의 규정을 따른다.³¹⁾ 납부금에는 한도가 있는데, 연간 180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수급 요건은 55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연금의 경우 5년 이상의 지급기간 설정이 필요하다. 주택 구입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중도인출도 가능하며 이 경우 적립금의 50% 이내에서 가능하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18. 6. 29., 일부개정).

3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에 의하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DB 또는 DC 가입자 중 자기 부담으로 IRP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자영업자 등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3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 제4항.

〈표 6-12〉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개념	퇴직 시 지급할 급여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 근로자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	근로자 직장 이전 시 퇴직 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통 산 장치 근로자가 적립 운용 방법을 결정 퇴직일시금 수령자가입 시 동 일시금에 대해 퇴직소득 세 과세 이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연간 1,800 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불입 가능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 입자 3. 자영업자, 계속근로기 간 1년 미만 근로자, 주15 시간 미만 근로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기업 부담	산출기초율(운용수익률, 승급률, 이직률 등)에 따라 부담금 변동 규정에서 정한 최소 수준 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퇴직연금사업자는 기업의 부담금이 최소 수준을 상회하는지 매년 재정건전성 검증 실시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 비율로 확정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부담금 주체가 가입자 본인, 기업 부담 없음.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

(http://pension.fss.or.kr/fss/psn/intro/system/system2_4.jsp, 2019. 2. 4. 인출) 재구성.

3.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고령 및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업에 재기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공제

제도이다. 2006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듬해인 2007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다(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2019. 3. 8. 인출).³²⁾ 가입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관계없이 「중소기업기준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사업주³³⁾로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가입 가능하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8. 12. 31., 일부개정).³⁴⁾

〈표 6-13〉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및 연평균 매출액 기준

업종 구분	15년 말 상시근로자 수	연평균 매출액
가.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50명	120억 원 이하
나. 전기·가스·수도사업	10명	
다.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50명	80억 원 이하
라.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험업	10명	
마.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명	50억 원 이하
바. 도·소매업	10명	
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50명	30억 원 이하
아.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10명	
자.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50명	10억 원 이하
차.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10명	

자료: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2019. 2. 4. 인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7. 26., 타법개정) 재구성.

32) 2017년 기준 누적 가입 고객은 110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부금은 8조 500천억 원에 달한다(매일경제, 2018. 1. 11.).

33) 중소기업의 범위는 업종별로 상이하나 대략 연매출 10억~120억 원 이하이다. 소상공인의 전제조건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5~10명 미만이어야 한다(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2019. 2. 4. 인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7. 26., 타법개정).

34)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해도, 사업 사실이 확인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프리랜서)의 가입은 가능하다. 다만, 유흥주점업, 도박장 등 일부 유해 업종은 가입이 제한된다(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2019. 3. 8. 인출).

부금의 납부는 월납 기준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능하다. 공제금의 지급은 자영업자의 폐업, 사망 시 지급되며, 60세 이상 고령인 경우 10년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다면 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인 대표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임 시 공제금이 지급된다. 공제금은 기존 공제금에 자산 운용 실적에 따른 부가공제금을 합산하여 지급된다. 지급 방법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제금이 1000만 원 이상이면 60세 이상일 경우 분할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기(분기, 반기, 연)와 기간(5년, 10년, 15년, 20년)을 선택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2019. 2. 4. 인출).

〈표 6-14〉 노란우산공제 개요

구분	세부 내용
공제 목적	생계 위협 시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기여금 납입	월 5만~100만 원(1만 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공제금 지급	폐업, 사망, 질병, 노령 시: 일시금 지급(단 60세 이상 분할 납부 가능)
세제 혜택	200만~500만 원 추가 소득 공제
상해보험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
운영기관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자료: 류건식 외(2017). p. 22

〈표 6-15〉 2018년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기준이율

공제 사유	이자 지급(연복리)
폐업·사망	2.7%(기준이율+0.3%)
퇴임(질병·부상)	2.4%(기준이율)
노령(60세 이상, 10년납)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2018. 10. 29.)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5개 지자체로 확산', p. 3.

노란우산공제는 사회안전망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납부 금액은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 추가 소득공제와 함께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 부금액의 150 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중도 해지하는 경우 환급금을 부담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리고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에는 간주해약이 적용되어 폐업이나 노령, 사망 등에 의한 공제금보다 낮은 혜택을 받는다(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2019. 2. 4. 인출).

〈표 6-16〉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액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4,000만 원 이하	500만 원	4,000만 원 이하	500만 원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4,000만 원 초과 5,675만 원 이하	3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주: 법인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또는 근로소득이 5675만 원(총급여 7000만 원에서 근로 소득공제 1325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함.

자료: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http://webzine.8899.or.kr/magazine/kbiz/sm-1/pt-post/nd-19>, 2019. 2. 4. 인출)

또한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며 저리대출,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납부한 공제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안전하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공제부금을 연체하지 않고 12개월 이상 납부한 소기업·소상공인은 계약자의 납부 부금 합계액 또는 임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90%까지 연 3.7%(2018년 기준, 분기별 변

동금리) 수준으로 1년간 공제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2019. 2. 4. 인출). 그 외 가입자의 사기 진작 및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휴양시설 이용, 건강검진, 경영활동 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노란우산공제 복지서비스 홈페이지 2019. 2. 4. 인출).

노란우산공제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106만 명 이상(재적 기준)의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였으며,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은 가입자도 21만 명을 넘어섰다(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2018. 10. 29.).

〈표 6-17〉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공제금 지급 현황

(단위: 건, 억 원)

구분	가입		공제금 지급		해지		재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7	4,014	30	1	0	10	0	4,003	30
2008	10,409	359	144	3	138	3	10,127	353
2009	19,850	887	580	19	249	9	19,021	859
2010	33,106	1,816	1,447	63	407	19	31,252	1,734
2011	67,591	3,177	3,278	165	1,042	42	63,271	2,971
2012	122,880	4,881	6,844	350	2,158	72	113,878	4,459
2013	121,783	7,522	12,690	634	4,356	128	104,737	6,760
2014	112,224	10,388	19,593	1,051	5,986	230	86,645	9,107
2015	193,531	13,954	26,650	1,635	7,241	330	159,640	11,989
2016	195,817	18,486	38,198	2,560	10,311	498	147,308	15,427
2017	251,266	23,832	53,384	3,875	15,281	801	182,601	19,156
2018. 9.	210,071	21,158	51,071	3,975	15,851	872	143,149	16,310
합계	1,342,542	106,490	213,880	14,330	63,030	3,004	1,065,632	89,155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2018. 10. 29.)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5개 지자체로 확산', p. 4.

지역별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26.0%, 경기 25.5%, 인천 5.5%로 전체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2018. 10. 29.).

〈표 6-18〉 노란우산공제 지역별 가입 현황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수 (2015년 기준)		가입자 수 (2018년 9월 말 기준)		가입률
	사업체 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서울	744,018	21.3%	349,243	26.0%	46.9%
부산	255,170	7.3%	71,951	5.4%	28.2%
대구	185,452	5.3%	70,600	5.3%	38.1%
인천	169,594	4.8%	73,492	5.5%	43.3%
광주	102,485	2.9%	31,066	2.3%	30.3%
대전	101,258	2.9%	43,160	3.2%	42.6%
울산	73,784	2.1%	34,200	2.5%	46.4%
세종	9,164	0.3%	5,136	0.4%	56.0%
경기	754,208	21.5%	342,389	25.5%	45.4%
강원	118,447	3.4%	33,339	2.5%	28.1%
충북	108,295	3.1%	43,254	3.2%	39.9%
충남	140,144	4.0%	47,032	3.5%	33.6%
전북	128,087	3.7%	39,699	3.0%	31.0%
전남	127,337	3.6%	27,213	2.0%	21.4%
경북	195,912	5.6%	52,499	3.9%	26.8%
경남	237,772	6.8%	64,313	4.8%	27.0%
제주	49,204	1.4%	13,956	1.0%	28.4%
합계	3,500,331	100.0%	1,342,542	100.0%	38.4%

주: 소기업·소상공인 수는 통계청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자료임.

자료: 통계청(2015). 2015년 경제총조사;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2018. 10. 29.)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5개 지자체로 확산’, p. 5. 재구성.

한편, 지자체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가입자에게 가입(희망)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희망장려금 사업은 사업 시행 지자체에 소재하는 연매출

액 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매월 1만 원씩을 1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2018). 이러한 희망장려금 사업은 2016년 3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2018년 제주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로 확대되어 5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대전광역시, 청주시 등의 지원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2018. 9. 4.; 아시아 뉴스통신 2018. 12. 25.). 서울시를 살펴보면 희망장려금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가입률은 2017년 기준 43.2%로 전년 대비 9.3%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신규 가입 소상공인 수도 2017년 기준 6만 51명으로 전년 대비 30.4%(1만 4005명) 증가하였다(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2018, p. 4).

〈표 6-19〉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 실적

2016년	서울시 소상공인 월별 공제 가입			2017년	서울시 소상공인 월별 공제 가입		
	가입자 수	희망장려금 지원			가입자 수	희망장려금 지원	
		지원자 수	지원 비율(%)			지원자 수	지원 비율(%)
1월	(2,570)	-	-	1월	3,513	1,120	31.9%
2월	(2,800)	-	-	2월	4,768	1,692	35.6%
3월	4,161	1,482	35.6%	3월	6,214	2,408	38.8%
4월	2,731	1,074	39.3%	4월	5,343	2,078	38.9%
5월	4,308	1,476	34.3%	5월	6,515	2,502	38.4%
6월	4,362	1,450	33.2%	6월	6,077	2,432	40.1%
7월	4,224	1,453	34.4%	7월	5,487	2,073	37.8%
8월	3,573	1,186	33.2%	8월	5,412	1,886	34.8%
9월	3,404	1,293	38.0%	9월	5,001	1,835	36.7%
10월	4,525	1,464	32.4%	10월	3,576	1,169	32.4%
11월	4,851	1,552	32.0%	11월	4,201	1,523	36.0%
12월	4,537	1,563	34.5%	12월	3,944	1,319	33.4%
소계	40,676 (46,046)	13,993	34.4%	소계	60,051	22,037	36.7%

자료: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2018) '2018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계획, p. 4.

제5절 근로장려세제(EITC)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란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수단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조하고 근로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정의용, 2014). 우리나라는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촉진하고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의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사회의 이중 안전망을 삼중 안전망으로 확충함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자 도입되었다(이대웅, 권기현, 문상호, 2015). EITC는 2006년 도입, 2009년 지급 이래 2014년까지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었으나, 2015년부터 자영업자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13. 12. 23.; 국세청 보도자료, 2014. 5. 2.).

〈표 6-20〉 EITC 연혁

	최초 도입안	2018년	2019년
대상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소득기준금액 (부부 합산)	1700만 원 미만	단독 가구: 1300만 원 홀벌이: 2100만 원 맞벌이: 2500만 원	단독 가구: 2000만 원 홀벌이: 3000만 원 맞벌이: 3600만 원
부양가족, 연령요건	18세 미만 2인 이상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또는 30세 이상 단독 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 가구
주택	무주택	-	-
재산	1억 원 미만	1억 4000만 원	2억 원
최대지급액	120만 원	단독 가구: 85만 원 홀벌이: 200만 원 맞벌이: 250만 원	단독 가구: 150만 원 홀벌이: 260만 원 맞벌이: 300만 원

자료: 현다운, 석재은(2014), 이대웅, 권기현, 문상호 (2015)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EITC를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총급여액 등이 기준금액 이하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이며, 크게 사업장이 있는 사업장가입자와 사업장이 없는 인적용역자³⁵⁾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은 가구 요건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수급할 수 있다.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나 동거하는 70세 이상인 부양부모가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연간 총소득이 단독 가구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2019. 2. 4. 인출).

EITC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소득이 소득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하는지 증빙이 필요하다. 자영업자는 대부분 사업소득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인데, 여기서의 사업소득은 전체 매출에서 법률에서 정해 놓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구해진다.³⁶⁾ 조정률은 업종별 투입·산출 구조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업종별 생산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비중을 적용한 경우 매출 원가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며, 부동산업 인적자본이 주요 투입물인 업종의 자영업자 소득은 낮게 계상되기 때문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35) 인적용역자 중 특수직 종사자에는 소포배달용역(퀵서비스), 물품배달원(수화물운반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욕실 종사원),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이 해당된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에는 저술가, 화가, 작곡가, 성악가, 배우, 모델, 가수, 연예보조, 자문, 바둑기사, 꽃꽂이 교사, 학원 강사, 직업운동가, 봉사료 수취자, 보험 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포매달원, 다단계판매원,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자 등이 해당된다(국세청 보도자료, 2013. 12. 23., p. 4).

36) EITC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는 대부분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다. 일반사업자(연매출 4800만 원 이상)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 납부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매입세액(비용)을 증빙해야 하는데, 간이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증빙 없이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따라서 굳이 매입세액을 증빙하기 위해 자료를 챙기지 않는다. 자영업자 EITC 소득 증빙 시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는 것도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실제 실무에서도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료와 실제 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EITC 신청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전문직³⁷⁾은 원칙적으로 EITC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무등록 사업자의 신청도 제한적이다.

〈표 6-21〉 자영업자 업종별 조정률

업종	조정률
도매업	20%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0%
제조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45%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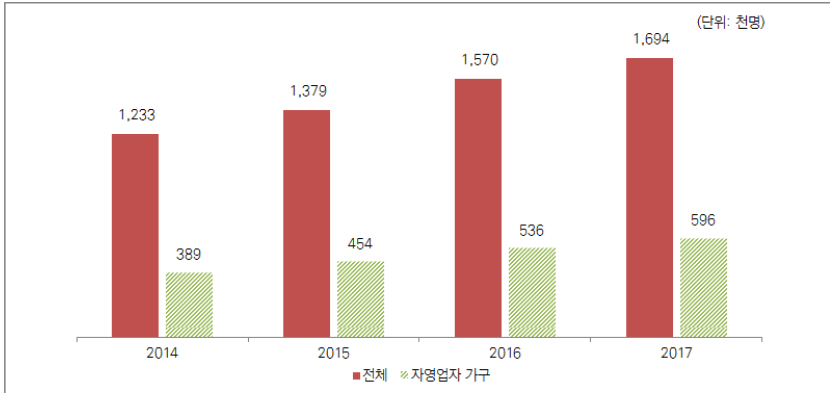
주: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1항 4 관련.

정부의 EITC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2017년 EITC 혜택을 받은 자영업자 가구 수는 대략 60만 가구에 달하며, 전체 혜택 가구(170만 가구)의 35.2%에 이른다(국세통계, 2019a).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는 양상인데 2014년(31.5%)과 비교하여 대략 4%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음식점, 소매업 등 자영업 주요 분야의 기업화·산업화로 자영업자의 영업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가구의 비중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37) 구체적으로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된다(국세청 보도자료, 2013. 12. 23., p. 4).

[그림 6-4] EITC 지급 현황



주: 사업소득 기준으로 EITC를 신청한 가구를 자영업가구로 정의.
 자료: 국세청(2019a). 국세통계: 근무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국세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단독 가구 25만(41.9%), 홑벌이 가구 29만(48.6%), 맞벌이 가구 6만(9.5%)으로 홑벌이 가구의 비중이 가장 크며, 전년 대비 단독 가구는 6만 5000가구(27.3%)가 증가하였으나,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수는 감소하였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단독 가구 48만 원, 홑벌이 가구 103만 원, 맞벌이 가구 116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가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2〉 가구 유형별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

(단위: 가구, 백만 원)

구분	합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2015	567,616	468,610	127,014	50,504	366,255	340,099	74,347	78,007
2016	678,842	548,223	230,161	99,739	376,370	368,073	72,311	80,411
2017	727,668	604,118	295,436	142,325	368,090	384,717	64,142	77,076

주: 해당 연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함.
 자료: 국세청(2019b). 국세통계 가구유형별 자영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표 6-23〉 가구 유형별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가구, 백만 원)

구분	합계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2014	403,287	352,864	33,589	12,326	295,953	267,101	73,754	73,437
2015	467,608	370,961	108,705	42,452	290,422	260,225	68,481	68,284
2016	562,752	440,573	196,007	83,413	301,022	286,816	65,723	70,344
2017	596,355	485,097	249,587	119,693	289,845	299,467	56,923	65,937

주: 해당 연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함.

자료: 국세청(2019b). 국세통계: 가구 유형별 자영업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자영업자를 사업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사업장사업자는 21만 가구(35.2%), 인적용역은 33만 가구(55.5%), 둘 다 해당이 6만 가구(9.2%)로 자영업자 EITC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특수직종사자를 포함한 인적용역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였을 때 인적용역자는 12.5% 증가하였으나, 사업장가입자와 둘 다 해당되는 가입자는 각각 1.3%, 0.8% 감소하였다. 또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사업장사업자와 인적용역자에 둘 다 해당하는 가입자가 93만 원으로 사업장가입자 87만 원과 인적용역자 76만 원에 비해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4〉 자영업자 사업장 유형별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

(단위: 가구, 백만 원)

구분	합계		사업장사업자		인적용역자 (특수직종사자 포함)		사업장사업자 +인적용역자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2015	567,616	468,610	240,975	209,902	269,794	207,345	56,847	51,363
2016	678,842	548,223	267,663	230,997	344,193	255,963	66,986	61,263
2017	727,668	604,118	265,448	240,779	394,582	299,946	67,638	63,393

주: 해당 연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함.

자료: 국세청(2019c). 국세통계: 사업장별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

〈표 6-25〉 자영업자 사업장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가구, 백만 원)

구분	합계		사업장사업자		인적용역자		사업장사업자 +인적용역자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2014	403,287	352,864	160,633	144,080	199,650	168,595	43,004	40,189
2015	467,608	370,961	179,765	147,166	233,642	176,828	54,201	46,967
2016	562,752	440,573	212,975	174,761	294,313	216,102	55,464	49,710
2017	596,355	485,097	210,101	183,096	331,227	250,908	55,027	51,093

주: 해당 연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함.

자료: 국세청(2019c). 국세통계: 사업장 유형별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제6절 기타 지원정책

현재 두루누리 지원사업 및 사회보험공제 확대 등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시행 중이다. 다만 이러한 지원사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성격이 짙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³⁸⁾과 연계되어 운영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 대상이 자영업자 본인이 아니라, 자영업자의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지원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³⁹⁾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도입 당시 자영업자는 근로자에 비해 소득파악률이 낮아 해당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고, 실직과 노후 위험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하여 자영업자는 지원 대

38)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 지원사업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 되며 2019년 기준으로 월 보수액 21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 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2019. 2. 4. 인출).

39) 게다가 고용원을 두지 않는 1인 자영업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한상운, 성주호, 2013).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의 수혜 대상은 자영업자 자신이 아닌, 자신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소득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본 절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경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겠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두루누리 지원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2012년 2월 시범사업 이후 현재까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이다. 지원 내용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소요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3년 동안 지원한다. 여기에는 사업주, 근로자 각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모두 포함된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에 더해, 근로자들도 사회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회보험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까지 경제활동을 할지 불투명하다. 또한 불규칙적으로 단기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많아서 고용보험의 수급 자격(180일 이상)을 얻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비용 대비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업과 연계하여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우선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 부담액의 50%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기존 재직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60%를 경감해 주고 있다.

〈표 6-26〉 자영업자 사업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프로그램

구분	주요 내용
두루누리 지원사업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최대 90% 각각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며 종사자 규모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에 한해 건강보험료 60% 경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기존 재직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는 두루누리 지원 등을 제외한 사업주 실부담액 50% 세액공제

자료: 고용노동부(2018b).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바로 알기, p. 20 재구성.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빈곤층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소득을 지원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임금 근로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이 2011년부터 논의되었다(유경준 외, 2013, p. 21). 2011년 9월 9일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1. 9. 9.)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사회보험 가입 확대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4개월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세부계획을 추진하였다(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1. 9. 9.).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2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 보수 124만 원(최저임금 120%)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공식 사업은 2012년 2월 전국 1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후 7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고, 실직 위험과 노후 불안정으로부터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월평균 35만~125만 원)와 사업주에게 월평균 보수 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2분의 1~3분의 1을 차등 지원하였다(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2. 6. 2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을 확대하고 있다. 2013년 1월부터 근로자 월평균 보수 기준을 기존 125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4월부터 지원 수준을 기존 2분의 1~3분의 1 차등에서 일괄 5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3. 25.). 이후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 기준을 2014년 135만 원, 2015년 140만 원, 2018년 190만 원, 2019년 210만 원으로 점차 확대하였다. 임금 근로자 외에 일용직 근로자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용근로자가 많은 건설사업장의 경우 지원 대상을 기존 총공사금액 1억 원 미만에서 2016년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였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5. 12. 22.).

또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가입을 유인하기 위하여 신규 가입 여부와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보험료 지원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2016년 1월부터 보험료 지원율을 일괄 50%

에서 신규 가입자는 60%로 높이고, 기존 가입자는 40%로 조정하였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5. 12. 22.). 이때 신규 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3년간 피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고,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고용보험·국민연금 최초 가입자로 기준을 정비하였다. 2018년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 고용 특성을 반영하여 신규 가입요건을 최근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로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자 수에 따라 신규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80~90%를, 기존 가입자에게는 40%를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8호, 2017. 12. 26.).

한편, 월평균 보수 수준 외에 재산 또는 소득 보유 수준에 대한 지원 제한 규정이 없어 사업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지원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고액 자산근로자 지원 제외 기준을 설정하였다(보건복지부 고시, 2016. 11. 29.; 고용노동부고시, 2017. 6. 27.). 2016년 11월 고액 자산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 기준을, 2017년 6월에는 고액 자산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기준을 도입하여 매년 그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 2019년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자, 전년도 근로소득이 2722만 원 이상인 자,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52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보건복지부 고시, 2018. 12. 26.).

2019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평균 보수 기준을 210만 원(최저임금 120% 수준)으로 인상하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 수와 신규 가입여부에 따라 40~90%까지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다.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율이 기존 가입자보다 높는데, 신규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90%를, 5명 이상 10명 미만이면 80%를 지원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40%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8. 12. 26.).

〈표 6-27〉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주요 제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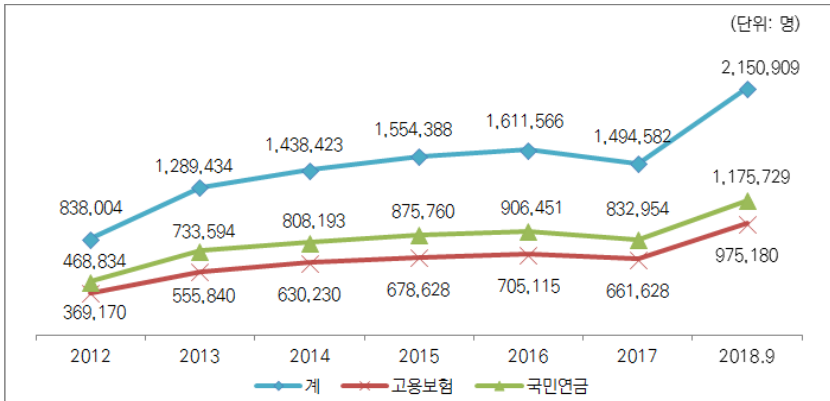
구분	월평균 보수	사업 규모	지원 수준	
2012년	월 보수 35만~125만 원 미만	10명 미만	-35만~105만 원 미만 50% 지원 -105만~125만 원 미만 33.3%(1/3) 지원	
2013년	월 보수 130만 원 미만		1~3월	110만 원 미만 50% 지원 110만~130만 원 미만 33.3%(1/3) 지원
			4~12월	130만 원 미만 50% 일괄 지원
2014년	월 보수 135만 원 미만		50% 일괄 지원	
2015년	월 보수 140만 원 미만		50% 일괄 지원	
2016년	월 보수 140만 원 미만		신규 가입자 60%, 기존 가입자 40% 차등 지원	
2017년	월 보수 140만 원 미만		신규 가입자 60%, 기존 가입자 40% 차등 지원	
2018년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 90% -근로자 수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 80%	
2019년	월 보수 210만 원 미만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기존 가입자 40%		

자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insurancesupport.or.kr, 2019. 1. 4. 발췌). 신영석 외 (2018, p. 44). 〈표 2-2〉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주요 제도 변화. 재인용.

고용노동부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본 신영석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월평균 백만 개소 이상의 사업장과 약 215만 명의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았다. 고용보험료 지원의 경우 사업장은 42만 5743개소, 근로자는 97만 5180명이, 국민연금의 경우 58만 4553개소의 사업장과 117만 5729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았다.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은 근로자 수는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2018년까지 연평균 17% 증가하였으며, 2018년 9월 기준 215만 909명 중 기존 가입자가 83.2%, 신규 가입자가 16.8%로 나타났다. 사업장 수는 2012년부터 연평균 16.4% 증가하여 2018년 9월 기준 월평균 101만 296개소가 지원받고 있다. 근로자와 사

업주에게 지원된 사회보험료 지원 금액은 2012년 1705억 원에서 2018년 9월 6405억 원으로 연평균 24.7% 증가하였으며, 근로자 1인당 평균 14만 5913원, 사업장 1개소당 평균 32만 3326원이 지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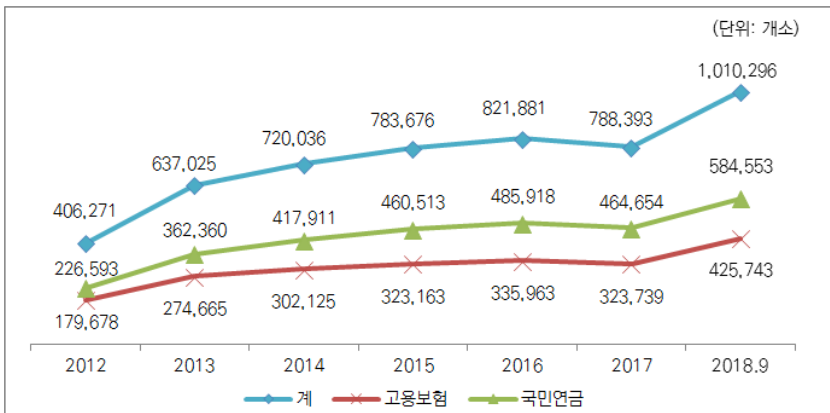
[그림 6-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근로자 수



주: 집행액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2018. 10. 25.). 신영석 외(2018, p. 46).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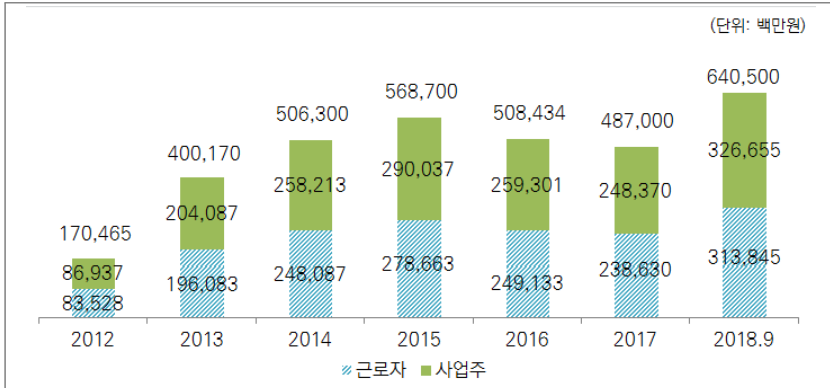
[그림 6-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사업장 수



주: 집행액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2018. 10. 25.). 신영석 외(2018, p. 48).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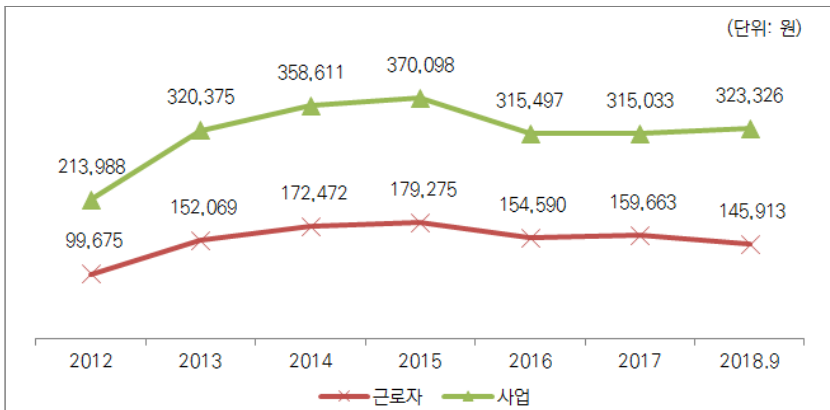
[그림 6-7]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금액



주: 집행액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2018. 10. 25.). 신영석 외(2018, p. 49). 재인용.

[그림 6-8]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개인별/사업장별 지원 금액



주: 집행액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2018. 10. 25.). 신영석 외(2018, p. 51). 재인용.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8년 1월 도입되었다(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2019. 2. 20. 인출).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5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며,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감면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세 사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와 함께 사회보험 가입 증가로 인한 저소득 근로자들의 고용안전망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2017년 7월 16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발표하고, 7월 17일 총 23개 기관이 참여한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였다. 이후 3개월 반 동안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로 2017년 11월 9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발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7. 11. 9.). 2018년 1월 도입 이후 점차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현재는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인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고용노동부고시, 2019. 1. 1.).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3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이며, 근로자 수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상용, 일용, 고용보험 적용 제외(외국인 등)자를 포함한 평균 근로자 수로 판단한다. 단,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특수관계인은 제외되며,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산정한다. 원칙적으로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

라 고용 불안 우려가 큰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하며,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그리고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지원 기준을 기존 월 15일 이상 근무에서 10일 이상 근무로 완화하였다(고용노동부고시, 2018. 9. 20.; 고용노동부고시, 2019. 1. 1.). 이때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한편,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과 더불어 2019년 1월 이후 근로자가 자발적인 사유나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도 해당 근무 기간 동안 소급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은 월평균 보수가 210만 원 이하이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적용 제외 근로자도 지원)하고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한 특수 관계인을 제외한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고소득 사업주 또는 임금체불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과세소득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제재부가금 부과사업주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용노동부, 2018b).

지원 요건은 월평균 보수가 210만 원 이하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하고 있는 근로자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수기준은 2019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월 환산액(175만 원)의 120% 수준에 해당하는 2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월평균 보수 210만 원은 과세소득 기준 기본급에 초과근로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합한 보수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의미한다(고용노동부고시, 2019. 1.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에 맞추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연장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월 보수 2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2월 12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월 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 원 이하인 해당 근로자⁴⁰⁾에 대하여 연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었다(소득세법 시행령, 2019. 2. 12., 일부개정).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하고 1일 기준 보수가 9만 7000원 이하여야 지원 가능하며,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⁴¹⁾이 지원 기준을 초과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시간(시간제) 근로자는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보수기준 충족과 더불어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외국인, 초단시간 근로자)와 적용 제외 사업장(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은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한다(고용노동부고시, 2019. 1. 1.).

지원 금액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며, 2019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

40) 생산 및 관련 종사자와 돌봄서비스 종사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종사자,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판매·농림·어업·계가·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종사자 등(소득세법 시행령, 2019. 2. 12., 일부개정)

41) 18년 하반기 기준 11만 8130원(대한건설협회, 2018, p. 8)

향이 크나 지불 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월 15만 원을 지급받는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구간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최대 12만 원을 지급한다. 2019년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 10시간 미만인 경우 6만 원,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인 경우 9만 원,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경우 12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데, 월 근로일수가 10일 이상 15일 이하인 경우 8만 원, 15일 이상 18일 이하인 경우 10만 원, 19일 이상 21일 이하인 경우 12만 원, 22일 이상인 경우 13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고용노동부고시, 2019. 1. 1.).

〈표 6-28〉 근로 유형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보수기준 및 금액

구분	지원 보수기준	지원 금액
상용 근로자	월 보수액 210만 원 이하	- 5인 미만: 월 15만 원 - 5인 이상: 월 13만 원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	-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12만 원 -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9만 원 - 10시간 미만: 6만 원
일용근로자	월 실근무일수 10일 이상, 1일 기준 보수 9만 7000원 이하	- 22일 이상: 13만 원 - 19일 이상~21일 이하: 12만 원 - 15일 이상~18일 이하: 10만 원 - 10일 이상~14일 이하: 8만 원

자료: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1호(2019. 1. 1.).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재정리.

근로자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현금 지원과 더불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 공제 등 사회보험료 경감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하여 월 보수 210만 원 미만 노동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업주와 노동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신규 가입자에게 80~90%, 기존 가입자에게 40%를 지원한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최대 6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2019년도 신규 가입자는 5인 미만 60%, 5인 이상 30인 미만 50%, 2018년도 기가입자의 경우 30인 미만 또는 공동주택경비 청소원은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공제를 통해 10인 미만 중소기업은 신규 채용과 기존 재직자에 의한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4대 보험 사용자 실부담액의 50%를 2년간 경감받을 수 있다.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기존 재직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두루누리, 건강보험료 경감액 등 기타 정부지원금은 제외하고 산정된다(고용노동부, 2018b).

※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액 감소(예시)

- 사회보험 신규 가입에 따른 부담이 사회보험 경감 방안을 통하여 보정 가능
- 2019년 기준 근로자당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15.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약 13.8만 원 감소
- 5명 미만 사업체, 월 보수 175만 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기준, 산재보험 제외

(단위: 원)		합 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율(%)		8.9	0.9	4.5	3.5
경감 전 월 보험료		155,290	15,700	78,520	61,070
경감 방안	두루누리 지원 강화	84,790	14,130	70,660	-
	건보료 감면	36,640	-	-	36,640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6,920	780	3,930	12,210
	합 계	138,350	14,910	74,590	48,850
경감 후 월보험료		16,940	790	3,930	12,220

주: 1)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0.65%, 고용안정 및 직업개발능력 0.25%(150인 미만 기업은 0.25% 적용) 적용

2)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 3.12%와 장기요양보험료율 0.23%가 합해진 값임.
출처: 고용노동부(2018b).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바로 알기', p. 20.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추가적으로 금리 혜택도 얻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2월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0만 원까지 융자 및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있다(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2018. 2. 14.).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통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5명 미만 소상공인에게 고정금리 2.5%로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긴급자금’을 제공하고 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2019. 2. 20. 인출). 이는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3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최대 70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례보증을 제공하고 있다(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2019. 2. 20. 인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시행 초기에는 신청 인원과 지원 인원이 다소 낮았으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8년 10월 22일 기준 누적 249만 명이 신청하였으며, 그중 183만 명이 지원받고 있다.

〈표 6-29〉 2018년 월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현황(누적)

(단위: 만 명, 억 원)

구분	실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22일
신청 인원	8	91	149	784	201	214	225	234	241	249
지원 인원	-	7.6	58	107	130	142	159	169	176	183
지원금 집행액	0.8	96	1,077	2,828	5,089	7,336	9,283	11,170	14,729	14,729

주: 신청 후 지원까지 심사 등 절차에 시간이 소요돼 신청 인원과 지원 인원에 차이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8b).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p. 198 재인용.

제7절 소결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체계가 완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폐업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노후소득 보장제도 미비 등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체계와 주요 사회보장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사회보험제도를 살펴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최근 들어 자영업자를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였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산정체제로 인해 더욱 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급여’의 적용에서 제외되며, 제도에 대한 홍보와 인식 부족 및 비용 대비 효과성 부족 등으로 인해 2018년 5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약 17만 5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자의 낮은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폐업 후 재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5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을 점차 확대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1인 소상공인만 가입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고용보험 제도의 목적 달성 및 가입 제고를 위해서는 그 대상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2018년 1월 7일부터 산재보험에 특례 형태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직종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노후보장체계는 크게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급여,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연금에서 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포함되어 보험료 9% 전액을 부

담하게 되는데,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은 부담으로 인해 이들의 국민연금 징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과 노령 은퇴 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업에 재기할 수 있도록 일 정부금 납입을 통해 퇴직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공제금의 수급권 보호, 소득공제,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받는 가입자 수는 2018년 기준 106만 명 이상으로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폐업·사망, 퇴임·노령 등으로 인해 공제금을 지급받은 가입자도 21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일하는 저소득 자영업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지원제도가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지원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2017년에 약 60만 자영업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으며, 전체 혜택 가구에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원사업들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기 때문에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들은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확대를 통하여 점차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8년 9월 기준 월평균 백만 개소 이상의 사업장이 두루누리 혜택을 받았으며, 2018년 10월 기준 누적 183만 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

〈표 6-30〉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	도입 시기	가입 의무	가입 자격	보험료율	가입 대상
건강보험	1989	의무가입	지역가입자	6.46%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한 농어민 등
국민연금	1999	의무가입	지역가입자	9.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고용보험	2012. 1. 22.	임의가입	특례가입	2.25%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산재보험	2018. 7. 1. (1인) 2000. 7. (50인 미만)	임의가입	특례가입	0.75~ 22.65%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일부 직종)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개인, 법인)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2019. 2. 20. 인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2019. 2. 20. 인출);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2019. 2. 20. 인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2019. 2. 20. 인출) 재구성.

〈표 6-31〉 자영업자 사회보장 지원정책

지원사업	도입 시기	사업 시행 주체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혜택	지원 수준
EITC	2015	국세청	자영업자	-가구, 소득,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150만~300 만 원
노란우산공제	2007	중소벤처 기업부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	-공제금(퇴직금) -소득공제 -압류금지 -상해보험금	
파란우산공제	2013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 소상공인		-손해공제 -PL 단체보험	-10~25% 보험료 저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2018. 1. 1.	중소벤처 기업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1~4등급 가입	-고용보험	-30~50% 지원
두루누리	2012. 7.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사업주 근로자	-근로자 210만 원 미만 -10인 미만 기업	-국민연금 -고용보험	-40~90%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2018	고용노동부	사업주	-근로자 210만 원 미만 -30인 미만 기업	-현금 -건강보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현금 13만 원 지원 -보험료 60% -세액공제 50%

자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2019. 2. 20. 인출);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2019. 2. 20. 인출); 파란우산공제 홈페이지(2019. 2. 20. 인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2019. 2. 20. 인출);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2019. 2. 20. 인출);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2019. 2. 20. 인출) 재구성.

제 7 장

결 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요약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위험,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2003년 신용대란,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으며 자영업 부문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커지기 시작했다. 특히 생계형 및 가족형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서비스산업의 전문화 및 대형화는 이들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그럼에도 이들은 질병, 노령, 실업, 산재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신빈곤층으로 몰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변화 특성, 자영업가구의 소득 수준 및 소득 빈곤 현황, 그리고 실직·재해·건강·노령 등 사회적 위험 취약성(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를 중심으로)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사회보장 지원 현황을 살펴봤다. 이를 통해 비교적 시행 초기 단계인 자영업 관련 사회보장정책들이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이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며, 최근 들어 자영업자의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부문의 인구학적 특성 변화를 살펴보면 젊은

층의 자영업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층 자영업자 비율은 증가하는 자영업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 부문의 교육 수준별 취업자 비율을 보면 저학력일수록 영세 자영업 비율이 높다.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형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 자영업자의 절대적 숫자와 비율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자영업자 부문 내 이질적인 변화 추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업이 점차 전문화 및 대형화되어 감에 따라 생계형 및 가족형 자영업자들은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에 따라 생계형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소매, 숙박, 음식업 분야의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당수가 빈곤 위험 및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취업자의 임금근로자화 현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비율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만 해당하는 현상으로 고령층은 임금근로자로의 취업 기회가 제한적이거나 기업에서의 장기간 근속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며,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에 따른 중고령층의 취업난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금재호 외, 2009). 결국 이러한 자영업자의 이질적 현상은 빈곤 위험성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자영업가구는 고용원 유무에 따라 소득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자영업자의 소득 수준은 고용주,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2017년을 기준으로 자영업가구의 월평균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268만 원으로 임금근로가구 257만 원보다 약 11만 원 더 많다. 그러나 자영업가구 중 고용주의 처분가능소득은 362만 원으로 자영업자 231만 원보다 131만 원 더 많다. 따라서 가구주의 임금근로 여부에 따른 가구 간 소득 차이(11만 원)보다, 자영업가구 내에서의 소득 차이(131만 원)가 압도적으로 크다. 소득 5분위 분포에서 살펴보면 임금근로가구의 2분위 비

율은 감소하고(2011년 20.5% → 2017년 17%), 5분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01년 23.7% → 2017년 27.1%). 반면 자영자가구는 소득 1분위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나(2011년 10% → 2014년 8.4% → 2017년 7.9%), 소득 2분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01년 21.3% → 2017년 22.3%). 자영자가구는 고용주가구와 임금근로자가구보다 소득 1, 2분위 비율이 높고 소득 수준도 낮기 때문에 자영자가구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자영자가구는 최근으로 올수록 산업별로 소득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즉 자영자가구 중에서도 40세 미만 청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 저학력 수준,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업인 경우의 소득보장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아 보인다.

셋째, 자영업자의 노동 환경은 고용 형태 지속성이 매우 불안정하며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상태이다. 고용 형태 지속의 불안정성은 실직에 처할 위험이 높음을 의미하며, 장시간 노동은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음을 암시한다. Dembe et al.(2005), Lee & Lee(2014)의 연구에서는 장시간 근로가 높은 산업재해율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장시간 근로는 이들의 건강 상태 역시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영업 노동시장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 환경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건강 관련 위험에 취약함을 나타낸다. 또한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가구는 노후소득 준비 상황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인 자영업자의 경우 노후소득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노후 빈곤 위험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특히 1인 자영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률과 민간 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영업자는 사회적 위험에 취약할 뿐 아니라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 매우 낮아 사회적 위험 정도가 더욱 높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넷째,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체계가 완비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회보험체계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최근 들어 자영업자를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급여’의 적용에서 제외되며, 제도에 대한 홍보와 인식 부족 및 비용 대비 효과성 부족 등으로 인해 2018년 5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약 17만 5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사회보험체계에서 자영업자들의 노령연금과 의료보장은 가능하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산정체계로 인해 더욱 부담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실제 보험료 체납, 납부 예외로 인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구인회, 백학영, 2008). 한편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원사업들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기 때문에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도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빈곤층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2절 정책적 함의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영업자 및 자영업가구를 위한 사회보장정책 방향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최근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의 위험 대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며 관련 정책도 진행되고 있다. 비교적 시행 초기 단계의 사회안전망 확충 과정에서 실제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대 및 강화에 주안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전통적으로 자영업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며, 직면하게 될 위험 또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들도 임금근로자와 같이 일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자영업자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사회보장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수혜기회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업과 작업 중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 중단 상황 발생 시 위험에 대비하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높으며, 그중 생계형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 또한 장시간 노동 환경이 만연해 있는 상황으로 산업재해, 각종 질병 위험에 취약하며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고용 형태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소득 중단 위험 또한 높다. 이러한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 취약성을 고려한 사회안전망 확대에 대한 고민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관련 정책 시 범위가 넓은 자영업을 구체화하지 않고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경우 정책 초점이 분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영업 사회보장제도를 “One size fits all”의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은 자칫 산업 및 직업, 규모 등에 따라 범위가 넓은 자영업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의 확대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조준모,

2018). 자영업 종사자들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자영업자 가구의 각 계층의 좀 더 촘촘한 구분을 통해 특화된 사회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에서 자영업자는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거나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각종 사회적 위험 발생 시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자영업은 경기 등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소득 불안정과 사업 위험이 큼에 따라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실업 위험을 스스로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 실업급여를 강제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나라는 드물다(이병희 외,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자영업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업보험, 실업부조 등과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임금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현재의 제도 틀에서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조세를 기반으로 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확대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존재한다(윤도현, 2014). 이병희(2016)에 따르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실직으로 인한 빈곤화를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실업부조를 제안하고 있다. 실제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을 채택하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실업부조를 운영하고 있다(이승렬, 박찬임, 2008).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급여를 주는 제도인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 빈곤층과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등에게 일정 기간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자영업자의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고용 형태 불안정성(특히 앞서 분석 결과에서 확인하였듯이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할 청년층 자영업자들의 높

은 고용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소득 보장에서 나아가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향하는 방향으로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사회보험 중심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사회적 보호에서 제외될 가능성 또한 높아짐을 암시한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기여형 급여 성격이 강하지 않아 근로자의 저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이병희 외, 2016). 최근 자영업자를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였으나, 제도에 대한 홍보와 인식 부족 및 비용 대비 효과성 부족으로 가입률이 전체 자영업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역시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보험료 체납, 납부 예외로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하다. 각 보험의 목적과 문제점을 고려한 사회보험 확대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 파악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체납으로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후적으로라도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보험의 목적과 문제점을 고려한 지원 대상 설정 및 지원 방안 설계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기존 제도의 확대 혹은 제도 간 연계를 통한 지원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김재진, 2018).⁴²⁾ 단기적으로 두루누리, 일자리 안정자금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및 두루누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특

42) 기존 제도의 확대, 제도 간 연계를 통한 지원 방안은 2018년 12월 4일 소득주도성장 정책 토론회의 “김재진(2018). 자영업 경영여건 개선과 소득주도성장: 자영업자 전직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히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자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실제 이들의 지위 변화를 살펴보면 1인 자영자가 고용주로 변화하거나 고용주가 다시 1인 자영자로 변화하는 자영업 내에서의 변화 비율이 매우 높으며 잦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실제 이들의 경제 상태 변화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잦은 종사상지위 변화 현상을 고려한 좀 더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자영업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하여 저소득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1차 사회안전망 내로 포섭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1차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에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자영업자의 촘촘한 구분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기존의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의 지위 변화에 대한 사회안전망 변화에 따른 대응,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에 대한 사회적 위험 수준 및 사회안전망 고민뿐 아니라 자영업자 내에서의 지위 변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 수준 및 사회안전망 변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가 소득 수준, 소득 빈곤, 사회적 위험 취약성 등에 있어 매우 이질적 특성을 가지며 취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 또한 고용 변화 패턴을 살펴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로의 이동 패턴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 영세한 자영업자들 또한 언제든지 이러한 특성에 노출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결국 고용주와 자영자 지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가 잦으며 불안정하고, 결국 근로빈곤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거나 퇴출될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용주에서 자영자로의 전환, 즉 자영업자 내에서의 지위 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 수준의 변화와 사회안전망 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에 따른 대응 정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로빈곤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거나 퇴출될 처지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신용불량자 증대 및 가정 붕괴, 그리고 빈곤층 전락과 확대로 결국 사회적 불안 대두뿐 아니라 국가 재정적으로도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다. 위험에 처한 이들의 구제를 위한 임시·단기적 지원보다는 근본적으로 위험에 당면한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위험에 처하기 이전, 즉 위험 발생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사전 예방적 차원으로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후 대책뿐 아니라 사전적이고 예방적 대책으로 사회안전망 내 편입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설계는 복잡하고 쉽지 않은 과제이나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시급하다.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제도를 설계하고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각종 통계 및 조사로는 범위가 넓은 자영업을 세분화된 대상으로 구분하여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실질적으로 현재 국내의 통계로는 자영업자들의 사회정책 지원 및 개발 목적에 부응한 조사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사회·경제적 비중이 큰 자영업자와 자영업가구를 대상으로 한 현황 파악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이들의 사회정책 지원 방향성을 개발 및 제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68호.

(2019.1.15.,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법률 제16269호. (2019.1.15.,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법률 제16270호. (2019.1.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83호. (2018.6.19., 일부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15664호. (2018.6.12.,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6101호. (2018.12.31.,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5270호. (2017.12.19., 타법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5665호. (2018.6.12.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23호. (2019.2.12., 일부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3호. (2017.7.26.,

타법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70호. (2018.12.31., 일부개정)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제15746호. (2018.8.14., 일부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0953호. (2011.7.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1.9.9.). ‘비정규직 종합대책’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0에서 2019.1.31. 인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5. 12. 22.).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 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내년부터 50%에서 60%로 오른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6264에서 2019.1.31. 인출.

고용노동부. (2016). 2016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고용노동부. (2017). 2017년 산재보험 사업연보.

고용노동부. (2018a).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80500487에서 2019.2.4. 인출.

고용노동부. (2018b).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바로 알기.

http://jobfunds.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47에서 2019.1.4. 인출.

고용노동부고시. (2017.12.20). 제2017-70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용노동부고시. (2017.12.29). 제2017-75호. '2018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를 및 사업종류 예시'

고용노동부고시. (2017.6.27.). 제2017-33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고용노동부고시. (2018.9.20). 제2018-70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고용노동부고시. (2018.12.04). 제2018-76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개정'

고용노동부고시. (2018.12.28). 제2018-100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2019.1.1.). 제2019-1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 고시'

관계부처 합동. (2017. 11. 9.).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발표.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243792>에서 2019.1.4. 인출.

구인회, 백학영. (2008).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실태와 영향요인. 사회보장연구, 24(1), 175-204.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1. 9. 9.). '오늘부터 「사회보험 가입 확대 추진기획단」 출범'

<http://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83728&article.offset=20&articleLimit=10&srSearchV>

- al=%EC%98%A4%EB%8A%98%EB%B6%80%ED%84%B0에서
2019.1.31. 인출.
- 국민연금공단. (2018). 국민연금통계.
- 국세청 보도자료. (2014.5.2.). '2014년 근로장려금 120만 가구에 신청 안내'
https://www.nts.go.kr/news/news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type=V에서 2019.1.31. 인출.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13.12.23.). "15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영업자가
'14년부터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 안내'
https://www.nts.go.kr/news/news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type=V에서 2019.1.31. 인출.
- 국세청. (2019a). 국세통계: 근무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stats.nts.go.kr
에서 2019.2.20. 인출.
- 국세청. (2019b). 국세통계: 사업장별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stats.nts.go.kr에서 2019.2.20. 인출.
- 국세청. (2019c). 국세통계: 사업장별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현황.
stats.nts.go.kr에서 2019.2.20. 인출.
- 국제노동법연구원. (2014).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 방안. 서울: 국제노동법연구원.
- 국회예산정책처. (2017). 우리나라 자영업 동향 및 주요 특징. NABO 경제동향 &
이슈. 2017년 7월호 통권 제57호. 22-41.
- 국회예산정책처. (2018a). 자영업자가구와 근로자가구간 소득차이 및 빈곤위험
분석. NABO 산업동향 & 이슈. 2018년 8월호 통권 제11호. 31-46.
- 국회예산정책처. (2018b). 예산안분석시리즈Ⅱ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2018. 2. 14.).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더불어
사업자금 특례혜택도 받아 보세요'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에서
2019.1.31. 인출.
- 근로복지공단. (2019). 2019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 김재호, 김기승, 조동훈, 조준모. (2009).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Ⅰ) : 자영업의 변화 추이와 특성.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김재호, 조준모. (2000). 한국노동패널 특집/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이론 및 실증 분석. 노동경제논집 특별호, 23, 81-107.
- 김재호. (2012).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와 특징. 노동리뷰, 57-75.
- 김기승, 조준모. (2006). 자영업에 관한 유인가설과 구축가설에 대한 검증-월간 단기패널을 이용한 실증분석. 국제경제연구, 12(2), 163-189.
- 김도균. (2015). 자영업 부채의 이중성과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 부채 증가. 경제와사회, 108, 73-107.
- 김도균. (2018). 연령별 자영업 경험과 소득계층 이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25(2), 281-304.
- 김복순. (2011). 자영업 노동시장의 최근 변화. 노동리뷰, 7-18.
- 김복순. (2014). 자영업 고용 구조와 소득 실태. 노동리뷰, 67-79.
- 김봉근, 정철, 박명호. (2008). 패널자료를 이용한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보고율 분석 : 앵글곡선이동과 실질소득 추정. 경제학연구, 56(3), 151-170.
- 김석영, 최장훈, 이정택, 기승도, 김경환, 장동식, 박정희. (2015). 자영업자 고용 보험 장기 가입 인센티브 도입방안 및 재정설계. 서울: 보험연구원.
- 김수환, 감형규. (2017).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에 관한 연구. 전문경영인연구, 20(1), 69-87.
- 김우영. (2001). 남녀간 자영업 비중의 격차 분석. 노동경제논집, 24(2), 1-34.
- 김우영. (2009). 자영업자의 이질성과 취약자영계층에 대한 정책과제. 200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 김재진. (2018). . 자영업 경영여건 개선과 소득주도성장: 자영업자 전직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소득주도성장 재차 정책 토론회 2018.12.04. http://ilg.go.kr/html/sub3_2_view_01.do에서 2019.3.13. 인출.
- 김재호, 김철희. (2005). 자영업자의 소득파악과 빈곤원인분석. 제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김혜원, 김은경, 전승훈. (2007). 사회안전망의 경제적 분석 - 노동시장 효과를 중심으로

- 으로 -.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대한건설협회. (2018). 2018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
http://www.cak.or.kr/board/boardView.do?menuId=61&cms_site_id=&sel_tab=&searchctg1=&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sidohp=&subhp=&boardId=spend_wage&dataId=36011&pageIndex=1에서
- 류건식, 강성호, 김동겸. (2017).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 매일경제. (2018.1.11). [정책레이더] 113만 소상공인들 든든한 벧 ‘노란우산공제’.
- 매일경제. (2018.6.14). [중기 info] 中企보험 가성비 끝판왕... ‘파란우산’ 펴서 대비하세요.
- 박대현, 홍충표, 김은성, 김응중. (2017).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 확대방안 연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박진희. (2014). 최근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고용동향브리프.
- 박창귀. (2016). 우리나라 자영업의 과도기적 특성 연구. 경제연구, 34, 163-191.
- 반정호. (2012).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변동과 빈곤에 관한 연구: 임금근로자 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2(1), 29-56.
- 보건복지부 고시. (2016.11.29). 제2016-220호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2018.12.26). 제2018-287호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2017.12.26). 제2017-238호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3. 25.).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4월부터 확대 시행’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69&CONT_SEQ=283311에서

2019.1.31. 인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2. 6. 25.). ‘일하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혜택 국민연금·고용보험, 지금 가입하세요!’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89&CONT_SEQ=273319에서

2019.1.31. 인출.

서울경제. (2018.10.11.) “소득 없어서”...청년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75% ‘납
부예외’.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2018). 2018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계획.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4851918>에서 2019.1.3. 인출.

서정희, 박경하. (2015). 비정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불안정 노동-불안정 노동
지표 구성과 고용형태별 추이. 한국사회정책, 22(4), 7-42.

신영석, 우해봉, 김혜원, 이진형, 김소운, 박금령, 안영. (2018).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 건강보험료 추가 관련 효과 분석. 고용노동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시아뉴스통신. (2018. 12. 25.). 청주시, 기초단체 첫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7). 제5차 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 자료
이용설명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8). 제5차 근로환경조사 원자료.

안종순. (2015). 자영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질성과 사회적 위험대응의 계
층 간 차이. 사회복지정책, 42(1), 239-264.

안준기. (2018). 한국 근로시간 실태와 과잉근로. 고용동향브리프. 2-17. 음성:
한국고용정보원.

연합뉴스. (2013.11.24).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공제 ‘파란우산공제’ 개시.

연합뉴스. (2018.9.24). 올해 상반기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8.9% 증가.

연합뉴스. (2018. 9. 4.). 대전시 소상공인 보호 시동...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

연합뉴스. (2018.9.24). 올해 상반기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8.9% 증가.

유경준, 최바울, 권태구, 이유진, 김혜원, 권현지, 유한욱, 강창희. (2013). 두루누리

- 사회보험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고용노동부·한국개발연구원.
- 윤도현. (2014). 한국의 복지국가와 중간계급: 자영업자 문제를 중심으로. 스칸디나비아 연구, 15, 63-102.
- 이기평, 김영미. (2018). 중소기업 법제연구(II) -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재보험 제도 개선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이달휴, 조흥석. (2015). 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가입강제의 헌법적 문제. 헌법학연구, 21(3), 197-226.
- 이대웅, 권기현, 문상호. (2015).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 성향점수 매칭(PSM) 이중,삼중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4(2), 27-57.
- 이병희, 박찬임, 오상봉, 강병구, 김숙경. (2016). 자영업자 문제와 사회적 보호.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렬, 김종일, 박찬임, 이덕재, 홍민기. (2009).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 II.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렬, 박찬임. (2008).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렬, 최강식. (2007). 자영업 부문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노동정책연구, 7(4), 59-85.
- 이승렬. (2012). 자영업 부문에 지난 1년간 무슨 일이 있었나. 노동리뷰, 29-46.
- 이승렬. (2018). 자영업 현황과 정책과제. 노동리뷰, 36-59.
- 임은의. (2011).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세의 빈곤완화 효과 추정 연구. 글로벌사회복지연구, 1(2), 29-50.
- 전병유. (2003). 자영업 선택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6(3), 149-179.
- 전용일, 임병인, 문선웅, 김성태, 이용희, 이명성, 김경아, 정원일. (2012). 생계형 자영업 실태 및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 정의룡. (2014). 한국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효과성 분석: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8(1), 181-206.
- 조동훈. (2013). 자영업 결정요인 국제 비교 분석. 산업관계연구, 23(2), 127-146.

- 조준모. (2018). 플랫폼 노동과 사회적 보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보험 관련 실태와 쟁점이슈. 복지이슈 Today, 67, 10.
- 중소기업벤처부 공고. (2018.9.11). 제2018-366호. '2018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변경공고'
- 중소기업벤처부 공고. (2019.1.22). 제2019-8호. '2019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 (2019.1.22.). '2조 8백억원 규모의 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09939&parentSeq=1009939>에서 2019.1.31. 인출.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규정. (2012.3.27, 제정)
-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2018.10.29).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5개 지자체로 확산'
- <https://www.kbiz.or.kr/user/nd18095.do?View&pageST=SUBJECT&pageSV=&page=26&pageSC=REGDATE&pageSO=DESC&dmlType=&boardNo=00042478>에서 2019.1.31. 인출.
- 중소기업중앙회. (2014). 파란우산공제 상품안내
- http://www.kcca.or.kr/bbs/board.php?bo_table=customer1&wr_id=262&page=9, 2019.3.8. 인출
- 중소기업중앙회. (2017). 협동조합 PL 가입안내 www.insbiz.or.kr에서 2019. 3.8. 인출.
- 중소기업중앙회. (2018). 2018년 중소기업현황.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청. (2015). 2015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대전: 중소기업청.
- 지은정. (2012). 자영업 근로소득의 불평등 요인과 변화. 한국사회복지학, 64(2), 55-83.
- 지은정. (2013). 자영업자의 취업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5(1), 147-174.
- 최영준, 이승준. (2015). 중고령층의 자영업 경험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

- 한 연구-2007년 경제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2(1), 381-402.
- 통계청. (2015). 2015년 경제총조사.
- 통계청. (2016). 기업생멸행정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BD1001&conn_path=I3 (2019.02.20. 인출).
- 통계청. (2018a).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에서 2018.12.21. 인출.
- 통계청. (2018b). 2012~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에서 2018.12.21. 인출.
- 통계청. (2018c).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 통계청 보도자료. (2018. 10. 30.).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1296&pageNo=19&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19.1.31. 인출.
- 통계청 보도자료. (2018. 11. 7.).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사조사 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1524&pageNo=18&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19.1.31. 인출.
- 한국노동연구원. (2018). 한국노동패널조사 12-20차 원자료.
<https://kli.re.kr>에서 2018.12.21. 인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8). 한국복지패널 13차.
- 한국일보. (2018.8.20.). 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대폭 낮춘다.
- 한상운, 성주호. (2013). 연금연구 : 두루누리사회보험이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연금연구, 3(1), 23-40.

현다운, 석재은. (2014). 포스터세션 : 근로장려세제(EITC)가 근로빈곤층의 소득증대와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4(1), 305-313.

홍백의, 배지영, 박미희, 강준모. (201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직장·지역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분석. 한국사회정책, 19(1). 199-231.

Carrasco, R. & Mette, E. (2012). Labor market conditions and self-employment: A Denmark-Spain Comparison. IZA Journal of Labor Policy, (13).

Dekker, F. (2010). Self-employed without employees: Managing risks in modern capitalism. Politics & Policy, 38(4), 765-788.

Dembe, A.E., Erickson, J.B., Delbos, R.G., Banks, S.M., (2005). The impact of overtime and long work hours on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new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Occupational Environment Medicine. 62 (9), 588-597.

European Commission. (2014). Social protection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rea and in Switzerland: Social protection of the Self-employed. Mutual Information System on Social Protection(MISSOC), <http://www.missoc.org>.

Hamilton, B. H. (2000). Does entrepreneurship pay?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turns to self-employ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3), 604-631.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2007). Decent working time: Balancing workers' needs with business requirement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3-18.

Lee, J. M. and Y. K. Lee. (2014). Can Working Hour Reduction Save

- Workers?. The Korea Labor Economic Association. Spring Seminar.
- Caruso, C. C. (2004). Overtime and extended work shifts: recent findings on illnesses, injuries, and health behaviors.
<http://www.cdc.gov/niosh/docs/2004-143/pdfs/2004-143.pdf>
- OECD (2014),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4*,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entrepreneur_aag-2014-en
- OECD. (2016). "Self-employment", in *OECD Factbook 2015-2016: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factbook-2015-en>.
- OECD. (2018). Hours worked (indicator). doi: 10.1787/47be1c78-en (accessed on 27 April 2019).
- Rees, H., and Shah, A. (1986). An empirical analysis of self-employment in the UK.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1, 95-108.
- Schoukens, P. (2005).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유럽. *국제노동브리프*, 3(4), 4-14.
- Virtanen, M., Heikkilä, K., Jokela, M., Ferrie, J. E., Batty, G. D., Vahtera, J., & Kivimäki, M. (2012). Long working hours and coronary heart diseas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76(7), 586-596.
- White, J., & Beswick, J. (2003). Working long hours. Health and Safety Laboratory, WPS/02/10,
http://www.hse.gov.uk/research/hsl_pdf/2003/hsl03-02.pdf.

〈웹사이트〉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사업안내. www.sbiz.or.kr에서 2019.2.4.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에서 2019.1.31. 인출.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에서 2019.1.31. 인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pension/intro/about.do>에서 2019.2.4. 인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 건강보험안내.
minwon.nhis.or.kr에서 2019.2.4. 인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제도소개. <http://www.nhis.or.kr>에서 2019.2.4. 인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 www.nps.or.kr에서 2019.2.4. 인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https://www.hometax.go.kr>에서 2019.2.4. 인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
http://pension.fss.or.kr/fss/psn/intro/system/system2_4.jsp에서 2019.2.4. 인출.

노란우산공제 복지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8899.or.kr/jsp/wfr/main.jsp>에서 2019.2.4. 인출.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www.8899.or.kr에서 2019.2.4. 인출.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insurancesupport.or.kr에서 2019.1.4. 인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www.semas.or.kr/web/SUP01/SUP0103/SUP010301.kmdc에서 2019.2.20. 인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www.koreg.or.kr/sub/info.do?page=020204&num=13에서 2019.2.20. 인출.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jobfunds.or.kr에서 2019.2.4. 인출.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에서 2019.1.3. 인출.

파란우산공제 홈페이지. www.insbiz.or.kr에서 2019.2.4. 인출.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고용보험제도. www.ei.go.kr에서 2019.2.20. 인출.

대한민국정부 홈페이지. www.gov.kr에서 2019.02.20. 인출.

<부록 1> 자영업자 심층면접조사

<부록표 1> 자영업자 심층면접조사1

구분	질 의	주요 응답
인적 사항	인적 사항	-30대(85년생), 남성, 미혼, 서울 거주 -직장 2년 근무 후 자영업 시작
	사업 관련 사항	-업종: 디자인(영상, 디지털 온라인 광고, 홈페이지 제작 등), 일반음식점(주점) -종사 기간: 디자인 회사 5년 차, 일반음식점 2년 차 -종업원 수: 디자인 회사 2명(정규직), 일반음식점 3명(일용직) -근로시간: 디자인 회사 월-금(10시-19시/9시간), 일반음식점 금, 토(10시-2시/14시간)
사회보험 가입 실태	사회보험 가입 현황	-사업장 가입 현황: 디자인 회사 직원들은 가입, 일반음식점 직원들은 미가입 -본인 가입 현황: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사회보험 미가입 이유	고용주 입장에서 보험료 부담이 큼. 특히,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주휴수당 지급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보험료가 부담을 가중시킴. 또한 현재 사업장 2개를 운영하기 때문에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이 2배가 됨
	본인 사회보험 미가입 이유	보험료 납부의 부담이 큼. 명목상 보험료이기는 하나 일반 세금과 동일하게 받아들여짐. 세금과 사업비용 지불이 우선이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
	정부 지원 사업 수혜(이용) 경험	-청년 창업 대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장점: 사업 비용 절감, 신청이 어렵지 않음 -단점: 지원 시작까지 시간 걸림, 지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직원 월급 미인상
	노후 준비 상황	올해부터 노후 준비 예정이었으나, 사업 여건이 어려워져 별도의 준비는 하지 않음. 국민연금에 의존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저축하며 이마저도 사업에 현금이 필요한 경우 사용함
사회안전망 확대 의견	자영업자 지원 정책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소득세 감면, 카드수수료 부가세 감면 등의 세금 감면 정책이 필요
	사회보험 가입 인식	-보험은 현재 비용을 지불하고 미래에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되지 않음. 미래의 일은 다소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여겨짐. 사회안전망의 필요성보다는 현재 사업을 존속시켜 주는 정책이 필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하여 부정적임. 사업자에게는 현금 유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폐업 시 받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

〈부록표 2〉 자영업자 심층면접조사2

구분	질의	주요 응답
인적 사항	인적 사항	-50대(65년생), 여성, 기혼, 서울 거주
	사업 관련 사항	-업종: 피부관리 -종사기간: 20년 이상
사회보험 가입 실태	사회보험 가입 현황	-사업장 가입 현황: 가입 -본인 가입 현황: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정부 지원 사업 수혜(이용) 경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노란우산공제, 고용장려금 지원 -장점: 사업 비용 부담 완화, 고용 창출 및 지속 가능
	정부 지원 사업 정보 접근	-뉴스와 신문, 자영업(일반음식점) 하는 가족을 통한 정보 습득 -자영업자 지원 사업의 홍보 부족 지적
	노후 준비 상황	-국민연금, 개인연금 5개, 노란우산공제(월 50만 원 납입) 가입 -국민연금의 경우 납입 기간이 짧고 납입 금액도 적어 미래 예상 연금수급액은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미미한 수준
사회안전망 확대 의견	자영업자 지원 정책	자영업자 지원 정책들을 자영업자들에게 우편물 통한 지속적 홍보 방안 제안
	사회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	자영업자 대상 사회보험 혜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보험 가입에 따라 미래에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 자영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
	고용보험 의무화 인식	자영업자들도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야 함
	고용보험 개선 방안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별도로 존재하나 직장가입자와 혜택에 차이가 존재함. 이러한 차등이 없어지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며, 고용보험이 근로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호장치로 바뀌기를 제안
	소득신고 현실화 방안	소득신고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어야 함. 자영업자가 정직한 소득신고에 따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홍보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현실적인 소득신고의 강제화가 필요함
	자영업자 국민연금 인식	자영업자를 위한 별도의 전용 연금이 만들어지기를 바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둘 다 가입했지만 국민연금을 더욱 신뢰하고 있기 때문임
	국민연금 개선 방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처럼 자영업자 국민연금을 별도로 개설해서, 보험료 납입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연금보다 더욱 두터운 노후 준비 방안을 마련하기를 제안함 또한, 보험료는 소득과 연동하여 일정 비율 강제 납입, 일정 비율은 자율 납입하는 의견 제안

〈부록표 3〉 자영업자 심층면접조사3

구분	질의	주요 응답
인적 사항	인적 사항	-40대(72년생), 남자, 기혼, 서울 거주 -직장생활 후 개인사업 시작 -사업 시작 사유는 IT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시작함
	사업 관련 사항	-업종: 웹서비스(홈페이지 제작, IT) -종사 기간: 9년, 현재 사업자등록 폐지 -종업원 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때는 직원 4명(정규직)이었으나 현재는 1인 사업
사회보험 가입 실태	사회보험 가입 현황	-사업장 가입 현황: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는 가입했었음 -본인 가입 현황: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납부예외자), 고용보험 미가입
	본인 사회보험 미가입 이유	-보험료 부담이 큼. 특히, 1인 창조기업의 경우 보험 가입 자격이 사업장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더 큼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경영 상황 및 연금 운용 상황에 대하여 신뢰가 부족한 상황
	정부 지원 사업 수혜(이용) 경험	-없음 -정부 지원 사업들에 대한 홍보 부족 지적, 정보 습득과 지원 정책 가입에 어려움 존재
사회안전망 확대 의견	자영업자 지원 정책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함.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1인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와는 차이가 존재함
	사회보험 가입 인식	사회보험 가입의 필요성과 신뢰가 높지 않음. 민간보험과 비교했을 때 건강보험은 더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특별한 혜택을 알 수 없음.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운용 과정에 대한 신뢰가 필요
	사회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	보험료 운용 과정과 혜택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 사회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개인사업자는 보험료 부과에 따른 혜택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동의가 우선되어야 함
	사회보험 개선 방안	1인 창업자에 대한 보험 가입 기준을 신설해야 함.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부담도 크지만 그보다 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산정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부록 2〉 분석 대상자 특성

〈부록표 4〉 분석 대상자 특성: 고용 형태 지속성

변수명	변수의 정의	기초통계량 (N=3,899)	
		평균	표준편차
연령		45.544	17.830
성별	1: 남성, 0: 여성	0.480	0.500
혼인 상태 ¹⁾	1: 유배우자, 0: 무배우자	0.628	0.483
지역	1: 수도권, 0: 비수도권	0.425	0.494
교육 수준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 이상	2.846	1.096

주: 관측 시작 당시인 2009년도의 특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노동패널 12차.

〈부록표 5〉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량: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 발생 여부 분석

변수명	변수의 정의	기초통계량 (N=32,061)	
		평균	표준편차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1: 매우 나쁘다, 2: 나쁜 편이다, 3: 보통이다, 4: 좋은 편이다, 5: 매우 좋다	3.789	0.649
건강 문제 유무	1: 건강 문제 있음, 0: 건강 문제 없음	0.403	0.490
연령	만 나이 기준, 연속형 변수	46.792	12.207
성별	1: 남성, 0: 여성	0.507	0.500
혼인 상태 ¹⁾	1: 유배우자, 0: 무배우자	0.476	0.499
지역	1: 수도권, 0: 비수도권	0.380	0.485
교육 수준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 이상	3.393	0.744
월평균소득 ²⁾	월평균 소득(만 원), 연속형 변수	291.348	244.012
산업	제조업		
	건설업	0.055	0.229
	도소매업	0.239	0.427
	음식숙박업	0.108	0.311
자영업 여부 (기준: 임금(상용) *근로시간)	기타	0.441	0.497
	0: 임금(상용)근로자*2: 초과근로	0.070	0.255
	0: 임금(상용)근로자*3: 과잉근로	0.017	0.128
	1: 자영업자*1: 적정근로	0.184	0.388
	1: 자영업자*2: 초과근로	0.147	0.354
자영자 여부 (기준: 임금(상용) *근로시간)	1: 자영업자*3: 과잉근로	0.058	0.234
	0: 상용근로자*2: 초과근로	0.077	0.266
	0: 상용근로자*3: 과잉근로	0.018	0.134
	1: 자영자*1: 적정근로	0.149	0.356
	1: 자영자*2: 초과근로	0.130	0.337
자영자 여부 (기준: 그 외) *근로시간)	1: 자영자*3: 과잉근로	0.050	0.218
	0: 그 외(상용근로자, 고용자)*2: 초과근로	0.099	0.298
	0: 그 외(상용근로자, 고용자)*3: 과잉근로	0.029	0.168
	1: 자영자*1: 적정근로	0.136	0.342
	1: 자영자*2: 초과근로	0.119	0.323
	1: 자영자*3: 과잉근로	0.046	0.209

주: 혼인 상태는 제5차 근로환경조사 설문 문항 HH3-C에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유배우자', 배우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무배우자'로 정의함.

자료: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8). 제5차 근로환경조사.

〈부록표 6〉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량: 노후소득 준비 인식

변수명	변수의 정의	기초통계량(N=6,218)	
		평균	표준편차
노후소득 준비상황	1: 전혀 되어 있지 않다, 2: 잘되어 있지 않다, 3: 보통이다, 4: 잘되어 있다, 5: 아주 잘되어 있다	2.413	0.922
연령	만 나이 기준, 연속형 변수	49.658	11.301
성별	1: 남성, 0: 여성	0.825	0.380
혼인 상태	1: 유배우자, 0: 무배우자	0.748	0.434
지역	1: 수도권, 0: 비수도권	0.517	0.500
교육 수준 ¹⁾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더미	3.264	0.872
가구 처분가능소득 ²⁾	가구원 수로 균등화, 연속형 변수	258.159	194.098
산업 ³⁾	제조업	1,434.7	23.1
	건설업	659.3	10.6
	도소매업	712.2	11.5
	음식숙박업	357.0	5.7
	기타	3,054.8	49.1
자영업 유무	1: 자영업가구, 0: 임금근로가구	0.240	0.427
고용주 유무	1: 고용주가구, 0: 그 외(임금근로가구, 자영자가구)	0.068	0.252
자영자 유무	1: 자영자가구, 0: 그 외(임금근로가구, 고용주가구)	0.172	0.378

주: 1)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1, 중학교 2, 고등학교 3, 대학 이상 4로 기초통계량을 산출함.

2) 분석모형에는 분포의 정규성 확보를 위해 균등화한 가구처분가능소득에 로그를 취한 후 활용함.

3) 산업은 평균과 표준편차 대신 빈도와 백분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2012~2018), 가계금융복지조사.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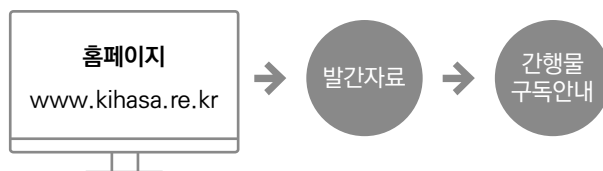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